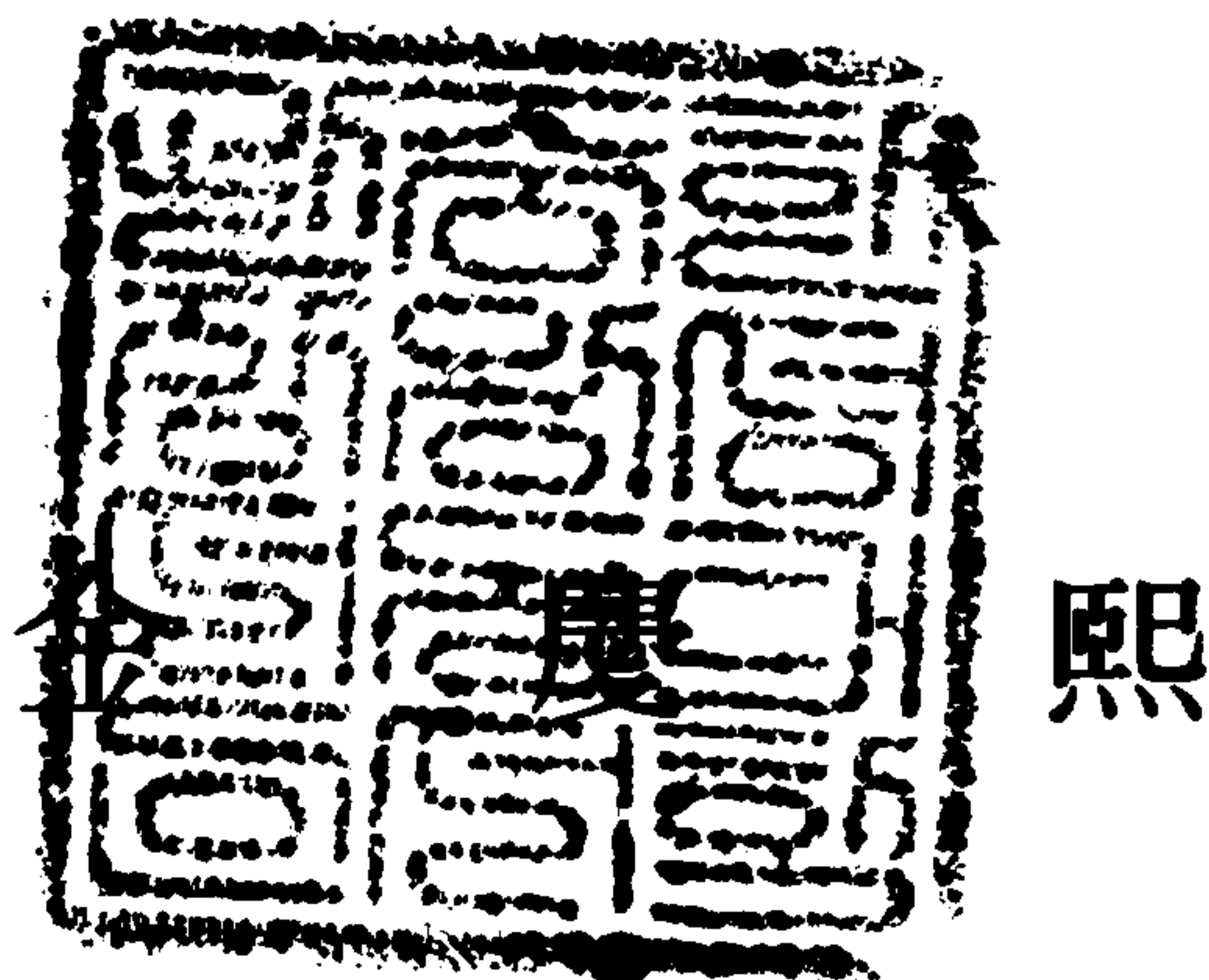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관한 研究

－私立大學 會計制度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 of an Educational Foundation －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企業管理(會計學) 專攻

1993年 6月 日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관한 研究

－私立大學 會計制度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經營學博士 洪 容 植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企業管理(會計學) 專攻

金 慶 熙

論文認准書

金慶熙의 碩士論文을 認准 함

審査委員長 ⑩

審査委員 ⑩

審査委員 ⑩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企業管理(會計學) 專攻

金 慶 熙

1993年 6月 日

目 次

第一章. 序 論	1
第一節. 問題의 提起	1
第二節. 研究의 目的	3
第三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4
第二章. 非營利法人의 性格	6
第一節. 非營利法人의 概念	6
第二節. 非營利法人의 類型	13
第三節. 會計學上 非營利法人	14
第四節. 非營利 會計制度의 特徵.....	19
第五節. 非營利 會計理論	24
第三章 非營利.法人의 會計分析	30
第一節. 非營利 法人會計의 重要性.....	30
第二節. 非營利 會計의 內容.....	32
第三節. 非營利 法人會計의 收支計算.....	38
第四節. 非營利 法人會計의 財産計算.....	42
第五節. 非營利 法人會計의 決算諸表 作成	48
第四章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대한 分析	57
第一節. 學校法人의 意義.....	57
第二節. 學校法人의 會計의 特性.....	58
第三節. 私立大學의 豫算會計制度	64
第四節.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對한 特例規則	79
第五節.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97

第五章 結 論	107
參考文獻	115
Summary	117
附 錄	119

表 目 次

〈 表 3-1 〉	帳簿組織의 一般的인 形態.....	36
〈 表 3-2 〉	收支計算과 財産計算의 關係式.....	41
〈 表 3-3 〉	基本財産 및 運用財産 事業運營式.....	43
〈 表 3-4 〉	會計의 循環過程.....	48
〈 表 3-5 〉	決算諸表의 相互關係.....	48
〈 表 3-6 〉	貸借對照表 樣式.....	50
〈 表 3-7 〉	收支計算書 樣式.....	53
〈 表 3-8 〉	收支計算과 貸借對照表의 關聯性	55
〈 表 3-9 〉	剩餘金 配分 計算書 樣式.....	56
〈 表 4-1 〉	私立學校法에 의한 學校法人 會計組織圖	59
〈 表 4-2 〉	法人稅法上の 學校法人 會計組織圖.....	60
〈 表 4-3 〉	學校法人의 豫算編成節次.....	126
〈 表 4-4 〉	學校法人의 豫算編成日程表.....	127
〈 表 4-5 〉	資金運用豫算書.....	130
〈 表 4-6 〉	資金運用追加更正豫算書	131
〈 表 4-7 〉	前期末推定負債 明細書	132
〈 表 4-8 〉	前期末推定 未收金 調書	132
〈 表 4-9 〉	學年度 學年別 學科別 學生數 調書	133
〈 表 4-10〉	資金運用計算書	141
〈 表 4-11〉	運營收支計算書	144
〈 表 4-12〉	貸借對照表	151
〈 表 4-13〉	現金及 預金 明細書	156
〈 表 4-14〉	有價證券 明細書	157
〈 表 4-15〉	未收金 調書	158

〈 表 4-16 〉	固定資產 明細書	159
〈 表 4-17 〉	投資資產 明細書	160
〈 表 4-18 〉	借入金 明細書	161
〈 表 4-19 〉	未支給金 調書.....	162
〈 表 4-20 〉	基本金,積立金 明細書.....	163
〈 表 4-21 〉	豫備費 使用額 調書	164
〈 表 4-22 〉	監査報告書.....	165
〈 表 4-23 〉	聯結資金運用 計算書	167
〈 表 4-24 〉	聯結運營 收支計算書	168
〈 表 4-25 〉	聯結貸借對照表.....	169

第一章 序 論

第一節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高度産業社會의 實現을 위한 高級人力の 圓滑한 供給을 目的으로 本格的으로 高等教育의 改革事業을 推進해 왔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先進産業社會 進入을 위한 高級頭腦의 開發供給이 더욱 切實히 要求되어왔다.

이에 따라 大學教育의 改革은 量的증대와 더불어 質的改革의 方向으로 치닫게 되었다. 量的膨脹과 質的向上的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大學經營에 있어서 財政的 側面과 會計的인 分流가 合理的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大學의 規模는 過去 30여년간 놀랄만큼 신장되었으며 財政規模는 大型化되고 또한 複雜하게 되었다.¹⁾

이와같은 環境의 變化속에서 學校法人의 會計는 單式簿記方法에서 複式簿記制度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여 大學法人의 財政狀態를 正確히 把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私立大學會計制度는 1969년 7월 19일에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이 제정되었으며 1979년 1월 8일의 개정시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 이후 1981년에 이르러 일정규모 이상의 4년제 私立大學은 複式簿記를 適用하고 外部監事人 1인을 공인회계사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많이 개선된 內容을 가진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對한 特例規則”을 제정하였으나 私學機關의 財政規模가 급신장하는 데에 따라 適切히 개정되지 못한 미흡한 실정에 있다.

註1) 申仲植, 私立大學의 經營合理化, 大學教育, 1986, P.48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은 研究와 改訂이 다음과 같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의 복잡한 會計體系를 보다 簡潔한 單一 會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私立大學을 中心으로 關聯된 利害關係者들에게 財務諸表를 통해서 合理的인 의사결정을 위한 보다 正確한 財務狀態를 表示하여야 한다.

본 論文은 이와 같은 點을 바탕으로 한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에 대해서 分析하여 改訂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合理的인 會計體系를 定立하는데 있다.

第二節. 研究의 目的

本 論文의 研究는 우리나라의 非營利機關인 私立大學의 회계제도를 中心으로 會計體系를 살펴보면 敎費會計, 期成會費會計, 學生會費會計와 特別會計가 있다.

그러나 각 會計별로 區分會計處理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收入과 支出에서 去來發生 부터 전표정리, 장부정리, 決算에 이르는 二重性を 띠고 있다.

그리고 資金管理 또한 區分管理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私立大學 會計에 있어서 밀접한 關聯을 가지고 있는 豫算會計 역시 二元化되어 있는 問題點과 私學機關 特例規則에 명시된 計定科目 會計處理등 모순점이 나타난다.

以上과 같이 私立大學 會計體系를 分析하여 問題點을 把握 그 개선안을 제시하여 私立大學 회계이론과 實務를 보다 簡潔하고 획일적인 會計處理를 通하여 私立大學의 會計情報를 利用하려는 利害關係者의 合理的인 의사결정과 會計시스템을 定立하여 會計實務를 發展적으로 審與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三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1. 研究의 方法

本 論文의 研究方法은 非營利機關(Non-Profit organization)인 非營利機關會計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 의 體系的으로 考察하기 위하여 非營利機關의 會計에 대한 關聯文獻을 통한 非營利機關의 會計制度를 檢討하고 우리나라의 學校 法人인 私立大學의 會計制度 및 체계를 關聯文獻과 會計實務 經驗을 바탕으로 會計의 二元性和 그에 따른 問題點을 把握하고 改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研究의 範圍

本 論文의 研究範圍는 다음과 같다.

- (1) 本 研究는 앞에서 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非營利機關인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의 체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實務的인 會計側面에서 問題點을 把握하여 分析하고 改善하고자 하는 데 있다.
- (2) 제1장에서는 問題의 提起, 研究의 目的, 研究의 方法과 範圍를 敘述한 序論部分이며
- (3) 제2장에서는 非營利 法人의 性格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非營利 法人의 類型, 會計學上 非營利法人, 비영리 회계제도의 특징, 비영리회계이론을 언급 하였다.

(4) 제3장에서는 非營利 法人의 會計에 대한 分析으로서 非營利 法人會計의 重要性을 把握하고 非營利 法人의 會計의 內容을 분석하고 非營利 法人의 收支計算 및 財産計算과 非營利 法人의 결산제표의 作成으로 一連의 체계적인 考察을 하였으며

(5) 제4장에서는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대한 分析을 集中的으로 하였으며 학교법인의 의의, 학교법인의 회계의 특성과 특히 私立大學의 會計인 私立大學의 豫算會計制度,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을 살펴본 후 問題點을 把握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學校法人의 私立大學 經營合理化의 一環으로 會計制度 및 체계를 여러가지로 多樣性있게 分析하여 本 研究에 意味를 부여하고자 하며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의 二元的인 모순점인 교비회계와 기성회비회계를 區分하는 問題點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6) 제5장에서는 本 論文의 研究主題를 요약정리하고 私立大學 會計制度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結論을 맺도록 하였다. 本 論文의 研究範圍는 非營利機關인 우리나라 私立大學 會計制度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研究方法는 非營利機關인 私立大學의 會計와 學校法人인 私立大學會計實務를 통한 분석을 주된 研究對象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私立大學의 經營合理化 方案을 위한 稅制問題와 會計制度에 대해서도 言及하였다.

第二章 非營利法人의 性格

第一節. 非營利法人의 概念

非營利法人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法人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법인 가운데는 營利의 실현을 目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會社形態의 단체, 會社形態의 組織이 얼마든지 있다. 會社形態의 法人을 우리는 普通企業이라 부른다. 企業이란, 의도적인 이윤동기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성립하지만 非營利法人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형태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非營利法人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동기에서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하는 法人을 말한다.

둘째, 非營利法人은 사적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어야 한다.

셋째, 非營利法人의 자원조달과 실체의 유지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째, 非營利法人의 非營利事業은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 지출을 한다.

다섯째, 非營利法人은 공공성, 사회성을 기조로 하는 단체 또는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1. 非營利法人과 營利法人의 差異

營利 法人이나 非營利 法人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는 유사하다.2)

첫째, 同一한 經濟體制 속의 構成分子로 存在하며 組織의 目的

을 達成하기 위해 유사한 資源을 使用한다.

둘째, 兩者는 모두 會計的 메커니즘을 통해 算出되는 情報을 필요로 한다.

셋째, 兩者는 모두 調達된 資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活用하기 위한 方法을 開發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兩者는 모두 희소한 資源을 獲得하여 이를 의도하는 바의 財貨나 서비스로 轉換시킨다.

다섯째, 兩者는 모두 유사한 財貨와 서비스를 生産할 수 있다.

그러나 兩者는 組織의 目的, 調達한 資源의 源泉, 資源活用の 制約 財務報告 目的, 會計實務 등에서 差異가 있다.

註2) 이동규, 비영리회계, 형설출판사, 1991. P.21 -P.25

1) 組織 目的上的 差異

非營利 法人의 目的은 營利追求가 아니다. 따라서 利益獲得을 組織의 一次的 目的으로 삼지 않는다. 이보다는 社會의 후생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非營利 法人의 存在目的이 있기 때문에 公益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 하는데 주력한다.

非營利法人도 營利法人 에서와 같이 資源을 增大 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境遇도 있으나 資源增大가 非營利法人의 核心的인 目的은 될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非營利法人은 組織의目的을 純利益의 創出에 두고 있는것이 아니라 調達한 資源을 어떻게 同一의 目的에 효율적으로 配分하느냐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2) 資源取得 源泉上的 差異

非營利法人은 主目的이 純利益의 增大에 있는것은 아니지만 非營利 組織體가 繼續하여 소기의 公益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必要한 資源을 원할히 확보하여야 한다. 영리 조직체가 주로 財貨나 서비스를 販賣하고 그 對價를 통해 資源을 獲得하는데 대해 非營利法人은 財貨나 用役의 販賣를 포함한 기타의 多様な 方法으로 資源을 調達하고 있다.

具體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政府, 地方自治團體: 税金, 民願奉事手數料, 기타
- ② 宗教團體 : 各種獻金, 寄附金 등
- ③ 醫療機關 : 診療費, 補助金 기타

- ④ 自發的 福祉機關 : 補助金, 寄附金 등
- ⑤ 慈善團體 : 獻金, 寄附金, 補助金 등
- ⑥ 大學 : 登錄金, 政府補助金, 寄附金 등

이와같이 대부분의 非營利 組織體는 시장기구를 통해 資源을 調達하기 보다는 税金, 寄附金, 補助金, 會費 등 자원제공자의 一方的인 지원을 통해 所要資源을 獲得하고 있다.

3) 資源使用 制約上的 差異

營利法人은 自由市場 競爭原則 下에서 保有資源을 利潤의 최대확보를 위해 自由롭게 使用한다. 이에 대해 非營利法人은 大部分 시장기구가 없으며 제공하는 財貨나 서비스가 질적인 것이어서 自由로운 資源活用을 기할 수 있는 諸般與件이 갖춰질 수 없다. 따라서 각종법규나 規則定款 등에 의해 資源의 活用이 嚴格하게 規制된다.

이에따라 非營利法人 에서는 예산편성이 義務的으로 行해져야 한다.

4) 財務報告 目的上的 差異

非營利法人과 營利法人의 財務보고 目的上的 差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情報 利用者 의사결정 내용상의 차이

< 非營利法人 >

現在 및 潛在的 資源의 提供者 및 기타의 情報 利用者들이 合理的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情報을 제공한다.

< 營利法人 >

現在 및 잠재적인 投資者 그리고 기타의 情報 利用者が 投資 및 대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合理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情報을 제공한다.

< 差異 >

- ① 主要 情報 利用者が 다르다. 즉 非營利法人에서의 情報 利用者는 資源의 提供者 이지만 營利法人 에서는 投資者 및 債權者 이다.
- ② 主要 情報 利用者の 資源제공 目的이 다르다. 즉 非營利法人의 資源 提供者는 제공한 資源에 대해 비례적인 經濟的 利得의 獲得을 目的으로 하지 않지만 營利法人의 債權者나 投資者는 貨幣적인 보상이나 投資收益을 獲得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2) 意思決定에 必要한 情報에서의 差異

< 非營利法人 >

- ① 組織이 제공하는 서비스 內容 및 당해 서비스를 持續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能力을 評價하는데 도움이 되는 情報를 제공해야 한다.
- ② 組織의 經營者가 受託責任을 완수하고 있는지 與否에 關聯되는 情報와 組織의 業績을 評價하는데 有用한 情報를 제공해야 한다.

< 營利法人 >

- ① 配當, 利子, 投資利益 및 證券이나 私債의 償還 및 滿期에 關하여 그 時期, 金額 및 不確實性을 評價하는데 유용한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 ② 소유주의 受託責任 이행에 關한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 差異 >

- ① 資源 提供者들의 資源제공목적이 다르므로 그들이 要求하는 情報에 있어도 非營利法人의 資源提供者가 서비스에 關한 情報를 要求하며 營利法人의 투자자 및 債權者는 利益에 關한 現金흐름에 關한 情報를 要求한다.

- ② 非營利法人은 損益이라는 決算財務制表에 의해 業績을 測定 하지만 非營利 組織의 業績을 決算財務 制表에 표시해 줄 것을 要求하고 있다.

5) 情報의 形態面에서의 差異

< 非營利法人 >

- ① 經濟的 資源, 債務, 순자산 및 資源의 效用에 變化를 줄 수 있는 去來, 事件 環境에 關聯되는 情報를 제공해야 한다.
- ② 組織의 成果와 순자산의 金額 및 內容의 變化에 대한 期間測定情報과 서비스활동에 대한 資源의 投入과 산출내용 및 兩者의 關係에 관한 情報를 제공해야 한다.
- ③ 現金 및 流動資源의 收入, 支出, 負債에 의한 차입과 償還 기타 流動性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要因에 관한 情報를 제공해야 한다.
- ④ 利用者의 이해를 돕기위한 經營者의 解說 및 註釋을 提示한다.

< 營利法人 >

- ① 經濟的 資源과 그에 대한 請求權 및 請求權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환경에 關聯된 情報를 제공해야 한다.
- ② 財務的 成果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 ③ 現金의 收入과 支出, 負債의 發生과 消滅, 資本去來, 現金 配當 및 기타 流動資源의 分配 流動性과 健全性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기타요인에 관한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 ④ 利用者를 돕기 위한 經營者의 解說 및 주석을 提示해야 한다.

〈 差 異 〉

- ① 非營利법인에서는 持分,配當 등의 去來가 없으므로 이에 關聯된 情報가 提供될 必要가 없다는 면에서 差異가 있다.
- ② 營利법인의 純利益에 相應할 수 있는 業적측정지표가 非營利法人에서는 없기 때문에 非營利法人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重點的으로 提供해야 한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第二節. 非營利法人의 類型

非營利法人의 形態는 法人組織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普通이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非營利法人의 形態는 個人的 集團 보다는 法人格을 부여받고 있는 法人의 形態로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다. 非營利 法人을 누가 出捐 支配하는가를 基準으로 하여 분류하면

첫째, 國家.地方自治團體나 公共機關이 出捐.支配하는 非營利 法人

둘째, 民間에 支配되거나 運營되는 非營利 法人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政府.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이 所有.支配로 經營하는 形態

이것은 公企業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다. 公企業은 國家.地方自治團體가 直接所有.支配하거나 또는 政府出資機關에서 所有.支配하게 함으로써 間接.所有.支配하는 形態로 나눌 수 있다. 公企業은 特別法에 의하여 成立하는 法人은 非營利 法人으로 成立된다. 公기업은 非營利法人으로 成立은 되어 있으나 그 活動은 一般企業과 같이 營業活動을 하고 있는것이 普通이나 公共성과 社會性에 의해 制約된 企業活動을 하고 있다.

(2) 民營에 支配되거나 經營되는 形態

이것은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기타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成立하고 있는 形態의 非營利 法人을 말한다. 學校法人, 社會福祉法人, 宗教法人, 醫療法人 등은 거의 재단의 形態로 成立하고 있는 非營利 機關이 있다. 이외에도 慈善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여 成立하는 民營에 支配되거나 또는 經營되는 사단형태의 수많은 非營利 機關이 있다. 非營利 法人의 形態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法人格이 없는 사단, 재단으로 公企業을 제외한 모든 非營利 法人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第三節. 會計學上 非營利法人

1. 非營利 機關에 대한 研究報告

非營利 機關 (Non-profit organization)은 營利企業에 대립되는 概念의 용어로서 쓰이며 美國財務會計 原則樹立에 가장 權威있는 機關인 美國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 SFAC No.4의 發表에서 『Non Business』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非營利 機關을 非營利 組織 또는 非營利 團體라 부르기도 한다. 非營利 機關이 法人格을 認定받아 法人으로 成立하는 때에는 非營利 法人으로 존치한다. 그러나 現行法上 法人의 設立은 法律이 규정하는 特徵의 경우에만 認定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權利能力이 없는 이른바 法人格이 없는 사단, 재단으로 존치될 수 있다.3)

이와같은 機關, 組織, 團體 또는 法人을 營利와 非營利 機關으로 하는 基準을 美國會計學會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AAA)와 美國의 財務會計 基準審議會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 FASB)가 發表한 非營利 機關에 研究報告를 살펴 보기로 한다.

註3) 박충환, 非營利 法人의 稅務, 법문사, 1989, P 53 ~ 57

(1) 美國 會計學會의 報告書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for non-for-profit organization)

다음에 列舉한 特性중 하나가 있는 것은 非營利 組織體에 該當한다고 發表하고 있다.

- ① 의도적, 의식적인 이윤추구의 동기가 없을 것
- ② 개인 또는 개별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③ 지분이 매각 또는 교환되지 않을 것
- ④ 자본의 출자자 또는 기증자로 부터 직접 또는 비례하여 재무적 편익이 요구되지 않을 것

이 基準에 따르면 대개 다음과 같이 組織이 包含된다고 한다.

- ㄱ. 대학 (College and Universities)
- ㄴ. 종교단체 (Religious organization)
- ㄷ. 병원 (Hospital)
- ㄹ. 임의의 보건복지 기관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agencies)
- ㅁ. 자선단체 (Charitable organization)
- ㅎ. 정부기관 (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직은 非營利 組織에서 除外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組織의 構成員, 會員 또는 出捐者가 財務上의 效益을 받거나 또는 要求하기 때문이다.

- ㄱ. 협동조합 (Cooperatives)
- ㄴ. 勞動조합 (Trade unions)
- ㄷ. 무역협회 (Trade association)
- ㄹ. 골프 또는 컨트리 클럽 (Golfe or Country clubs)

(2) 美國 財務會計基準 審議會의 報告書

財務會計基準 審議會의 『非營利 組織에 관한 財務報告 目的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nization)』 報告書 에서 非營利 組織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 ① 非營利 組織의 資源은 出捐에 의하여 調達되며, 出捐者는 經濟的 效益이나 또는 對價를 期待하지 않는다.
- ② 創出된 利益은 固有目的社業을 위하여 使用되는 것이며, 配當될 수 없다.
- ③ 持分이 없으므로 이를 賣却, 交換, 償還할 수도 없으며 清算時에도 殘餘財産을 配分하지 않는다.

2. AAA 와 FASB 의 견해

AAA와 FASB에서 발표한 非營利 機關의 概念은 다음과 같다.

(1) AAA 의 견해

AAA 는 利潤動機와 持分에 重點을 두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첫째, 營利와 非營利의 區分基準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동기를 가지고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는지의 여부로서, 非營利 機關은 이윤동기에서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추구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機關이다.

둘째, 營利와 非營利의 區分基準은 持分の 所有와 이 持分の 賣買, 交換에 대한 關心여부로서 非營利 機關은 個人 또는 個別的 私的所有에 속하는 持分이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賣却, 交換도 있을 수 없다.

셋째, 資源의 出捐者 또는 持分權者에 대한 財務的 便益 여부로서 비영리 기관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적소유에 속하는 持分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자본의 出捐者 등에 대한 財務的 便益이 要求되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

(2) FASB 의 見解

FASB는 資源의 調達方法과 持分 그리고 創出된 利益의 使用에 重點을 두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첫째, 資源의 조달방법이 持分の 所有나 또는 對價를 期待하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비영리기관의 자원조달은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적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다.

둘째, 利益의 配當이나 分配의 參與에 대한 여부로서 非營利 機關은 創出된 利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資源의 出捐者 등에게 이익의 配當으로 配分될 수 없다.

셋째, 持分の 所有, 賣買와 清算時 殘餘財産의 歸屬方式으로 非營利 機關은 지분이 없어 賣買, 償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清算時에는 그 殘餘財産은 사적소유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이는 유사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기관 이나 또는 국가에 귀속시킨다.

(3) 非營利 機關의 定義

非營利 機關이라 함은 企業과 같이 利潤追求가 組織의 目標가 아니라 社會的 특수목적을 實現하기 위하여 設立하여 運營되는 학교, 병원, 연구기관, 적십자사, 사회복지단체 등의 기관을 말하며 AAA 와 FASB의 見解에 따르면 非營利 機關이란 의도적, 계획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윤추구를 위한 活動을 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이익의 배당이나 재무적 便益을 기대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으며, 清算時 에는 殘餘計算은 資源의 出捐者 등에게 配分되지 아니하고 國家나 다른 非營利 機關에 귀속시

키는 실체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에 기하여 일반영리 기업에서는 창출하기 어려운 財貨, 用役을 생산, 배분하여 사회, 경제 발전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관 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第四節. 非營利 法人 會計制度의 特徵

本質에서는 非營利 法人 會計制度의 特徵을 考察함에 있어서 먼저 企業 會計制度의 特徵을考察함 으로서 相互比較을 통하여 그 特性을 分明히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企業會計의 特徵

企業會計制度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列舉할 수 있다.

첫째는, 利益에 最大關心을 가지는 것이 企業會計制度의 特徵이다. 이는 企業이 利潤의 追求가 그 設立 目標이므로 當然한 論理이다. 그러므로 企業의 評價基準은 利益에 重心을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는, 企業會計制度의 特徵은 財務諸表(Financial Statements)를 作成하는데 있다. 이 財務諸表에 의해서 企業의 財務狀態와 營業性格이 表示되며 결국 利益의 정도를 나타나게 된다.

세째는, 企業會計制度의 特徵은 不特定 多數의 利害關係者의 利害를 조정하는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企業은 한 個人이나 어느 團體의 귀속물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을 중심으로 하여 직, 간접으로 關聯된 利害關係者 들에게 公정한 會計情報를 提供해야 할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이 意味는 企業이 單純한 利潤追求 동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社會의 富를 生産하고 配分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效果的으로 公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는, 企業會計制度의 特徵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企業會計制度가 企業의 財務的 情報를 유용성 있게 提供함으로서 企業에 關聯된 關

係者들에 合理的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企業會計는 情報를 提供하여 주는 유용한 手段이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企業會計制度의 特徵으로 들 수 있는것은 社會的 規制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國家에서 稅金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法律的 規制를 強化하며 또한 企業이 행하는 經濟的 活動의 比重이 增加됨으로서 그에 關係되는 利害關係者들로 많이 增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利害關係者들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리고 社會的 信賴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客觀的 立場에서 감사(auditing)를 하도록 하고 감사가 실시된 재무제표는 공개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企業會計制度의 特徵일 要約하면, 利益에 最大의 關心을 가지며, 일정한 原則에 의해서 財務諸表가 작성되며 이 財務諸表는 이해를 조성하는 役割을 수행하며 기업재무에 관한 유용한 情報를 提供하여 合理的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社會的 規制가 強化되고 있다.

2. 非營利 法人의 會計制度의 特徵

非營利 法人의 會計制度가 무엇이며 그 제도의 未備點이 가지고 있는 問題點이 무엇인지살펴 보기로 한다.

① 非營利 機關의 會計制度의 特徵은 企業形態(Business type)와 政府形態(Government type)와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企業形態와 같은 종류의 非營利 機關에서는 비록 조직전체의 目的은 營利가 아니지만 財務會計의 目標은 利益을 追求하는 것이 그 特徵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機關에서는 利益을 가장 잘 표시할 수 있는 System인 企業會計制度를 導入하여 쓰는 것이 여러가지 目的에 유

효하게 作用할 것이다. 이 形態는 政府機關이나 公共機關에서 基本財産은 出資하였지만 運營은 獨自的인 收益과 費用을 對應시켜서 測定하므로써 獨立採算制를 可能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表現하면 社會에 대한 奉事の 對價를 直接收益者에게 負擔시키므로써 收益을 實現시키는 것을 말한다. 非營利會計의 特徵을 論하는 對象은 企業形態와 같은 유형이 아니라 政府機關과 같은 유형에서 採擇되고 있는 會計시스템을 말한다.

② 非營利 會計의 特徵은 企業會計制度 에서는 利益이 業績評價基本이 되지만, 利益이 業績評價 基準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非營利會計가 지니는 屬性으로 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특징이다. 특히 이 특징은 非營利 會計의 目的 및 유용성과 關聯하여서 重要な 要件이 된다.

왜냐하면 組織의 目標가 營利의 追求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 에서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財務諸表의 目標가 企業의 目標과 合致된 것과 는 달리 財務諸表가 포기하는 主要目標을 다시 設定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非營利 會計는 組織目標를 實現하기 위한 下位手段이 된다.

③ 非營利 會計의 特徵은 基金會計(Fund accounting)이다. 이 基金會計란 非營利 機關의 財務活動의 基礎는 贈與된 基金이 된다. 이 基金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組織의 基礎가 財産 즉 원천적으로 조직의 자본화가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運營(Operating)을 위한 基金이다. 이 運營資金은 制限된 目的을 위한 基金과 一般目的을 위한 基金으로 분류한다.

④ 非營利 會計의 특징은 豫算編成(Budgeting)이 會計行爲를 하기 위한 重要的 指針이 되고 組織活動의 정도를 會計的 側面에서 確定하고 制限하는 구체적인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非營利 會計에서 豫算編成이 重要的 이유는 資金의 源泉이 制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制限된 資金을 가지고 效果的으로 運用(use)하기 위해서는 計劃화된 資金의 執行과 統制가 要求된다. 이것은 豫算

編成으로 인한 統制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⑤ 非營利 會計의 特徵은 資金運用法의 作成이 重要な 것이다. 이것은 豫算編成이 資金의 收支의 適合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⑥ 非營利 會計의 特徵은 單式簿記制度(Single-entry bookkeeping system)을 採用하여 會計活動을 記錄한다는 데 있다. 이 單式簿記制度는 現金의 收支를 記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制度는 複雜하고 規模가 거대화된 組織의 財務狀態를 正確히 把握하고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手段으로서는 未洽한 點이 많다. 實際적으로 非營利 會計에서 惹起시키는 根本적인 것이 單式簿記制度에 의한 現金收支를 중심으로한 회계 시스템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會計 시스템의 設計나 會計原則을 設定함에 있어서 이 單式簿記制度가 正規簿記制度 (複式簿記制度)로 轉換되어야 한다는 것은 至極히 당연한 歸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組織의 財務에 관한 合理的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에 關聯된 會計情報가 適切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適切한 會計的인 情報를 提供하려면 定規簿記制度가 有效한 情報手段이 되는 것으로서 認識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非營利會計를 要約 定理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① 非營利 機關에서 作成된 財務諸表는 企業會計에서 作成된 財務諸表上에 나타난 純利益과 같은 운영결과 全體的인 判斷基準이 없다.

② 운영결과포가 여러부분의 資金으로 나뉘어져서 그 性格이 不分明한 反面에 企業會計에서는 자금의 全體의 統一된 形態로 표시되어 그것이 利益이라는 概念으로 結果가 표시된다.

그러나 非營利 會計에서는 資金의 校費會計資金과 기성회비자금 구분표시로 인하여 통일된 자금의 形態를 가지지 못한다.

③ 非營利 會計 에서는 經濟的인 現實의 去來(transaction)와는 아무런 關聯性이 없는 剩餘 資金의 源泉을 삼고 있는 反面에 企業會計 에서는 資金, 負債, 資本, 費用, 收益에 대한 認識과 測定이 經濟的 價値의 增減, 發生, 소멸시에만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第五節. 非營利 會計 理論

오늘날의 會計理論은 주로 企業會計를 중심으로 한 기간손익의 測定과 財務報告에 焦點을두고 시행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非營利 會計도 企業會計와 마찬가지로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삼아·收益과 費用을 把握하며 簿記上の 去來를 토대로 하여 기록,정리,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非營利組織의 存在目的上的 差異고 인해서 會計上の 獨特한 側面을 가지고 있다.4)

이러한 點에서 非營利 會計의 理論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基金會計 (Fund Accounting)

非營利 會計가 企業會計에 비하여 가지는 特徵중 가장 뚜렷한 것은 基金會計이다. 基金會計가 發生하게된 것은 非營利組織에서 使用하는 資金의 源泉이 매우 多樣하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統制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基金會計한 使用이 制限된 資源을 하나의 基金으로 하여 이것을 管理保存하고 보고하는 회계라고 말할 수 있다. 美國의 政府會計 國家委員會 (Governmental Accounting)에 의하면 基金이란 特別한 法令制約 또는 制限에 따라 特定한 活動을 修行하고 어떤목적을 達成하기 위하여 분리된現金및 기타의 財務的 資源과 그 實體에 關聯되는 負債,殘餘持分 및 그 變動의 全部를 記錄하는 一連의 자기평균을 가진 財務 또는 會計實體이다.

한편 Fund란 用語는 資金 또는 基金으로 翻譯되지만 양자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자금은 普通企業에서 使用하는 用語이며 使用에 고도의 임

註4) 윤운석, 비영리회계의 주요이론, 광운대학신문, 1984

의성이 있는데 대하여 기금이란 용어는 보통정부 및 非營利 組織에서 使用하는 用語이며 使用에 고도의 제약을 받게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非營利會計에서의 概念은 극히 다르다.

또한 企業會計가 企業實體를 하나의 會計單位로 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영리 회계에서는 하나의 基金을 하나의 회계실체로 봄으로써 보통 하나의 비영리 조직은 다수의 회계실체를 가지게 된다.

2. 豫算會計(Budgetary Accounting)

非營利組織이 제공하는 財貨나 서비스는 공정시장가치로 測定하기 어렵고 그성과를 기업회계처럼 이익액의 대소로써 판단할 수 없으며 필요한 資源을 자체의 收益事業을 통하여 調達하는 것이 아니라 強制的 부과방법 또는 自發的인 寄附 및 會費 등을 통하여 調達함으로써 企業會計 보다는 훨씬 多樣하고 獨自的인 統制方法이 適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必要性 때문에 나타난 것이 豫算制度이며, 이 豫算制度는 非營利 會計의 重要한 特徵중의 하나이다. 非營利 會計에서의 豫算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推定支出額과 이 支出에 所要되는 資源의 調達方法 등을 명시한 財務活動計劃(Planning of financial operation)을 意味하며 内容上으로 볼때 다음과 같은 特色이 있다.

① 非營利 會計의 豫算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즉, 豫算은 當該組織이 일정기간동안 제공해야 할 財貨나 서비스의 内容, 공급시기 등을 규정하며 國會나,總會 또는 理事會를 통하여 確定되면 嚴格한 준수가 강요되는 것이다.

② 豫算은 기간별로 固有性을 가진다. 企業會計는 끊임없이 스스로 資源을 調達하여 지속적인 活動을 營爲함으로써 계속 企業의 公중이 적용되나 非營利 會計는 이러한 공준의 적용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非營利 組織이 調達한 資源은 實質적으로 日程豫算期間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이다.

③ 非營利 會計의 豫算은 資源의 調達과 直接的인 關聯를 맺는다.

예를들면, 政府의 歲出豫算은 과세액의 크기를 결정지으며 자선, 복지단체에서의 예산은 회원의 부담액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오늘날에 와서는 豫算의 개념도 더욱 發展하며 成果豫算을 중심으로 철저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사고에 이르고 있으며 계획, 절차, 예산, 회계와의 통합 즉 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system)로서 실무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3. 修正發生主義 (Modified Accrual Basis) 會計

企業會計에서 收益과 費用의 인식기준은 發生主義에 의하는 것이 原則이며 이것은 損益計算上 重要な 意味를 갖는다. 非營利 會計에서도 原則적으로 發生主義의 適用이 바람직 하지만 기금에 適用되는 法規 등으로 인하여 現金主義 또는 수정발생주의를 인식기준으로 삼게된다. 발생주의란 收益과 비용을 現金의 收受와는 관계없이 그 발생의 사실에 기인하여 인식하자는 주의이며, 현금주의란 현금이 포함된 거래만을 인식하자는 주의이고, 수정발생주의란 어느 去來는 현금주의에 의하고 어느거래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자는 주의이다. 期間損益의 正確性이나 論理性으로 볼때 非營利 會計에서도 發生主義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로 해서 발생주의가 嚴格하게 지켜지지 못한다.

① 法規에 의하여 수정발생주의나 현금주의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收益, 費用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非營利 組織이라 할지라도 연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한 豫算이 서있지 않으면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② 非營利 會計에서는 收益性 (Profitability) 보다는 現金殘額 (Cash

balance)이 더 중시된다. 企業會計에서는 收益性を重視함으로 發生主義를 선호하고 非營利會計에서는 현금잔액을重視함으로 現金主義를 선호하게 된다. 會計處理의 간편성과 단순성 때문이다 非營利組織은 그 性格上 숙련된 會計處理者가 적은 경우가 많은데 현금주의에 의하면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용이하게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非營利會計에서는 수정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가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수정발생주의를 여러분야에서 非營利組織體의 會計原則으로 인정하고 있다.

4. 減價償却會計 (Depreciation Accounting)

非營利會計에서 가장 論爭이 심한 部分이 減價償却의 會計處理 問題이다. 固定資產의 취득을 費用處理하면 減價償却의 問題는 發生하지 않으나 固定資產을 資本化 시켰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減價償却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企業會計에서는 減價償却이 당연히 處理되므로 問題가 되지 않으나 非營利會計에서는 이익결정 보다 기금잔액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정자산의 減價償却에 있어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減價償却의 贊成論 >

① 非營利組織의 目的은 특정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으며 利益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 것은 明白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운동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資源의 효율적 使用과 特定 및 報告를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특별모금에 의해서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고정자산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을때 減價償却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며 收益이 그 原價를 충분히 보상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③ 非營利 組織 일지라도 營利企業과 同一한 財産과 用役을 販賣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收益創出活動이 包含될 境遇에는 企業會計와 마찬가지로 減價償却을 계산하는것이 타당하다.

< 減價償却의 反對論 >

① 減價償却이란 費用의 配分인데 이는 收益과 費用概念이 完全하고 利益決定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企業會計에서만 適用할 수 있는 것이다. 非營利 組織의 存在가치는 組織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利益創出 目的이 아니다. 따라서 非營利組織에서 減價償却을 하는 것은 유용성이 없다.

② 많은 非營利 組織은 주요 固定資産을 取得하기 위해 특별모금운동을 벌여 필요자금을 마련한다. 대체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시 모금운동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의 배분이 필요없다.

③ 非營利 會計에서는 受託기능이 強調됨에 따라 統制의 手段으로 豫算制度를 導入한다. 豫算이란 收入과 支出의 關係를 각 기금별로 作成하는 것이므로 減價償却은 豫算에 包含시킬 수 없는 性格이다.

以上에서 減價償却에 대한 贊成論과 反對論을 살펴 보았는데 나름대로 주장하는 논거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느것이 보다 妥當性이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의 非營利 會計의 경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合理的 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非營利 會計는 從來의 單純한 財産保全責任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事業運營責任이 重視되고 있음으로 減價償却의 계상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문회계기

관들의 見解는 대체적으로 減價償却의 계상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非營利 會計理論을 AAA, AICPA, FASB 등의 研究報告書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드시 현재 비영리 회계에서는 현금주의 또는 수정발생주의가 인식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기간손익의 正確性이나 論理性으로 볼때 발생주의의 適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基金會計에서는 각 기금의 特殊性 때문에 個別報告가 행해지고 있지만 기업회계 처럼 전체로의 단일보고가 정보이용면에서 볼때 바람직하며, 예산회계에서는 소요되는 자원이 強制的 부과방법 이나 自發的 기부 방법으로 調達되기 때문에 企業會計에 비해 독자적인 統制方法이 必要하다고 判斷 되었다. 固定資産의 減價償却問題에 있어서도 오늘날 非營利 會計가 消極的인 財産保全責任 보다는 積極的인 資源配分責任을 強調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때 減價償却을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斷되었다.

第三章. 非營利 法人의 會計分析

第一節. 非營利 法人會計의 重要性

會計는 會計主體의 性格에 따라 一般的으로 企業會計(Accounting for business enterprise)와 非營利會計(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제까지 傳統的인 會計는 주로 企業을 對象으로 한 會計理論과 會計實務에 대하여 說明하여 왔으나 非營利 會計에 대하여는 重要하게 關心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事實이다. 왜냐하면 非營利 組織은 소비경제단위로서 보편적으로 單式簿記에 의한 會計處理에 依存하고 一般 企業 에서와 같은 조세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으며 會計가 內部目的을 위하여 豫算의 執行結果만을 計算報告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非營利 組織의 活動은 社會經濟的으로 대단히 重要的 것이 틀림 없고 또한 그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따라 非營利 組織의 會計問題도 現實的으로 소홀히 取扱할 수 없는 會計의 새로운 關心分野라고 말할 수 있다. 非營利 組織은 政府, 教育機關, 宗教機關, 慈選機關, 醫療福祉機關 등을 包含한다.

우리나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 組織의 分類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5)

註5) 任昭燮, 會計와 稅務, 大韓稅務協會, 1981. P.37 - P.49

① 公共法人：國家，地方自治團體，組合

② 非營利 法人

ㄱ.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 제32조의 법인)

ㄴ.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법인)

ㄷ.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민법 제32조의 법인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법인

③ 法人格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④ 普通法人

非營利法人은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基金의 寄贈者에게 金錢的利益을 分配하지 않으며 資本持分이 어느 個人의 所有가 되지 않는 등 一般企業과는 本質적으로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에서처럼 配當可能利益을 計算할 必要가 없고 企業會計에서 基本原理로 하고 있는 收益費用對應의 原則이나 費用配分の 原則등이 非營利會計에는 그대로 適用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企業會計基準을 非營利會計에 그대로 適用하는 데는 難點이 있고 不合理한 要素가 있기 때문에 非營利法人의 社會性 및 公共性의 目的에 合致하는 別途의 會計處理基準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統一된 會計處理기중에 따라 會計實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非營利法人이 正規의 複式簿記原理에 準하여 갖추어야 할 會計體制에 관한 實務的 指針을 위하여 다음 節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第二節. 非營利會計의 內容

1. 特徵 및 目的

非營利會計는 企業會計와 달리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가지고 있다.

1) 非營利法人의 財産

非營利法人은 本來 公益을 목적으로 提供된 재산이 收入의 주된 財源이 되며 만약 財産的 基盤이 약한 경우에는 收益事業을 營爲하여 財源을 補充하는 境遇도 있다. 財産은 基本財産과 運用資産으로 區分하고 基本財産이 되는 現金預金이나 固定資産에 대하여는 그 管理나 處分에 있어서 받은 規制를 받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2) 豫算會計

非營利會計의 特徵中에 하나는 豫算會計 라는 點이다. 이것은 一般企業이 같은 豫算과는 다르며 회계안에 豫算을 導入하는 制度로서 意味를 갖는다. 豫算은 總會나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承認되고 當該法人은 豫算에 의하여 制約을 받는다. 이와같이 非營利法人은 豫算會計의 特色을 갖고 있으므로 會計處理上 難點이 있게된다. 例를 들면 固定資産, 장기차입금, 積立金, 충당금의 처리는 一般企業과는 다른 理解를 하고 있다. 또 會計上의 收入 및 費用科目은 豫算에 의하여 決定되고 연도말에 作成되는 收支計算書와 各科目은 實績額과 豫算額을 對比하여 作成된다.

3) 會計單位의 目的別 區分

非營利 會計는 公益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活動領域을 갖는다. 따라서 通常 一般會計와 各種의 特定目的에 따라 特別會計가 設定되어 基金會計가 이루어지며 각기 독자적 會計單位로서 收支計算과

財産計算을 실시한다.

4) 剩餘金

非營利 法人은 一般企業에서 처럼 持分에 의한 利益의 分配를 必要로 하지 않으므로 每會計 年度の 剩餘金은 源泉的으로 다음 會計年度の 公益事業에 使用하거나 財産維持를 위하여 基本財産에 轉入한다. 그리고 非營利 法人이 解散하게 되는 경우에도 殘餘財産은 營利法人 에서와 같이 株主에게 配分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目的을 갖는 다른 非營利 法人에게 인계되거나 國家에 引繼되는 것이다. 만일 非營利 法人이 收益事業을 하여 이 수익사업에서 剩餘金이 생겼다면 이것도 營利法人이 利益分配하는 것처럼 處分해서도 안될 일이다.

5) 會計處理의 特色

- ① 企業會計에서는 발생주의회계가 원칙이나 非營利 會計는 수정발생주의가 흔히 使用된다.
- ② 非營利 法人의 公益活動에 대한 成果測定은 화폐액으로 표현할 수 없거나 客觀的으로 명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產出된 성과의 價値測定은 질적인 측정이 實施되기도 하며 오히려 산출가치 보다는 投入價値의 측정 보고가 더 중요하게 행하여진다.
- ③ 非營利 會計에서는 企業會計와 比較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價値의 把握이 그렇게 重要하지 않으며 또 期間損益計算을 精密하게 하기 위하여 費用配分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減價償却計算이 省略되는 수가 있으며 때로는 固定資産은 備忘的으로 記錄되어 취득사실만을 기재하는 수가 있다.

이와같이 非營利 會計는 企業會計와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으나 企業會計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會計情報利用者에게 財務的 情報

를 提供하는 것과 같이 비영리 회계 에서는 會計情報利用者는 基金 및 財産의 寄贈者 補助金を 교부한 政府 및 기타기관회비를 納付 하는 會員, 非營利 法人이 제공하는 情報의 利用者로서 金融機關 등의 債權者, 內部管理者, 인가감독하는 主務官廳 등이며 이들은 當該法人이 受託한 基金 및 財産을 誠實하게 管理하고 소기의 目的대로 眞實하게 運用하여 이에대한 適正한 會計報告를 作成提示할 것을 期待한다. 그러므로 비영리 회계는

첫째로 受託基金에 關한 管理 運用의 狀況을 明確히 표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하여

- ① 當該事業年度中에 受託基金의 増減原因을 正確하게 파악하며
- ② 當該事業年度末 現在의 受託基金의 狀態를 정확히 作成報告할 必要가 있다.

위 ①의 결과를 報告하기 위한 計算書로서 收支計算書를 ②의 결과보고서를 위하여 貸借對照表가 作成된다.

또 非營利 法人은 每事業年度에 當該事業年度の 事業計劃을 立案하여 이에 所要되는 資金의 調達과 運用에 關한 收支豫算을 編成하여 總會나 理事會 및 監督部處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當該法人의 營利適任者는 이 收支計算을 기초로하여 充實하게 事業計劃을 수행할 것이 要請된다.

그러므로 非營利 會計는 둘째로 當該法人의 事業計劃의 수행상황을 明確히 할 目的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상기의 收支計算書에 收支의 豫算額과 實績額을 比較表示 하여야 한다. 만약 豫算額과 實績額 과의 差異가 顯著한 科目이 있다면 그 原因을 주석으로 說明 해야 한다.

2. 一般原則

非營利 會計는 會計帳簿와 財務諸表(計算書類)를 作成 하는데는 우리나라의 現行 企業會計基準에서 정하고 있는 몇가지 原則을 준수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 ① 非營利 法人의 事業 및 財務狀況에 대하여 眞實한 企業情報를 明瞭하게 表示하여야 한다. (眞實性の 原則 및 明瞭性の 原則)
- ② 複式簿記의 元利에 따라 正確하게 記帳되어 있는 會計帳簿를 根據로 作成되어야 한다. (正規簿記의 原則)
- ③ 會計處理基準 및 節次는 每期繼續하여 適用하고 正當한 사유없이를 變更하여서는 안되며 期間別 比較가 可能하도록 하여야 한다. (繼續性の 原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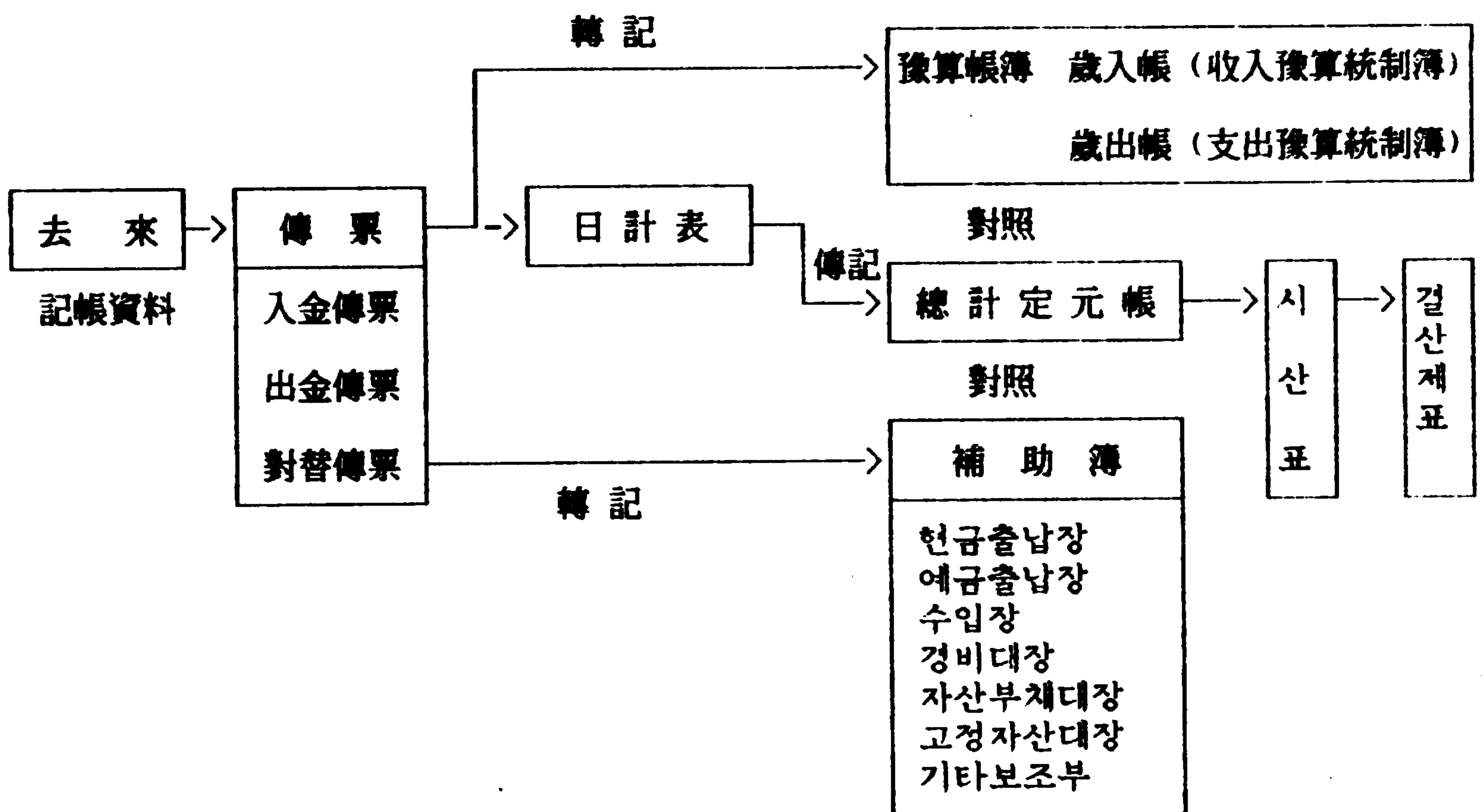
明瞭性の 原則은 會計報告書의 作成原則에 該當되는 것이며 특히 非營利 會計 에서의 會計報告書의 作成原則은 豫算收支와 實績決算收支와의 比較表示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회계장부의 記帳에 있어서는 複式簿記의 方法에 의할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아주 小規模의 非營利 法人에서는 單式簿記의 方法을 利用하여도 큰 支障은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複式簿記의 方法에 의하는 것이 會計處理上 正確性を 기할 수있고 自動檢證能力에 의한 會計上의 不正誤謬을 방지할 수 있으며 會計處理도 더 簡便하다고 할 수 있다. 上記의 原則以外에 重要性の 原則이나 보수주의원칙도 非營利 會計에서 준수하여야 할 一般原則인 것이다.

3. 會計帳簿의 組織

會計帳簿의 形式과 形態는 事業의 性質, 當該法人의 實績과 必要에 따라 合理的으로 變形하여 使用할 수 있고 收益事業의 有無에 따라서 帳簿組織도 다르게 되나 帳簿組織의 一般的인 形態는 <표4-1>에 圖示하는 바와 같다.

< 表 3-1 >

帳簿組織의 一般的인 形態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非營利會計는 豫算會計와 密接한 聯關이 있다는 點이 特色이다.

따라서 非營利 會計의 帳簿組織도 一般企業會計에서 볼 수 없는 豫算과 聯關한 收入과 支出을 記錄하는 세입장(수입예산통제부)와 세출장(지출예산통제부)이라는 새로운 會計帳簿가 갖추어져야 한다. 세입장 및 세출장 (수입 및 지출예산통제부) 이라는 帳簿는 보조부적 存在의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豫算會計의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 非營利 會計에서는 主要 帳簿로서의 관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第三節. 非營利 法人會計의 收支計算

1. 收支의 計算基準

非營利會計에서 收支計算을 어떠한 基準에 의하여 測定할 것인가 하는 것은 會計上 重要な 問題이다. 가장 簡單한 收支計算의 基準은 현금주의 (Cash basis)이다. 이에 의하면 現金의 收入은 當該年度의 收入으로 하고 現金의 支出은 當該年度의 支出로 計上하여 그 差額은 當該年度의 剩餘金으로 計上하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이 現金預金の 増減私食을 基礎로 하여 收入과 支出을 計上하는 것이다.

現金預金の 増加 —→ 收入의 計上

現金預金の 減少 —→ 支出의 計上

이 現金基準은 小規模의 非營利 法人이나 신용거래가 比較的 적게 發生하는 境遇에 많이 適用하고 있는 方法이다. 그러나 信用去來가 日常的으로 増大되고 當該期間의 收支計算을 적정하게 計算하기 위하여는 現金預金の 増減을 計算하는 것만으로는 當該法人의 財務活動의 內容을 充分히 把握하기 어렵다. 따라서 現金주의를 擴大하여 信用去來에 의하여 金錢債權, 債務가 確定된 사실도 收入의 範圍에 包含하는 것이 合理的인 方法으로 採擇하고 있다.

現金預金の 増加 및 金錢債權의 確定 —→ 收入의 計上

現金預金の 減少 및 金錢債務의 確定 —→ 支出의 計上

이러한 計算基準을 수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basis) 또는 반발생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obligation basis)라고 말하고 있다. 非營利會計에서 수정 발생주의를 收支計算의 認識基準으로 適用하는 것은 企業會計基準과 性格을 달리하는 內容中の 하나이다.

① 現金預金の 増加에 의한 收入計上

會費收入, 寄附金收入, 利子收入, 配當金收入, 補助金收入, 固定資産賣却收入, 借入金收入 등이 現金預金を 増加 시키는 境遇 이는 全部 收入으로 計上한다. 또한 先受會費收入이나 先受利子收入 등의 先受收入도 現金預금이 増加된 事實에 따라 이들도 모두 收入으로 計上한다.

② 現金預金の 減少에 의한 支出의 計上

事業費支出, 管理費支出, 固定資産取得支出, 借入金償還支出 등 現金預金の 減少가 따른 境遇에는 支出로 處理한다. 또한 先給保險料, 先給利子 등의 先給金도 現金預金の 減少事實에 따라 모두 支出로 計上한다.

③ 金錢債權의 確定에 의한 收入의 計上

未收會費, 未收利子, 未收金, 받을어음 등의 金錢債權에 대하여 當該年度 中에 確定된 金額은 收入으로 計上한다. 단 이러한 金錢債權에 대하여는 그 회수가 確實한 金額에 한하여 收入으로 計算하여야 한다.

④ 金錢債務의 確定에 의한 支出의 計上

未支給利子, 未支給金, 지급어음 등의 金錢債務에 대하여 當該年度 中에 確定된 金額은 모두 支出로 計上하여야 한다.

2. 收支項目의 分類

收入 및 支出의 項目은 法人의 事業規模形態 및 그 性格에 따라 다르지만 非營利 法人에서 一般的으로 쓰고 있는 主要項目은 대개 다음과 같이 分流할 수 있다.

(1) 收入 項目

- ① 회비수입 : 정회원비용수입, 준회원회비수입
- ② 보조금수입 : 정부보조금수입, 기타보조금수입
- ③ 기부금수입
- ④ 재산운용수입: 기본재산이자수입, 기본재산배당수입, 기본재산 임대수입
- ⑤ 사업수입 : 출판물판매수입, 수탁용역수입
- ⑥ 잡 수입 : 운용재산이자수입, 기타잡수입
- ⑦ 기타수입 : 기본재산수입, 특별회계전입금수입(수익사업회계포함), 선수회비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차입금(장, 단기) 수입
- ⑧ 전기이월수지차액

(2) 支出項目

- ① 사업비지출 : XX 사업비 지출 (사업종류별)
- ② 관리비지출 : 임원보수, 급료수당, 회의비 등
- ③ 잡 지출 : 지급이자, 잡지출
- ④ 기타지출 : 고정자산취득지출, 차입금상환지출, 선지급사업비 지출, 퇴직급여적립금지출, 특별회계전입금지출
- ⑤ 차기이월수지차액

(3) 收支計算과 財産計算의 關係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收支計算은 單純한 現金의 收支計算이 아니라 金錢上의 債權과 債務까지 擴大하여 認識하여야 한다. 金錢上의 債權은 次期年度에 收入될 權利이고 債務는 次期年度에 支出해야 할 義務이므로 다음과 같이 算式이 成立된다.

$$(현금수입 + 차년도 수입권리) - (현금지출 + 차년도의 지출의무) = 잉여금$$

剩餘金은 현금 + 차년도수입권리 - 차년도지출의무 로 計算된다.

이것을 圖表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表 3-2 > 收支計算과 財産計算의 關係式

수지계산

현 금 지 출	현 금 수 입 (前年度移越金包含)
차년도지출의무	次年度の 收入權利
잉 여 금	

재산계산

현금, 예금 기타재자산	유동부채
미수금 (차년도의 수입권리)	미지급금 (次年度の支出義務)
고정자산	기 본 금
	잉 여 금

이와같이 收支計算과 財産計算은 對稱關係를 갖는다. 즉 收支計算은 財産變動의 內譯을 표시하는 것이고 財産計算은 財産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收支計算 및 財産計算은 廣義의 意味로 收入支出의 計算的比較를 표시하는 各各의 形式 이라고 말할 수 있다.

第四節. 非營利法人會計의 財産計算

1. 財産의 種類와 內容

非營利法人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運用財産의 두가지로 區分한다는 것은 이미 言及하였다. 財團法人이 設立된 때 設立者가 출연한 財産 가운데에는 當該法人의 財務的 基盤을 確固히 할 目的으로 一定한 目的財産을 가져야 하며 이것에서 얻은 果實收入으로 事業을 수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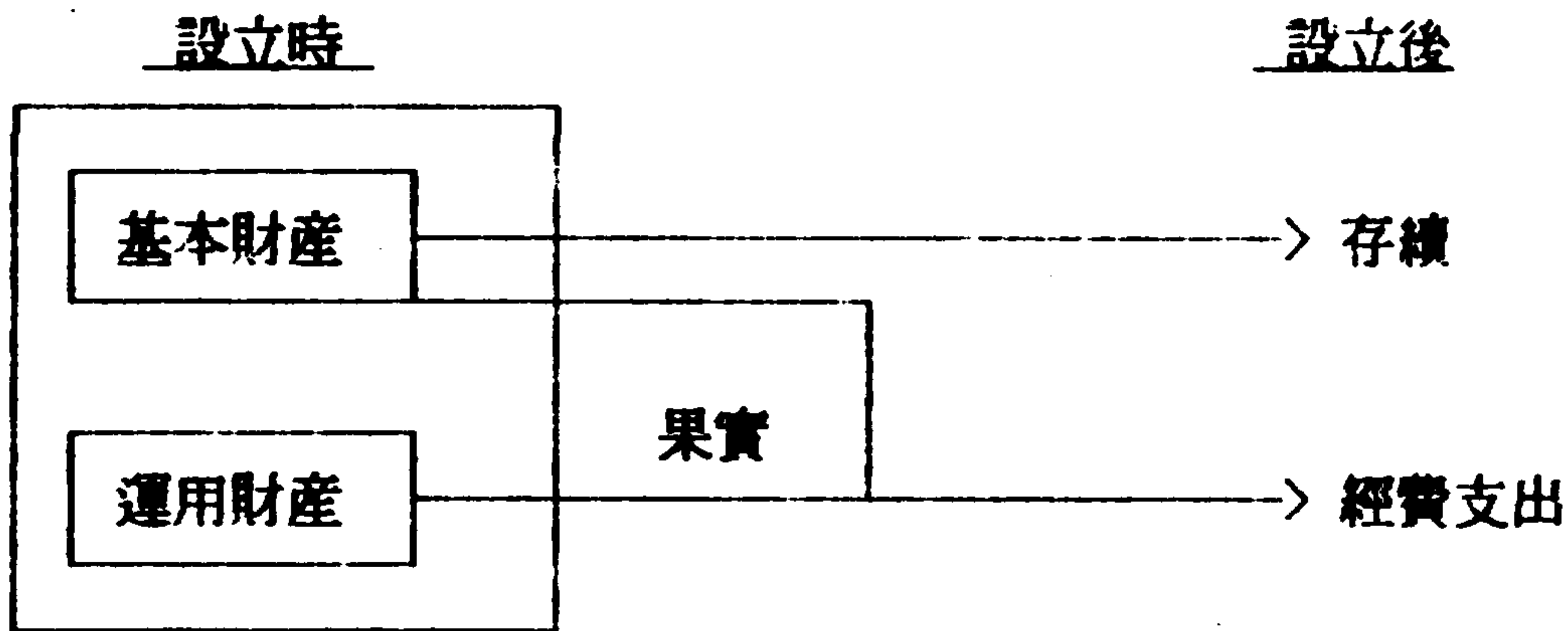
이와같은 目的財産을 基本財産이라고 말하며 運營財産과 區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果實을 얻기 위하여 銀行預金, 金錢信託, 有價證券, 不動産 같은 것에 投資하는 財産이다 또 設立한 後라도 基本財産으로 寄附받은 財産이나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基本財産으로 轉入된 財産도 여기서 말하는 基本財産으로 된다. 이 基本財産에 대하여 法令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이는 法人의 存立을 左右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法人 自體에서 基本財産 관리규정과 같은 규정을 만들어 이에 의하여 管理運用하는 것이 소망스런 일이다.

따라서 基本財産을 任意로 處分하거나 擔保로 제공하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特別한 사유가 發生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承認을 득하여 일부 處分하는 수도 있다. 이때 그 處分 이유는 客觀적으로 妥當하여야 하며 處分方法이나 處分後의 措置가 適法하게 이루어져서 事業運營의 健全性 및 公共性을 해칠 念慮가 없어야 할 것이다.

運用財産은 普通財産이라고 부르며 一般的으로 설립당초에 총재산에서 기본 재산을 差減한 나머지 財産을 말한다. 設立한 後에도 基本財産을 運用하여 얻은 과실수입과 그밖의 다른 收入에 의하여 얻은 財産은 運用財産으로 包含하여야 한다. 이 運用財産은 事業運營을 經費로 支出하게 된다.

〈 表 3-3 〉 基本財産 및 運用財産事業運營式



2. 固定資産의 減價償却

企業會計에서 減價償却을 計算하는 目的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고있다.

① 損益計算 目的

固定資産의 差額을 各期間에서 費用配分 과정을 통하여 費用化 하므로서 正確한 損益計算을 目的으로 한다.

② 資金計算 目的

固定資産에 投下된 資金을 一定한 期間 동안에 流動化過程을 통하여 回收하거나 内部留保를 통한 자기금융을 目的으로 한다.

③ 財産計算 目的

貸借對照表일 現在의 財産價額을 적정히 표시하기 위한 財務評價를 目的으로 한다. 現代 企業會計에서는 減價償却을 費用(원리)의 적정한 期間配分으로 損益計算을 正確히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는 點에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이 點에 대하여 非營利會計의 立場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첫째로, 非營利會計는 豫算會計이므로 固定資産의 購入支出은 當該年度의 收支計算의 對象이 된다. 그러나 다음 年度에 이에 대하여 減價計算을 하는 경우 이것 때문에 現金이나 다른 貨幣性資産이 減少하

거나 剩餘金이 減少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음년도의 收支計算의 對象에 包含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固定資産의 減價償却을 수정내용기간의 비용으로 損益計算書에 計上하는 企業會計에서의 감가상각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뜻을 달리하고 있다.

둘째, 非營利會計에서의 剩餘金은 次年度에 이월되어 次年度의 事業活動에 使用하는 것이 普通이다. 한편 剩餘金을 處分한다 하더라도 例를들면 退職給與積立金 등으로 轉入하는 것으로 剩餘金이 단지 다른 形態로서 留保되는것 뿐이다.

이것이 利益處分을 配當 등으로 社外에 流出하는 營利法人과 다른점이다. 따라서 減價償却이 投下資本의 回收나 자기금융 등의 자금계산 目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非營利會計에서는 企業會計에서 말하는 減價償却의 目的이 그대로 適用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非營利會計에서는 減價償却計算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잔존가액과 내용년수를 추정 하여 減價償却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企業會計는 商法, 稅法 및 企業會計基準과 같이 適用되는 法令이 規定이 있지만은 비영리 회계에는 이 같은 規定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을 計算하지 않아도 問題될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器具備品과 같이 金額적으로 少額이고 短期間內에 消耗되는 固定資産은 減價償却을 計算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거나 非營利 法人에게는 그 效果가 큰 差異가 없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金額의 建設費를 들어 完成한 建物이나 연구기관의 圖書같은 고정자산은 取得한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취득원가를 그대로 장부가적으로 두어도 좋을 것인가 하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使用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減額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減價償却이 剩餘金에는 關係되지 않는 것

이지만 固定資産의 減額으로 인하여 純財産의 價値에는 영향을 주게 되므로 非營利 會計에서도 일정한 基準을 정하여 減價償却을 計算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減價償却의 計算方法은 定額法, 定率法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非營利 法人은 定額法이 더 타당한 방법으로 보며 내용년수나 잔존가액의 추정은 法人稅法의 規定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積立金 및 充當金 計算

(1) 積立金の 處理

企業會計에서 積立金은 利益의 社內유보 축적을 意味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一實體가 現金이나 다른 화폐적자산으로 별도로 積立되는 것이 아니고 全資産中에 包括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非營利 會計는 그 處理를 다소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將來에 建物の 신축이나, 개조 장기근속자의 退職金 등과 같이 一時에 多額의 現金支出을 要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한번에 支出하기가 어렵거나 또 이것에 의하여 원활한 事業活動에 支障을 초래하는 수가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미리 每事業年度の 支出豫算에 편성하여 일단 이것을 當該年度の 支出로 計上하고 다른 별도의 特定資産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같은 積立金은 各法人에 따라 여러가지 目的에 따라 積立하게 되지만 예를 들면 退職給與積立金, 事務所擴張積立金, 特別事業積立金 등과 같은 것이다. 株式會社에 있어서 商法 등의 法令에 의한 강제적적립금이 非營利 法人에게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2) 充當金の 處理

企業會計에 있어서 充當金은 特定資産에 의한 差減的 評價計定の 성실의 評價性充當金과 特定費用에 대한 準備로서 장차에 支出될 것으로 예상되고 當期の 收益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期間損益의 立場에서 그 金額을 추정하여 當期の 費用으로 計上하는 負債性充當金이 있다.

非營利 法人의 會計는 損益對應이라고 하는 損益計算이 아니고 豫算을 基準으로한 收支計算이다. 그러므로 收支計算의 立場에서 果然 그같은 充當金이라는 것이 存在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없앨 수 없다. 充當金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退職給與充當金에 대하여 보면 在職員이 退職할 때 退職金支給 規程이나 勤勞基準法の 規程에 의하여 退職金を 支給한다.

이 規程을 보면 退職金은 勤務年數를 基準으로 해마다 加算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문에 實際退職의 事實이 없다 하더라도 그 在職員에 대한 退職金支給義務는 每事業年度마다 점차 늘어나며 發生한다 그러므로 每年度 마다 이 發生額을 收支計算의 支出로서 計上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實際로 退職하지 않으면 現實적으로 現金이 支出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長期負債의 性質로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收支計算上の 支出로 計上한 支給義務發生額은 退職給與積立金과 같이 特定한 運用財産으로거 別途管理하여야 한다.

(3) 借入金 計算

本來의 收支會計에서는 借入金도 收入이며 또 借入金の 返済도 支出로 하여 年度末收支計算書에는 收入과 支出의 쌍방에 計上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收入不足을 메꾸기 위한 短期借入金は 年度內에 반제되는 것이므로 一般實務에서는 兩者를 相計하여 計上한다. 요컨대 借入金 收入은 收入으로 삼지않고 借入金返済는 支出로 計上하지 않는 方法을

取한다 이것은 豫算書 作成에 있어서 단지 出納帳을 通過하는 것으로 하여 豫算에도 反映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長期借入金의 處理는 短期借入金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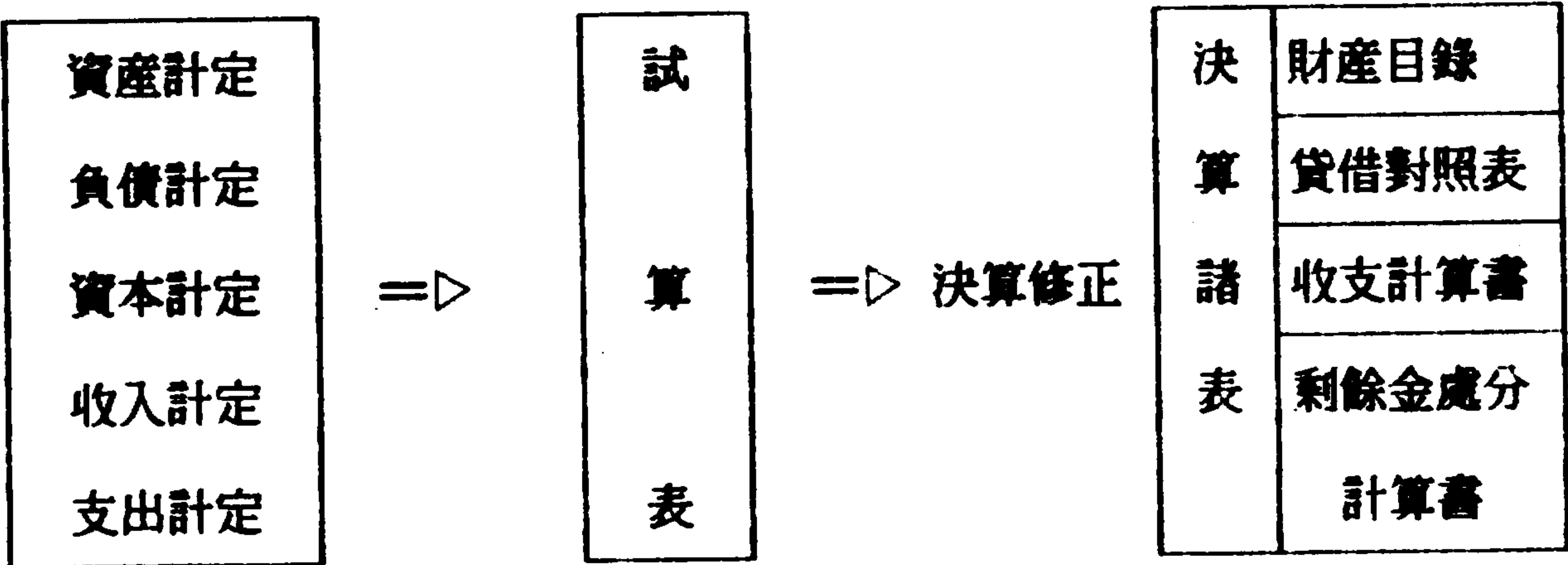
즉 長期借入金は 豫算에도 計上하여 收入에는 借入金收入, 支出에는 借入金返濟金으로 處理하고 이에 대하여 發生한 支給利子도 計上되어야 한다.

第五節. 非營利法人 會計의 決算諸表 作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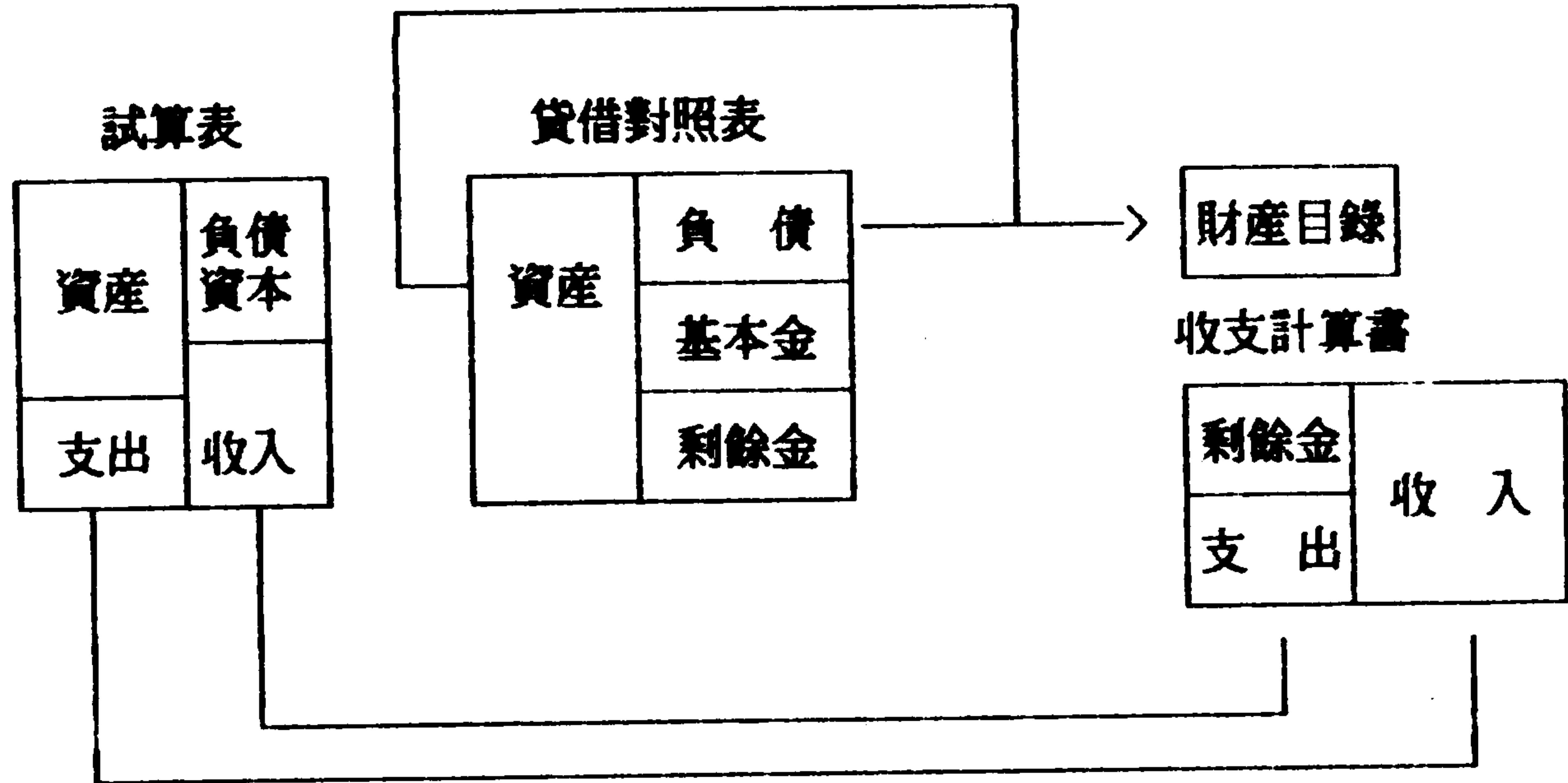
1. 決算節次

每事業年度 終了日には 會計記錄을 마감하여 試算表을 작성하고 決算修正을 한 다음에 財務狀態와 收支成果를 나타내는 計算書類(財務諸表)를 作成 報告하여야 한다. 決算節次에 대한 詳細한 內容은 여기에서 省略하기로 하고 앞의 <表 3-1> 에서의 帳簿組織圖와 連結하여 會計의 一般的인 순환과정 <表 3-4>과 決算諸表의 相互關係 <表 3-5>를 다음에 그림으로 表示하여 보겠다.

< 表 3-4 > 會計의 循環過程
(元帳)



< 表 3-5 > 決算諸表 相互關係



2. 財産目録

財産目録(list of properties)은 一定한 時點에 實地조사에 의해 作成된 資産과 負債의 明細目録이며 資本項目이 없는 點에서 貸借對照表와 다르다. 一般的인 決算에서는 貸借對照表가 作成되고 있고 그것을 補充하는 부속명세서가 作成되는 경우에는 財産目録은 그다지 重要な 것은 아니다.

따라서 企業會計基準은 이를 財務諸表 體系에서 除外하고 있으며 商法도 貸借對照表의 부속명세서를 作成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다.

3. 貸借對照表

貸借對照表(balance sheet)는 一定時點에 있어서 會計主體의 財務的 狀態를 나타내 주기위한 會計報告書의 하나이다. 一定時點의 財務적 狀態란 會計主體가 支配하고 있는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힘(Service potential)을 意味한다. 財務的 狀態는 貸借對照表上에 資産 負債 및 基本金으로 區分表示하여 報告式에 의한 一般樣式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表 3-6 〉 貸借對照表 樣式

<u>貸 借 對 照 表</u>		
資 產		
流動資產	xxx	
投資及 其他資產	xxx	
固定資產	xxx	
資產合計		xxx ==
負 債		
流動負債	xxx	
固定負債	xxx	
負債合計		xxx ==
基本金		
基本財產	xxx	
剩餘金	xxx	
基本金合計		xxx ==
負債 及 基本金 合計		xxx ==

4. 收支計算書

收支計算書(statement of revenues and expenditures)는 一定期間 동안의 事業活動의 과정과 결과를 明瞭하게 나타내 주기 위한 會計報告書이다. 收支計算書에는 그 期間 동안에 發生한 收入과 支出을 記載하고 當該事業年度의 剩餘金 또는 不足金의 原因을 表示한다.

따라서 이 報告書는 장래의 公益社業에 대한 方針을 검토하는데 重要な 지침이 되는 것이다. 收支計算書의 作成은 收入豫算統制簿와 支出豫算統制簿를 기초로 하여 收支關係計定の 殘額에 의하여 集計整理되며 當該事業年度의 豫算表에 맞추어 區分配列하여 그 決算額과 豫算額을 比較表示하여야 한다.

이 收支計算書는 企業이 損益을 測定하기 위하여 作成하는 損益計算書와는 本質을 다소 달리하며 營利企業의 損益計算書 대신으로 非營利法人에서 作成하는 非營利會計의 特有的한 會計報告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非營利法人의 會計處理基準이 없으므로 이 같은 收支計算書의 作成을 위한 基準이나 指針 일정한 표준양식이 없는것 같다. 그래서 日本의 “公益法人 會計基準”에서 定하고 있는 報告式에 의한 수지계산서의 요약된 양식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收支計算書는 “收支計算”과 “基本金 増減 計算”의 두 部分으로 區分하고 있다.

첫번째, 部分인 “收支計算”은 앞 節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受託資産의 増減變化를 明瞭하게 표시하는 機能을 갖는 計算區分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當該法人의 事業年度末現在 保有하고 있는 資産 및 負債의 金額은 表示하지 못하는 것이다 例를 들면 固定資産의 取得에 있어 一定金額의 支出의 發生事實은 表示되고 있으나 當該資産의 年度末實在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現物寄附收入이나 保有資産에 대한 재해손실 같이 收入 또는 支出을 수반하지 않는 資産의 増減變化는 收支計算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事業年度末現在의 資産과 負債의 實

在를 明確히 表示하고자 貸借對照表를 作成하는 것이며 이것은 收支計算書와 有機的인 關聯性을 가지고 作成되어야 한다.

두번째, 部分의 基本金増減計算은 收支計算書와 貸借對照表의 有機的인 關聯性을 明確하게 하기 위한 通路로서 만들어진 計算區分이다

“基本金増減計算” 部分의 機能은

- ① 收支計算 部分에서 收入 또는 支出로서 計上된 金額中에서 그 一部 및 全部를 貸借對照表上의 資産과 負債를 計上하기 위하여 對替計算을 行하고
- ② 現在 保有하고 있는 資産 및 負債의 増減變化를 認識하여 이를 貸借對照表에 反映하게 하며
- ③ 貸借對照表上의 基本金計定에 속하는 科目間의 對替額을 明確히 하는데 있다.

위에서 說明한 收支計算書의 樣式을 그림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表 3- 7 〉 收支計算書 様式

收 支 計 算 書		
i. 收支計算		
1. 收入		
基本財産運用収入	xxx	
補助金収入	xxx	
會費収入	xxx	
⋮		
前年度移越収支差額	<u>xxx</u>	
収入合計		<u>xxx</u>
2. 支出		
事業費支出	xxx	
固定資産買入支出	xxx	
⋮		
⋮		
⋮		
支出合計		xxx
次期移越収支差額		<u>xxx</u>
ii. 基本金増減計算		
1. 増加		
資産増加額	xxx	
負債減少額	<u>xxx</u>	
増加額合計		<u>xxx</u>
2. 減少		
資産減少額	xxx	
負債増加額	<u>xxx</u>	
減少額合計		<u>xxx</u>
次期移越増減差額		xxx
iii. 剩餘金 合計		<u>xxx</u>

5. 剩餘金 處分計算書

非營利 法人은 剩餘金을 營利法人과 같이 株主나 出資者에게 分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非營利 法人은 原則적으로 剩餘金은 次期年度로 移越하여 次期年度의 收入豫算에 편입된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剩餘金處分計算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고 決算書에 當年度 剩餘金은 次年度에 移越함 이라는 註記로 表示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剩餘金一部를 積立金이나 基本財産에 轉入하는 때에 剩餘金處分計算書를 作成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 表 3-8 >에서는 收支計算과 貸借對照表의 有機的인 關聯性을 圖表로 表示하여 보겠다.

〈 表 3-8 〉 收支計算과 貸借對照表의 關聯性

收支 計算書		貸借對照表	
I. 收支計算		資產	
1. 收入		1. 流動資產	
會費收入	100	現金	10
借入金收入	50	2. 投資, 其他資產	
收入合計	150	基本財産充當預金	500
2. 支出		3. 固定資產	
事業費	30	備品	30
備品購入	30	車輛	80
車輛購入	80	固定資產合計	110
支出合計	140	資產合計	620
次期移越收支差額	10	負債	
II. 基本金増減計算		1. 流動負債	0
1. 増加		2. 固定負債	
備品増加	30	長期借入金	50
車輛増加	80	減價充當金	10
増加額合計	110	固定負債合計	60
2. 減少		負債合計	60
借入金増加	50	基本金	
減價償却	10	1. 基本財産	500
減少額合計	60	2. 剩餘金	
次期移越増減差額	50	次期移越收支差額	10
III. 剩餘金 合計		次期移越増減差額	50
	60	剩餘金 合計	60
		基本金合計	560
		負債と 基本金合計	620

〈 表 3-9 〉 剩餘金 處分 計算書 樣式

剩餘金處分 計算書		
I. 當年度 剩餘金		XXX
II. 剩餘金處分額		
1. 基本財産轉入	XXX	
2. 退職給與積立金轉入	XXX	
3. X X X 積立金轉入	<u>XXX</u>	<u>XXX</u>
III. 次年度移越剩餘金		<u>XXX</u>

第四章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對한 分析

第一節 學校法人의 意義

學校法人이란 非營利機關의 한 形態로서 特別법인 私立學校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된 公益法人으로 教育事業이라는 固有目的으로 意도적, 계획적인 이운동기에서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하는 法人으로서 公共性, 社會性을 基調로 하며 資源調達과 實體는 社會的 要求에 의해 이루어 지며 사회, 公共目標을 수행하는 組織體를 말한다.

이러한 教育目的 事業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學生에게 보다 좋은 질의 教育을 實施하여 훌륭한 人間을 양성 배출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사회가 추구하는 共通的인 役割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社會的 目標(Social Purpose)를 受任하여 擔當하는 機關으로 非營利機關의 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第二節. 學校法人 會計의 特性

1. 學校法人 會計의 特性

學校를 運營하는 學校法人은 敎育研究 수행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學校會計는 資産과 負債, 및 基本金 등 財産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豫算會計制度를 導入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豫算編成(Budgeting)을 하여 制限된 資金을 효과적으로 運用하기 위해서 計劃화된 資金을 執行하여 複式化된 帳簿組織과 正確한 去來記入 및 財務狀態를 把握한다. 이와같은 會計處理를 위하여 학교법인 회계는 1969년 7월 19일 문교부령 제 246 호에 의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제정하여 施行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기관의 특례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單式簿記에 의한 자금유용등이 많이 發生하여 社會에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또한 그 기관의 財務狀態나 經營收支를 파악하기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特例規則이 제정되어 複式簿記에 의한 會計處理를 하여 현금, 예금의 수지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어 수입의 원천과 지출의 용도를 特例規則에 의한 計定科目으로 회계처리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적용범위는 사립대학, 사범대학 및 대학에 準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 經營하는 학교법인에 適用하도록 立法化되어 法人과 學校의 재무회계 運營에 適用하도록 하였으며 特例規則 15조에 의한 一般原則을 보면 學校法人의 會計原則은 진실성의 원칙, 복식부기의 원칙, 明瞭性의 원칙, 繼續性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업회계와 다른점은 기업회계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재무회계이지만 학교회계는 영리목적이 아닌 수입의 원천인 현금 및 예금이 주원천이며 지출을 위한 자금회계인 것이다. 그리고 계정과목의 특이성, 회계처리 방법,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과 감가상각을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企業과 같이 이익금에 대한 剩餘金 처분을 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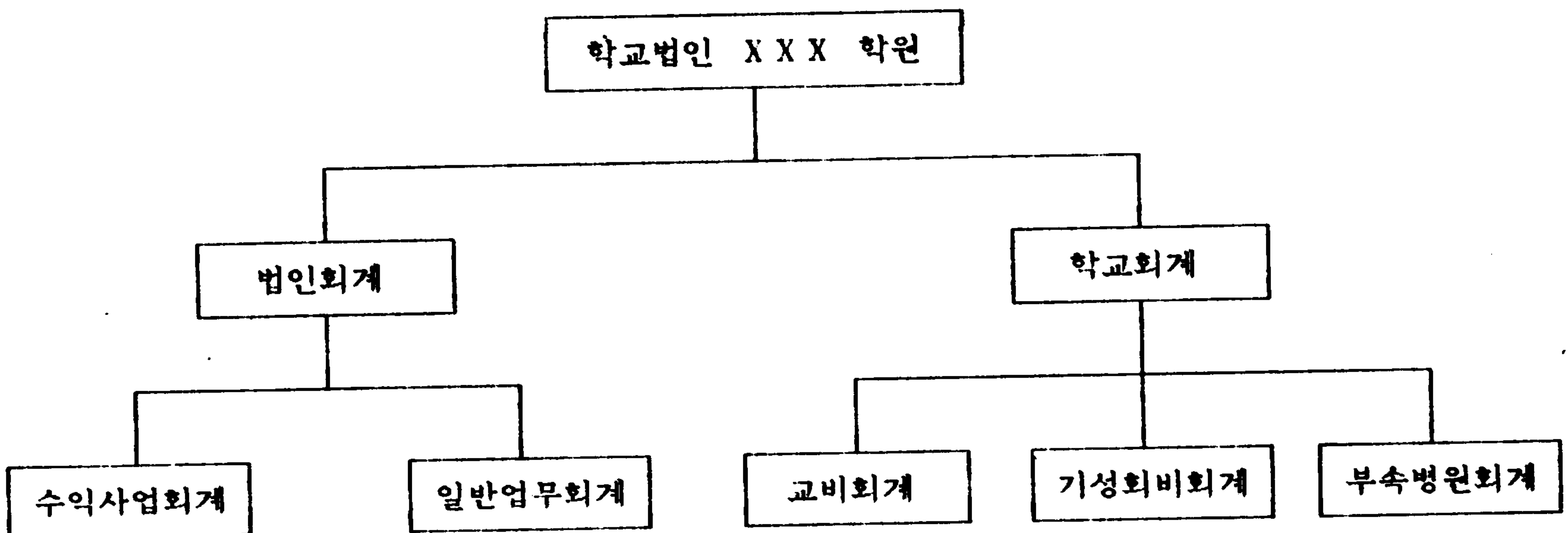
그리고 企業에서의 資本金 구성과 같은 것이 없으며 학교회계에서는 기

본금이라는 기업회계와는 상이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 회계와 사립대학의 학교회계는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같은 의미이나 수익사업을 둘러싼 회계구분 측면에서는 학교회계는 교비, 기성회비 회계 구분이며 법인회계에서는 수익사업 회계와의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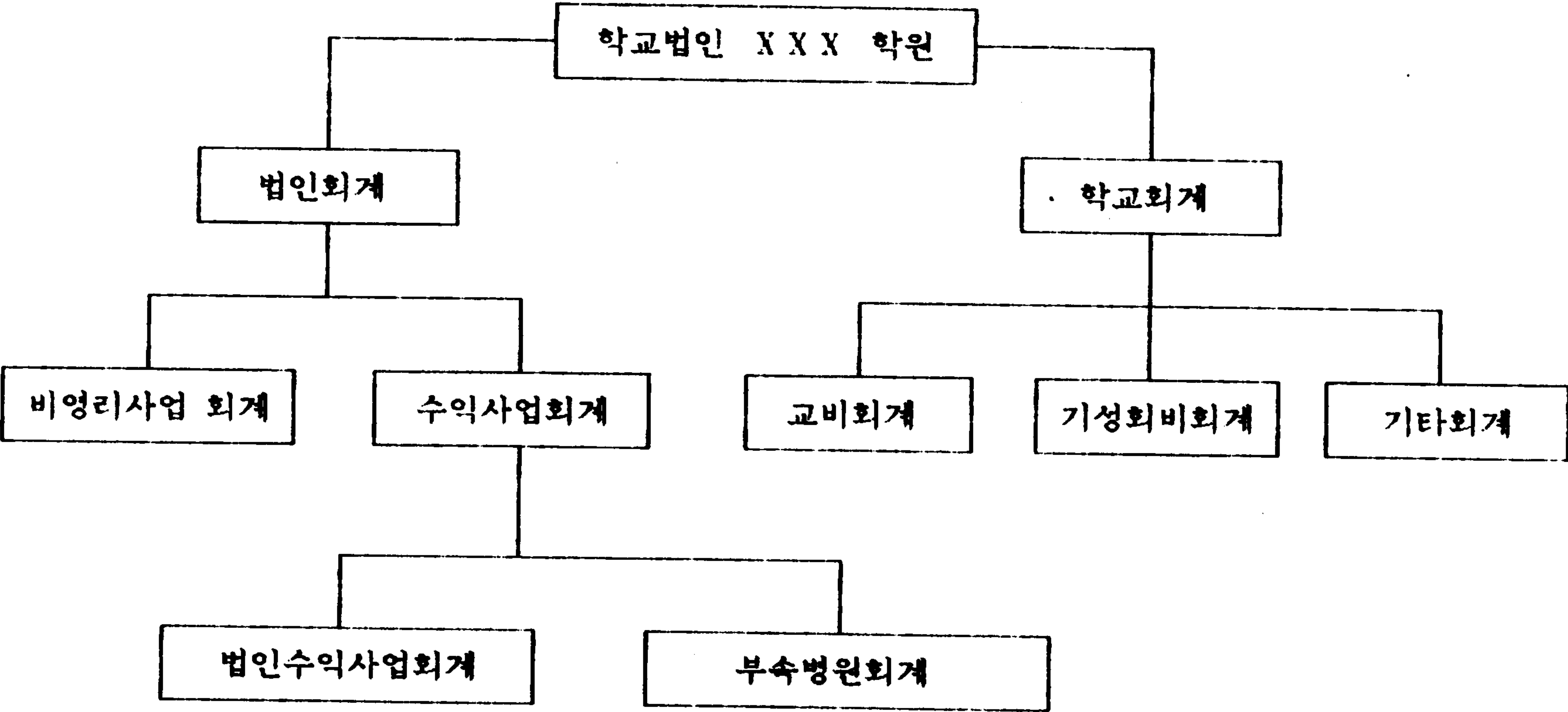
이와 같은 會計區分 側面을 圖表로 表示하면 <表 4-1>과 <表 4-2> 과 같다.6)

< 表 4-1 > 私立學校法 제 29 조에 의한 學校法人 會計組織圖



註6) 서용석, 學校法人의 會計와 稅務에 關한 研究, 1989, P.6

< 表 4-2 > 法人稅法上的 學校法人 會計組織圖



2. 學校法人 會計의 一般原理

學校法人은 다음에 열거한 一般原則에 따라 회계처리를 행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 하여야한다. 이것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의 一般原則과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가. 企業會計 原則

① 信賴性的 原則

會計處理 및 報告는 信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② 明瞭性的 原則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會計用語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充分性的 原則

重要한 會計方針과 회계처리 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 재무제표상에 充分히 표시 하여야 한다.

④ 繼續性的 原則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을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繼續하여 適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變更 하여서는 안된다.

⑤ 重要性的 原則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重要性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安全性的 原則

회계처리 과정 에서의 그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私學機關 會計의 一般原則 7)

① 眞實性の 原則

眞實性の 原則은 會計上 가장 重要な 原則으로 모든 去來는 객觀적인 事實에 기초하여 감안 하여야 한다. 결산정책에 따라 眞實을 왜곡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의 상황이란 대차대조표를 말하며 경영의 상황이란 년도의 수지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다.

② 複式簿記의 原則

複式簿記는 체계적인 帳簿記錄에 기초하여 회계처리가 행하여져 그 결과 各種의 계산서류가 도출되는 것이므로 도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대차대조표에서 보면 그 표는 년도말 재산의 正當한 가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토지는 현재의 시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취득한 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즉 대차대조표는 과거로 부터의 장부기록에서 도출된 것으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한 년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③ 明瞭性の 原則

이원칙도 또한 眞實성의 원칙을 支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양식이 회계기준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며 收入과 支出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총액주의 원칙이나 부채의 구분은 1년 기준(One year rule)에 의하는 것 등이다.

④ 繼續性の 原則

會計處理에서 몇가지 方法이 認定되는 경우에 어느 方法을 選擇하느냐는 학교법인의 自主的 判斷에 맡기고 있다. 예컨대 固定資産의 內容年數나 減價償却의 具體的인 節次. 部門이 複數인 경우의 收支의 配分基準 등에 대해서, 그 선택한 절차에 따라서 매년도 동일한 회계처리를 行하고 決算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만일 매년도

註7) 財政管理者 協議會, 私學機關 財務會計의 特性및 一般原則, 1992. P.45

그 會計 處理나 節次를 變更한다면 계산서류를 每年 比較한다는
것이 無意味 하게 되며 法人 자신의 經營判斷마저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第三節. 私立大學의 豫算會計制度

1. 大學豫算會計

大學의 提供받은 資源을 法規나 契約등 諸般 制約에 違背됨이 없이 活用하고 있는가 하는 情報는 大學의 會計情報利用者에게 重要的 사항이다. 一般的으로, 어떤 使用目的을 指定하여 資源을 提供한 獨지가, 公益財團, 企業人 등은 의도한 대로 資源이 使用되는지에 대하여, 私立大學에 資金을 지원한 정부당국은 補助金이 소기의 目的에 適切하게 使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기타의 會計情報 利用者들은 大學의 公共성을 유지하면서 大學經營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大學은 實質적으로 豫算을 活用하여 모든 大學活動을 전개한다. 豫算會計는 大學活動의 法規나 諸般規約 등에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明白히 하여주며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시켜 주는 有用한 經營道具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節에서는 大學의 豫算會計를 중심으로 하여 受託責任의 이행여부, 法規에의 준수여부 등에 관련된 會計情報를 論議하고자 한다. 大學豫算이란 일정기간에 있어 大學活動에 대한 項目化되고, 承認된 그리고 體系화된 計劃이다. 즉 豫算이란 大學의 講義, 研究 및 공공봉사 活動의 구체적인 計劃을 일정한 計算體系에 따라 科目과 金額으로 표시하여 종합한 것으로 大學의 전반적 運營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豫算의 編成과 實行을 위한 組織과 節次및 統制를 豫算制度라 한다.

(1) 豫算編成

가. 豫算의 編成 과정

첫째, 豫算編成의 주무부서인 企劃室에서는 豫算編成 指針 및 요령을 決定한다

둘째, 豫算編成 指針 및 要領示達은 豫算編成 관계자인 각부서 담당자 및 학과의 責任者를 召集하여 關係者 會議을 開催한다.

셋째, 각부서 및 학과에 豫算要求書를 作成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그 內容은 主要事業 計劃書, 豫算執行에 必要한 事項과 부서별 사업의 順의 결정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豫算編成의 주무부서인 企劃室에서는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종합검토한 후에 豫算額의 조정작업과 예산편성안을 作成한다.

다섯째, 豫算編成 作業이 完了된 後에는 理事會에 報告하여 심의 결정된 後에 각부서에 通報한다. 이와같이 通報된 예산안에 대하여 豫算使用計劃書를 追後에 作成제출토록 하여 豫算의 執行에 있어서 統制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인 예산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豫算編成作業에 있어서 事전에 重要한 事業計劃 및 人件費 등 重要한 支出項目을 미리 把握하여 豫算作業에 대비하여야 한다.

위의 豫算編成節次에서 豫算要求書가 각 客觀的 狀態의 變動을 자세히 客觀的 狀態의 變動을 자세히 부서로 부터 제출되어 전부 갖추어먼 豫算의 綜合과 그 것을 사정하는 作業을 하게된다 이때에는 收入豫算과 支出豫算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을 하여야 한다. 收入을 超過하는 金額은 運營目的의 輕重과 우선사업순위에 따라서 當該年度에 수행해야 할 事業과 次年度 以後로 연기할 수 있는 事業 및 불요불급한 事業 등을 분류 구분해서 支出을 削減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수입원에서 불확실한 收入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收入으로 計上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요즈음과 같이 나날히 變動이 심한 經濟狀態에서

는 支出豫算의 算出基礎에 變動을 일으켜서 추가경정예산을 編成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고 기타 客觀的 狀態의 變動을 자세히 分析하여 立案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나. 實行豫算

本 豫算이 確定되면 각 부서의 實行豫算 使用計劃書를 提出받아 實行豫算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豫算執行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豫算統制手段의 一環이다. 實行豫算이라 함은 當該年度 本 豫算을 각 부서의 運營活動에 執行時期에 맞추어서 月별 執行豫算의 作成要領은 例를들면 동계절의 난방비, 하계절의 냉방비 등과 같이 계절적인 費用과 그 行事時期에 맞는 費用이 執行할 수 있도록 計上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각부서의 活動計劃에 맞추어 그 달에 소요액을 정확히 編成 計算해야한다. 이렇게 하여 月별 실행예산이 編成되면 이것에 따라 資金收給計劃書를 作成해야한다.8)

다. 資金收給計劃

資金收給計劃은 現金의 支出狀況을 時間的으로 조정하여 보면 現金이 남는 때에는 資金의 효율적인 管理方法을 모색하고 現金이 不足할 때에는 調達方法을 구상하여 가장 유리한 金融方法을 모색한다.

資金收給計劃書에는 資金管理方法이 具體的으로 言及되어야 한다.

註8)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1983, P.106 - P.111

(2) 豫算의 執行

가. 支出原因行爲

支出原因行爲는 支出의 豫備的 行爲로서 配定된 豫算範圍 內에서 物品, 用役 또는 購買를 한다든가 支出을 수반한 行爲도 이에 該當한다.

豫算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學校會計에 있어서는 豫算이 成立될때 부터 支出할 의무와 수납할 權利가 동시에 정하여지고 그리고 이 支出豫算을 執行하기 위하여 契約이나 주문을 할 때에는 實質적으로 그 行爲에 따라서 將來에 支給할 의무를 지게되는 구체적인 支出原因行爲와 또 退職 積立金과 같은 負債性 充當金이나 積立金を 積立하는 내부대체 去來등로 支出原因行爲라고 한다. 그런데 豫算의 期間計算을 할 때에는 豫算의 執行時點을 정하는 基準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것이 問題이다. 즉 現金의 支拂時點이나 또는 支給의 豫備的 行爲인 구체적인 債務負擔의 執行이나 아니면 契約의 時點 또는 주문서의 發送時點이나에 따라서 豫算의 內容이 變貌하니까 支出豫算의 執行은 發生主義로서 現金의 支出義務가 생기기 이전에 그 原因이 되는 契約締結이나 주문서의 發送時點에다 선을 그어서 支出豫算의 執行權의 行사가 있었다고 보고 豫算의 支出을 記錄 計算하여 事務的인 節次를 통해서 支出豫算執行의 統制的인 機能을 살리는 方法에 接近할 것이다.

收入豫算의 執行時點은 具體적으로 現金의 收納이 完了 되었을 때로 보아야 한다

나. 購買承認

支出原因行爲에 앞서서 支出豫算의 執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購買承認이 있다. 支出原因 行爲는 物品, 用役을 購入하기 위하여 納品相對者와 契約을 締結 納品하도록 주문서를 發付하는 行爲인데 購買承認은 契約이나 주문서 이전에 内部的으로 購買品을 서류 작성하여 이것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의承認과 決裁를 받는 時點을 말한다.

이것은 효율적인 豫算의 執行統制를 위해서는 支出原因行爲와 같이 豫算執行額이 確定的인 것이 아니고 집행단계에서 増減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支出原因行爲 보다는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重要時 되고 恒常記錄을 유지하여 그 執行與否와 執行額의 増減記錄을 하여 효율적인 豫算執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豫算의 流用

豫算은 本質的으로 그 內容을 臨時變更을 가능한 전용하지 못하도록 制限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 運用面에서는 豫想대로 모든 事業이 순조롭게 進行되는 것은 아니다. 最近에는 物價가 變動 上昇하는 經濟狀態에서는 豫算의 編成時點과 같이 執行額이 이루어지지 않는 境遇가 發生한다.

그 執行時期가 길면 當初의 豫想했던 豫算이 變更되는 境遇가 發生하기 마련이다. 豫算이란, 어디까지나 豫想數值 이니만큼 그 豫算範圍內에서 運營과 事業의 進行活動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境遇에 對處하여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方法을 규정하고 있다.

- ① 항목간에 流用
- ② 豫備費의 設定과 支出
- ③ 豫算의 補正措置로서 추가경정예산제도

(3) 豫算統制

豫算統制는 예산제도를 통하여 大學運營活動에 대하여 科學的인 管理를 실시하려고 하는 計算的 統制의 方法이다 豫算統制는 그 전제조건으로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제조건이 充足되어있고 한편 當初 設定한 豫算이 運營計劃에 立脚하여 合理的으로 編成되어 있을 때에 統制를 할 수 있

고 統制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學校運營活動이 運營計劃에 立脚하여 活動하게 된다.
- ② 學校運營 目標具現이 明確해 진다.
- ③ 運營활동부서간의 조화와 조정이 가능하다.
- ④ 學校의 行政組織의 弱點을 쉽게 發見할 수 있고 그것을 補完하기 쉽다.
- ⑤ 資源의 浪費를 막을 수 있다.
- ⑥ 敎職員의 學校運營에 대하여 부서간의 業務協助가 있어야 한다.

豫算統制方法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대학의 조직구조와 運營管理的 행정조직이 內部統制制度가 圓滿히 되어야 하여 豫算體系를 基礎로한 部門管理組織이 整備되어야 하고 豫算編成이 實踐的인 執行을 바탕으로 하여 運營計劃과 一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에 通報된 事業計劃과 實行豫算額을 擔當 敎職員의 협조와 實行豫算에 대한 使用計劃書를 각 부서로 부터 받아서 實質的인 豫算項目에 의해서 豫算業務를 맡고 있고 기획부서에서 統制 및 조정을 하여 원만한 豫算統制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統制方法과 活動은 各 大學의 실정에 맞추어서 編成하여 執行 統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大學豫算會計의 目的

大學豫算會計는 本質的으로 조직으로 하여금 計劃的인 活動을 하도록 하여 業績評價의 基準을 提示하고, 組織內 의사소통과 상호협조를 可能하게 한다.

大學豫算會計는 특히 재정활동의 計劃化와 信託關係의 明確化를 통하여 法規나 제약에의 준수여부를 밝히는 동시에 大學資源의 效率的인 配分과 活用에 寄與한다. 그리고 複式簿記 시스템은 去來記錄의 二重性原則에 따라 모든 記錄을 自動檢證함으로서 帳簿記錄의 客觀性을 높여준다.9)

大學豫算會計의 主要目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大學 公共性的 확보
- ② 재정활동의 계획화
- ③ 資源信託關係의 明確化
- ④ 各 活動部門의 責任範圍 明示 및 活動部門間의 조정
- ⑤ 業績의 測定 및 동기부여

가. 公共性的 확보

大學은 社會的 公共性 性格이 강하다. 私立大學이 비록 個人 또는 法人의 출연에 의하여 設立되었다 하여도 活動의 目的은 公益性, 公共的인 것이다. 따라서 大學은 社會 全體의 수준을 向上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活動이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活動의 內容은 大學豫算을 통하여 具體的으로 명시된다. 몇 명의 大學生을 教育시키며 얼마의 金額을 研究費로 配定하여 研究活動을 展開할 것인가, 그리고

註9) 李東奎, 비영리회계, 형설출판사, 1991, p.311 - 313

公共에 대한 奉事活動은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 등이 大學豫算에 明白하게 提示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豫算에 財務計劃만 包含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財務計劃뿐만 아니라 社會에 提供할 서비스 內容까지 包含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는 大學豫算의 編成을 의무화 하고 있다.

나. 大學財政의 計劃化

大學의 收入, 支出은 營利組織體의 收入, 支出과 다음의 點에서 差異가 있다.

첫째, 大學의 收入과 支出은 거의 비탄력적이어서 會計期間 중에 이를 增減시키기 어렵다, 즉, 學期中에 學生數를 任意로 增減시킬 수 없으며 교직원의 노력에 의하여 收入을 增加 시킨다는 것도 곤란한 일이다. 大學의 收入은 부정기적수입(Soft money)보다는 고정적수입(Hard money)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支出의 경우도 人件費, 管理運營費등 고정적 성격의 支出이 대부분이어서 必要經費를 學期中에 加減하기란 어렵다.

둘째, 大學에서는 收入과 支出間의 直接的인 對應關係가 成立되지 아니한다 즉, 教育의 成果는 支出金額의 多少에 의하여 測定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收入은 限定되어 있으나, 大部分의 教育原價가 公정원가 이기 때문에 教育支出의 상한선은 決定하기 어렵고, 따라서 限定된 資源에 비하여 教育需要는 過剩의 狀態이다.

이와같이 大學의 收入과 支出은 비탄력적이며, 兩者間에는 相互關係가 없고 必要한 支出은 無限하지만 收入이 限定되어 있는 狀況에서 大學이 永續性を 유지하려면, 大學의 收入과 支出은 豫算의 단계에서 長短期的으로 計劃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大學의 境遇에는 豫算에 基礎하여, 豫算範圍 內에서 全課程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다. 資源信託 關係의 明確化

大學豫算은 學校法人과 總學長 間에 成立되는 資産運營에 관한 信託關係를 具體적으로 表現한다. 즉, 兩者間의 收入과 支出에 대한 權限 및 執行責任의 範圍등 資源의 受託關係가 豫算을 通하여 明確하게 규정된다. 大學의 資産에 대하여는 어떠한 所有關係도 存在하지 아니하므로 資産運用에 있어 損失이 發生한다고 하여도 그 損失이 “正當한 管理者로서의 義務”를 다한 것이라면 總學長에게 損失을 負擔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는 資本의 出資者가 損失을 모두 負擔하는 企業의 境遇와 比較하여 볼때 根本적으로 差異가 나는 점이다.

따라서 企業에서는 豫算編成이 任意的이지만 大學에서는 信託關係의 明確化를 기하기 위하여 豫算適用이 義務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部門間의 責任明示 및 活動의 조정

豫算에는 大學의 目的達成의 위한 具體적인 內容이 各 組織單位別로 明示된다. 部門別 委任된 豫算 執行權은 사후적으로 豫算範圍 內에서 이루어지도록 統制되는 것이다. 또한 豫算은 部門間의 의사소통과 調整을 통하여 共同目標가 成就되도록 하여준다.

마. 業績測定 및 動機附與

豫算은 關聯 當事者들의 積極적인 參與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때 動機附與 效果가 나타난다. 즉, 豫算編成에 있어 各 管理者들에게 동 기부여를 줄 수 있는 예산수준이 선택될때 業績은 向上되는 것이다.

3.豫算監査

(1) 豫算監査의 目的

豫算監査는 大學의 豫算이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必要하고 또 可能한 組織 및 節次에 따라 設定되어 있는가, 豫算書가 一般的으로 公 正타당하다고 認定되는 會計基準 및 豫算原則에 따라 作成된 것인가 등에 대해 監査人이 전문가로서 意見을 表明하고 이에 따라 大學의 예산제도및 會計報告書에 대한 信賴性を 向上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10)

가. 豫算監査의 必要性

大學의 運營은 모두가 豫算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大學 인의 활동실적은 豫算에 의해 強力한 規制를 통하여 이룩되는 것이며, 會計上의 실적도 그 大部分은 豫算에 의해 이미 確定 된다는 關係를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豫算은 大學運營을 支撐하는 제반제도와 재정적 判斷과의 合作物이며 또 豫算의 基礎인 活動計劃이 大學의 主觀적인 判斷에 의해 選擇된 未來의 行動이기 때문에 豫算의 內容은 計劃上의 判斷 및 財政적인 判斷에 의해 左右되는 것이다.

會計報告 및 豫算制度에 대한 信賴性を 높이고 大學의 運營에 대한 關係者の 이해와 協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公정한 立場에서 사전적으로 判斷을 行하는 것은 意味가 크다. 豫算監査는 이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註10) 李東奎, 비영리회계, 형설출판사, 1991, P.417 - 421

나. 豫算監査의 機能 및 監査人の 責任範圍

- ㄱ. 監査人이 行하는 豫算監査는 大學의 豫算이 그 결정과정에서 所定の 方針에 따라 適合하게 이루어 진 것인가 그리고 計劃의 實現, 計劃에 包含된 目的達成 方法의 능률성, 資金 其他資源의 經濟性 확보, 資金의 流動性 및 運營收支의 持續的인 均衡을 유지하기 위한 必要組織, 節次에 基礎하고 있는지 與否에 대해 意見을 表明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監査는 豫算 및 그 基礎的인 計劃에 대해 各各의 妥當性을 判定하기 위해 또는 그 達成을 保證하기 위해서 行해지는 것은 아니다.
- ㄴ. 監査人이 行하는 豫算監査는 豫算書에 豫算이 적정하고 또 明瞭하게 表明되어 있는가에 대해 意見을 提示한다. 그러나 이 監査는 豫算에 包含된 豫測과 豫想의 眞實性을 證明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ㄷ. 監査人은 豫算編成의 組織 및 節次에 대한 意見 및 豫算書에 대한 意見에 대해서 責任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해 監査人이 豫算 및 計劃의 設定, 豫算書의 作成 등에 대해 責任을 지는 것을 아니다.
- ㄹ. 監査人은 豫算監査의 實施에 있어 豫算 및 그 基礎가 되는 계획상의 부정이나 誤謬를 發見하기 위해 노력하고 重大한 虛偽, 錯誤 등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監査人이 豫算 및 그 基礎的인 計劃이 부정이나 誤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保證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 ㅁ. 監査人은 財産의 品質 및 機能,性能을 감정하고, 財産과 技術의 現在 및 將來의 價値에 대한 評價, 法律的 判斷 등을 行하는 것은 아니다.

(2) 豫算制度의 監查節次

豫算監查의 節次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 ① 豫算制度의 監查節次
- ② 豫算項目의 監查節次
- ③ 豫算書의 監查節次

豫算制度는 大學의 活動에 대한 計劃 및 統制 시스템이다. 豫算編成의 組織과 節次가 妥當하다고 하여도 그 實行을 확보하고 實行結果에 대한 피드백 등이 適切히 따르지 않는다면 예산과정의 적정성은 확보될 수 없다. 따라서 豫算制度의 監查는 豫算編成 과정에 대한 組織과 節次뿐만 아니라 결정된 豫算의 실행과정에 관한 節次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豫算制度의 監查는 豫算原則에 基礎한 組織과 節次등이 整備되어 있는 것인가에 焦點을 맞추는 것이다.

가. 豫算制度 監查의 基本要點

- ㄱ. 豫算의 결정과정에 있어 節次 및 方針에의 適合, 計劃의 達成, 計劃에 包含된 目標達成方法의 能率性, 資金 其他 資源의 經濟性, 資金의 流動性 및 運營收支의 持續적인 均衡을 유지하는지 與否등에 관하여 大學의 組織, 節次에 虛點은 없는 것인가?
- ㄴ. 豫算의 決定 및 그 實行에서 敎職員과 學生등 大學構成員의 積極적인 協力을 얻어내는 일에 관해 大學의 組織이나 節次에 未備點은 없는가?
- ㄷ. 豫算編成의 과정 및 결과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總長 또는 이사장의 報告責任에 대해 大學의 組織과 節次上에 未備點은 없는가?

나. 組織에 관한 조사

7. 豫算責任者가 결정되고 또 그 責任과 權限이 明白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與否에 대해 關係書類를 閱覽하고 責任者에게 質問한다.

ㄴ. 豫算制度를 위한 組織

豫算責任者, 豫算事務職, 企劃豫算委員會, 其他會計組織등이 確立되어 있는지 與否에 대해 關係書類를 閱覽하거나 責任者에게 質問하여 조사한다.

다. 編成節次에 관한 조사

7. 豫算의 編成節次에 대한 조사란 다음과 같은 項目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與否에 대해 檢討하는 것이다.

a. 活動方針 및 豫算編成指針의 적합성

b. 資金配分の 妥當性

c. 計劃된 目的의 達成 可能性

d. 方法의 능률성

e. 收支의 經濟性

f. 繼續事業의 一貫性 및 망라성

g. 會計基準에의 준거성

ㄴ. 豫算編成의 諸般假定, 豫算의 見積基礎 등이 豫算調書에 明確히 記錄되어 정리, 保存되고 있는지 與否에 대해 조사한다.

ㄷ. 豫算에 관한 규정이 整備되고 豫算原則 및 會計基準에 準據하고 있는지 與否를 調査한다.

ㄹ. 組織 및 節次에 대해 監査人이 以前부터 그 改善을 勸告한

事項 및 豫算의 實行 結果에 基礎하여 그 개선이 必要한 豫算單位

에 提案한 事項에 대해 어떠한 決定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은 關係者에게 철저히 傳達된 것인가에 대해 調査한다.

라. 豫算科目의 監查節次

豫算科目의 監查는 각 豫算科目을 繼續事業 新規事業豫算으로 분류하고 그 設定節次 및 豫算의 表明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監查한다.

7. 繼續事業豫算의 監查節次

- a. 繼續事業의 豫算은 既存의 活動을 빠트린 것이 없이 包含시키고 있는지를 檢討한다.
- b. 不變要因에 대해서는 證據資料와 對照하고, 不變要因 중 變更要因이 없는가를 檢討한다.
- c. 變更要因에 대해서는 그 推測의 過程이 明確하고 그 過程이 合理的인지 與否에 대해 檢討한다.

8. 新規豫算의 監查節次

- a. 新規計劃의 選擇, 決定 및 이룰위한 예측과정의 明白하고 그 것이 合理的인지에 관해 檢討한다. 특히 新規의 重要な 計劃에 속하는 것은 豫算調書의 閱覽 및 關聯 責任者에 대한 質問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을 확인한다.

- * 大學의 方針은 適合한가
- * 상기의 目的 및 方針에 비추어 볼때 計劃의 內容이 明白하게 差異가 나는 點은 없는가
- * 計劃은 關係者 특히 實行擔當者의 합의를 얻은 것인가
- * 計劃한 目標達成方法의 능률성 및 收支의 經濟性에 대해 檢討가 된것인가, 檢討의 方法, 檢討의 使用한 資料, 比較方法 등이 不合理한 것은 없는가

- b. 前年度에 決定된 計劃으로서 當年度 豫算에 着手되어야 하는 것이 新規事業에 漏落됨이 없이 包含되어 있는가

- c. 豫測의 方法 및 豫測에 使用한 資料가 繼續事業의 豫算 및 新規의 他豫算과의 사이에 상호 矛盾되는 것은 없는가

- d. 豫測의 結果에 두드러진 不合理性은 없는가 특히 收入, 支出의 見積에 記正의 收入, 支出이 混合되어 있는지 않은가
- e. 新規豫算이 基本金の 轉入을 가져오는 資産支出을 수반하는 경우 예는 이에 대해 基本金 轉入의 豫算措置가 講究되어 있는가, 그 措置는 有別하게 矛盾된 것은 아닌가
- f. 新規의 豫算案으로서 一部를 수정하여 決定된것, 決定을 연기한 것, 採擇하지 아니한 것 등은 그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그것을 豫算案의 立案者에게 철저히 傳達하는 措置가 이루어진것인가 豫算의 決定과 그 實行은 敎職員의 積極的인 協力을 확보한다고 하는 觀點으로부터 以上の 檢討가 行爲되어야 할 것이다.

第四節.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

1. 私學機關 會計制度의 발전과정

(1) 私立學校法

우리나라의 學校法人은 私立學校法에 根據하여 設立되어 있으며 私立學校法은 1963.6.26 法律 第 1362 號로 제정공포되어 1990.4.7 法律 第 422 號에 이르기 까지 16차에 걸쳐 되었다. 私立學校法에서의 財務會計 關聯된 규정으로는 第4節(財産과 會計) 第28條에서 第33條에서 私學機關 會計의 基本的 事項을 규정하고 있다.

(2) 私立學校法 施行令

1969.12.4 大統領令 第 4396號로 제정공포되어 1989.8.18 大統領令 第 12781 號에 이르기까지 7次에 걸쳐 개정되었다. 財務會計 關聯된 규정으로는 第 11 條 ~ 第 14 條에서 私學機關會計의 基本的 事項을 규정하고 있다.

(3)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

私立學校法 및 同法 施行令에 根據하여 私立學校와 同 法人에 適用되는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은 1969.7.19 文敎部令 第 246 號로 제정공포되어 私立學校技官 會計運營의 細部的인 事項을 규정하였으며 1979.1.8에 개정시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4)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

私學技官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以下 特例規則)이 공포되기 以前에 1979年度 文敎部 政策課題 學術研究로서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 改善研究”라는 題目으로 尹 桂燮 教授 外 2人의 共同研究者가

提出한 研究論文이 特例規則이 제정된 背景이라 할 수 있다.

이 研究의 背景을 살펴보면 經濟環境이 急變化하고 私學機關의 財政規模가 急身長함에 따라 適切な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私學機關 運營上의 여러가지 問題點을 現實적으로 解決하고 私學機關의 社會的 公共性和 信賴性を 높이며 同時에 政府의 教育行政의 合理化를 기하고 또한 私學機關 會計制度로 現金收支에 의한 單式簿記 方法에서 複式簿記制度를 導入하여 運營하므로서 私學機關의 財務狀態의 合理的이고 客觀적인 評價를 行하고 外部監査制度를 導入하여 運營하여 왔으나 私立大學의 運用規模가 커지고 去來內容이 複雜하여 졌으며 多樣한 教育資源의 正確하고 明瞭한 計算體系를 갖춤으로서 公共性を 提高하여야 함이 要請되어 1981.2.28 文敎部令 第 489 號로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定” 공포로 同 財務會計規則을 補完 施行하여 왔으나 1985.5.9 法律 第 3812 號로 一部條項이 改定됨으로써 1987.2.6 文敎部令 第 554號로 特例規則을 改定補完하게 되었으며 特例規則은 私學機關 全般에 걸쳐 適用하는 것이 아니라 私立大學 및 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와 이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에 適用한다. 따라서 專門大學이나 高等學校 以下の 學校는 이 規則의 適用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 그리고 複式簿記制度를 導入하여 急成長하여 規模가 방대한 私立大學의 資産保護와 管理를 爲始하여 財政狀態 및 運營成績의 評價를 可能하게하고 人力開發을 위한 教育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를 會計實體로서 유용한 會計情報를 提供하게 하였다. 또한 會計原則으로는 客觀性的의 原則과 眞實性的의 原則을 정하고 있다.

2. 私學機關 會計의 特性

私學機關會計는 學校를 運營하고 그 目的하는 바 教育研究 수행을 위한 것이며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않는다. 따라서 學校會計에서는 教育研究活動이 원활하게 수행되었는지의 與否를 計算書類에 의하여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活動은 豫算에 基礎하여 運營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企業은 豫算制度를 導入,實施하는 것이 任意的이나 學校會計는 事業計劃에 의한 한 會計年度の 收入과 支出을 會計年度 개시전에 豫算으로 計算集計하고 收入의 源泉과 支出의 용도를 자세히 細分한 計定科目을 區分하여 그 科目이 金額을 算出,計上한 豫算書を 確定하여 그 執行은 確定된 豫算科目과 金額에 拘束을 받는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營業活動의 성적을 損益計算書에 나타내어 當該年度の 經營成績을 把握하고 수익력제고를 위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企業會計 思考와는 다른것이다. 또한 學校會計에서는 企業과 같이 利益金を 處分할 수 없다. 이는 學校法人은 根本적으로 寄附行爲에 의하여 設立된 것이므로 法人의 資産에 대하여는 正當한 債權者를 除外하고는 누구도 所有權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이다.11)

註11) 재정관리자 협의회, 1992, P.44

3.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 內容

(1) 概要

特例規則 第 1條(目的)에서 알수 있듯이 私立學校 및 이를 設置한 學校法人의 特性에 맞는 財務會計制度를 確立하기 위하여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條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또한 非營利 教育機關으로 社會에 대한 公共性和 公益性이 要求되는 私學機關의 財務會計제도의 제기능과 目的에 達成하고 있음을 特徵으로 한다.

- ① 資金運用豫算書와 資金運用計算書 作成을 통하여 豫算制度를 유지하면서 資金運用計算을 겸하도록 하였다.
- ② 資金運營收支計算書 및 貸借對照表 作成으로 企業會計와 같이 運營成果 特徵과 財政狀態 把握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 ③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을 통하여 法人과 學校를 綜合한 法人中心의 단일기관으로서 財政運營 狀態를 把握하도록 하였다.
- ④ 資本的 支出(固定資產 取得支出)인 基本金の 增加와 積립금 積立額은 運營收支計算書 收入의 部에서 公제 조정 계산하는 會計處理 方法을 導入하였다.
- ⑤ 資產의 評價와 再評價 方法을 明示하였다.
- ⑥ 固定資產의 減價償却을 排除하고 不實債權의 大손상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⑦ 會計業務의 電算化를 위하여 計定科目을 收入, 支出, 資產, 負債, 積立金, 基本金 등으로 GROUP화 하고 科目마다 分類番號를 부여하였다.
- ⑧ 監査制度를 強化하였다.

(2) 特例規則의 要約

特例規則은 學校法人의 特性에 맞는 財務會計原則의 特例事項을 규정하여 收入과 支出의 豫算制度를 근간으로 하여 去來의 認識時點을 實現主義에 두고 現金의 收入, 支出과 그 保有狀態를 重點的 記錄, 計算하고 評價하는 特有의 會計制度를 提示하고 있다.

特例規則은 총 4 개장 37개 條項으로 이루어 졌으며 主要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2)

- 第 1 章 總則論 -

特例規則의 目的(1條), 適用範圍(2條), 用語의 정의(3條)를 규정하고 있다.

제1장 總則論으로서 제1조에서는 學校法人의 會計基準制定의 필요성에 의해서 財務會計規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私學機關 特例規則을 적용하는 大學으로서 學校法人의 회계에서 학교비회계, 기성회비회계를 이 규칙에 의거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會計處理가 보고되어야 하는것이다.

제3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서

첫째, 資金이란 것은 이 規則에거 財務諸表로 규정한 자금운용계산서상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와거 얼마가 지출되었는가를 따질경우 자금의 범위를 현금과 예금등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수표나 어음및 통화성 유가증권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

註12) 사립대학 재정관리자 협의회, 전국사립대학 재정관리자 연수, 1992, P.48

둘째, 貸借對照表基準日이라 함은 會計年度 末日을 基準日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이다.

셋째, 전기말이라 함은 전회계년도의 말일로서 이는 전회계년도의 貸借對照表基準日과도 일치한다.

네째, 기말이라 함은 당년도 會計年度의 末日을 意味한다.

다섯째, 資金收入이라 함은 資金收入의 源泉이 運營收入에 의하건, 資産의 감소나 負債 또는 基本金の 増加에 의하건 간에 現金, 預金, 수표, 어음 또는 통화성 유가증권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여섯째, 資金支出은 資金收入의 반대로 運營을 위한 支出이나 資産의 増加, 負債 또는 基本金の 減少에 의하건 간에 資金의 支出을 초래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일곱째, 運營收入이라 함은 損益去來에 의한 收入을 말하므로 資産의 減少나 負債의 増加와는 관계가 없으며, 學校費의 入學金 收入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여덟째, 運營支出도 損益去來에 의한 支出을 말하므로 資産의 増加나 負債의 減少와는 關係가 없으며 人件費의 支出과 같은것을 들 수 있다.

아홉째, 資金運用豫算이라 함은 基本 財務諸表의 하나인 資金運用計算書는 資金運用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나타내는 표를 말한다.

열째, 基本金이란 株式會社의 形態를 가진 一般企業의 경우 資本이라는 計定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총자산에서 모든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 第 2 章 豫算論 -

豫算編成要領(4條), 豫算總計主義原則(5條), 豫算의 確定및 제출기일(6條), 豫算確定前 執行을 위한 準예산(7條), 추가경정예산(8條), 豫算의 內容(9條), 豫算의 부속서류(10條), 豫算執行의 内部統制(11條), 豫算의 目的의 사용금지(12條), 豫算의 전용(13條), 特定目的事業豫算(14條) 와 같이 豫算編成 및 統制에 관한 事項을 규정하고있다.

제2장 豫算論으로서

제4조는 豫算編成 要領으로서 各學校의 사정을 한가지 방침으로 얹매는 것보다는 各學校의 사정에 맞게 自律的으로 豫算을 編成하도록하는 취지이다

제5조는 豫算總計主義 原則으로 모든 去來를 豫算編成에 準用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제6조는 豫算의 確定및 제출로서 豫算의 編成및 제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豫算編成示達과 編成에서 심의확정까지는 매년 2월 8일까지이며 法人및 學校豫算書를 매년 2월 13일까지 教育部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제7조는 準예산은 豫算編成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 豫算 執行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제8조는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豫算編成을 하여 執行이 이루어지면 2學期 豫算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와같이 비현실적으로 編成된 豫算과 실적을 대비하여 보고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된 豫算을 제출하고 豫算과 실적을 대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제9조는 豫算의 내용으로서 豫算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豫算總則에서는 收入과 支出豫算의 총규모를 나타내고, 豫算編成의 基本方針을 어디에 두었느냐 아니면 長期的으로 시설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던가 하는 주요방침을 기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조는 예산의 부속 서류로서 法人會計豫算의 부속서류는 前期末 推定負債明細書, 前期末推定未 收金調書, 이사회회의록의 사본이며 학교회계예산의 부속서류는 학년별, 학과

별, 학생수조서, 전기말 추정부채명세서, 전기말 추정미수금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11조는 豫算執行의 内部統制로서 豫算執行에 있어서 内部統制를 중요시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서, 基本的으로 豫算을 編成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는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한 부서가 豫算을 편성하고 執行도 모두 담당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는 豫算의 목적외의 사용금지로서 豫算에서 정한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豫算에서 정한 목적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支出하도록 허용한다면 豫算編成의 의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13조는 豫算의 전용으로서 豫算의 執行에 있어서 동일관내에서 항간 또는 목간의 豫算額의 과부족이 발생할 시에는 항간, 목간 상호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第 3 章 會計 -

會計原則(15條), 財務諸表(16條), 計定科目(17條), 資金運用計算의 目的(18條), 資金運用計算의 方法(19條), 전기말 선수금 등의 공제(20條), 資金運用計算書의 作成(21條), 運營收支計算의 目的(22條), 運營收支 計算書의 方法(23條), 運營收支 計算書의 作成(24條), 貸借對照表 作成에 따른 資産,負債의 評價(25條 ~ 32條)로 構成되어 會計處理基準을 규정하고 있다.

第 3 章의 2(基本金 및 積立金)

基本金の 増減(32조의 2항, 32조 3항) 各種 積立金の 積立 및 인출(32조의 4항, 32조의 5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會計는 會計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會計規則으로서 첫째, 客觀的인 會計證憑에 의하여 複式簿記로 하며 둘째, 會計情報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진실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

야 하고 셋째, 적용하는 會計基準과 處理節次는 繼續性の 原則에 따라 자주 變更하지 말고 繼續性を 유지해야 하는 基本原則을 강조하고 있다.

제16조는 財務諸表로서 財務諸表의 종류를 규정하였는데 資金運用計算書, 運營收支計算書, 貸借對照表로 세가지로 규정하였고 이 財務諸表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중요사항과 財務諸表의 과목에서 숫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은 난외에 주기주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7조는 計定科目으로서 資金運用計算書 計定科目과 運營收支計算書 計定科目, 貸借對照表計定科目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8조는 資金運用計算의 목적으로서 資金의 運用을 收入과 支出로 나누고 또한 豫算과 실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資金收入과 支出을 나타낼 것을 규정한 것이다.

제19조는 資金運用計算의 方法으로서 資金運用計算方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總額主義에 의하여 計算하여 資金收入과 支出의 일부라도 서로 상계하여 나타내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當該 會計年度에 실현되고 또 귀속되어야 할 資金收入과 資金支出을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하여는 資金收入과 資金支出은 실지로 資金이 收入되고 支出된 때를 基準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前期末先手金과 當該 會計年度 收入分중 차년도에 실제수입이 이루어질 당기말 未收金은 當該 會計年度의 실제 資金收入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수입의 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資金支出중 前期에 支出이 실현된 전기말 선금금과 當該年度에 支出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차년도에 이루어질 期末未支給金은 이를 지출의 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1조는 資金運用計算書의 작성으로서 수입의 부 豫算額은 추가경정예산액을 가지고 決算額과 비교 증감하며 지출의 부 豫算額이 어떻게 변화되어 決算額과 비교되며 決算額은 최종추경예산액을 가지고 비교한다.

제22조는 運營收支計算의 목적으로서 營利企業의 損益計算書의 작성목적

과 유사하며 運營收支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運營收支計算의 방법으로서 제1항에서는 學校나 法人이 當該年度의 여러가지 활동에 대응하여 수입되는 收入金 중에서 은행 기타로 부터 차입금과 같은 負債가 아닌 學生納入金과 같은 收益으로 귀속되는 순수익금으로 豫算科目別로 計算하는데 그 귀속수입금 總額에서 當該 會計年度중의 기본금으로 대체할 金額과 各種積立金の 積立額은 收入金額에서 공제하라는 취지이다. 제2항에서는 運營支出의 計算은 當該 會計年度의 運營支出을 豫算의 科目別로 計算한다 라고 한것은 計算書의 지출의 부의 計上할 支出의 金額이 무엇이며 그리고 계산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게 될것이다.

제24조는 運營收支計算書의 作成으로서 지출의 부에서 運營支出이 運營收入에 미달하는 경우 당기운영수지차액이 正의 수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負의 수로 나타나게 되며, 여기에 前期移越運營收支差額을 더하면 次期移越運營收支差額이 算出된다.

제25조는 貸借對照表로서 貸借對照表에 記載할 計定과 計算은 總額主義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번과 차번의 대조표로 하며, 일정시점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資產, 負債, 基本金, 積立金, 運營收支差額을 상호 대조하는 一覽表이다.

제26조는 資產의 평가로서 제1항에서는 取得價額을 資產의 評價基準으로 잡고 있으며 取得價額이란 資產의 취득대금 이외에 資產을 취득하기 위하여 支出된 제반부대비용을 모두 합한 金額을 말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金額差異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에는 取得價額으로 評價하고 후일에 資產再評價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 하는것이 좋다.

제27조는 資產의 再評價로서 제1항은 保有資產이 帳簿價額과 시가 사이에 差額이 있을때는 그 資產을 再評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資產의 再評價 方法, 時期, 再評價差額등의 會計處理 요령을 資產再評價法을 準用하도록 하고있다.

제28조는 대손상각으로서 不實債券이 있을때 대손상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파산선고라든가 거주지 확인 불능증명같은 것이다.

제29조는 有價證券의 評價로서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投資目的 등으로 有價證券에 投資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때에는 시가로 평가하되, 장부가액은 변하지 않고 이를 각주 사항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제30조는 減價償却으로거 保有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에 대한 규정으로서 學校會計에 속하는 資産과 法人會計에 속하는 資産은 減價償却을 하지 않기로 규정하였으며 資産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할 때에 當該資産의 帳簿價額으로 處理하도록 하였다.

제31조는 外貨資産및 外貨負債등 으로서 法人이나 學校가 外貨資産이나 外貨負債가 있을 경우에 評價하는 基準을 규정하였으며 償還差益 또는 償還差損을 當該 運營收支計算書에 計上하도록 하였다.

제32조 貸借對照表 作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제23조 2 基本金の 增加로서 法人이나 學校가 經營運營과정에 固定資産을 取得하거나 投資資産에 投資를 한 때는 그자산의 增加額 만큼 基本金を 取得하거나 投資資産에 投資를 한때는 그자산의 增加額 만큼 基本金の 증가로 計算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3조 3 基本金の 減少는 法人이나 學校가 보유중인 투자자산이나 固定資産을 處分하여 그 對價로 새로운 固定資産을 取得하거나 經상運營비에 充당, 지출하거나 이를 막론하고 투자자산이나 固定資産을 處分한 때에 基本金の 減少計算을 규정하였다.

제32조 4 各種積立金の 積立은 法人이나 學校가 特別한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그사업에 수행하기 위한 資源을 조성하거나 財政運營上 필요할 때는 資金運用豫算書에 積立金の 積立支出로 計上하여 積立金を 積立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32조 5 各種積立金の 인출 및 使用은 各種積立金を 인출할 때는 資金運

用豫算書, 資金運用計算書, 運用收支計算書의 수입의 부에 해당 積立金의
인출수입으로 計上하여 積立金을 인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第 4 章 決算 -

財務諸表및 부속서류에 관하여 규정하여 있음(31조), 決算書의 提出
(3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 決算으로서 제33조 決算의 內容은 財務諸表의 부속서류를 기록하도
록 규정하였다.

제34조는 決算書 작성제출로서 決算書를 作成하여 심의, 제출기간을 정하
고 理事會에 제출한 것을 명시하였으며 學校會計와 法人會計의 決算報告書
를 첨부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3) 特例規則의 條文解析

이 部分은 特例規則에 대한 條文을 規程한것으로서 이 條文에 대해서 學
校法人의 會計制度에 관한 全般的인 事項을 分析하여 內容을 整理하였으며
特例規則의 分析內容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4. 特例規則의 財務諸表 內容分析

特例規則 第16條 에서 規程한 財務諸表의 種類를 보면

① 資金運用計算書 ② 運營收支計算書 ③ 貸借對照表로 3가지로 規程하였는데 이것은 複式簿記에 依한 會計처리를 하며 學校法人의 會計業務에 對한 合理的인 議事決定과 會計情報를 利用하려는 者에게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 데 있다.

이와같은 特例規則의 財務諸表의 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1) 資金運用計算書

資金運用計算書는 當期の 資金의 源泉으로 부터의 收入과 支出을 運用하는 資金의 흐름인 移動狀況을 表示하여 나타낸 計算書이다 學校나 法人이 當該 會計年度에 實現되고 歸屬되어야 할 資金의 收入과 資金支出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지로 資金이 收入되고 支出된 때를 基準으로 한다고 規程하였다.

第20條 第1項을 보면 資金收入中 이미 前年度에 收入이 實現된 資金 즉, 前期末 先受金과 當該 會計年度 收入金中 次期年度에 實際 收入이 實現될 當期末 未受金은 當該 會計年度의 實際 資金收入과 關係가 없으므로 이를 收入의 部에서 控除하도록 規程하고 있다,

第2項은 위와는 反對로 資金支出중 前期에 支出이 實現된 資金 즉, 前期末先給金과 當該會計年度에 支出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次期年度에 實現될 期末未支給金은 이를 支出의 部에서 控除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資金運用計算書는 資金의 흐름인 流動過程을 나타내며 企業會計에서의 財務狀態變動表와 類似하다.

위와 같은 規程에 依해서 資金運用計算書의 資金收入과 支出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算式으로 表示할 수 있다.

< 資金의 收入 >

(當期總收入 + 前期末先受金+期末未支給金) - (前期末先受金 + 期末未受金)

< 資金의 支出 >

(當期總支出 + 前期末先給金 + 期末未支給金) - (前期末先給金 + 期末未支給金)

위의 算式의 計算方法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資金運營計算書의 計算方法 >

資金收入源泉 (收入의 部)

1. 各 收入計定科目別 收入額	X X X
2. 當期 資金 收入 合計額	3,560,000
3. 資金收入 調整	
1) 前期末 先受金 控除	△ 720,000
2) 期末 未收金 控除	△ 200,000
3) 前期移越 運用資金	800,000
4. 合 計	3,620,000

資金支出의 用度 (支出의 部)

1. 各 支出 計定科目別 支出額	X X X
2. 當期資金 支出合計	3,230,000
3. 資金支出 調整	
1) 前期末 先給金 控除	20,000
2) 期末 先給金 控除	30,000
3) 次期移越 運用資金	440,000
4. 合 計	3,630,000

위 表에서 보면 收入의 部와 支出의 部에 合計가 同一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當該 會計年度에 收入이나 支出이 計上됐으며 實際로 收入 또는 支出이 되지 아니한 科目을 差減하고 여기에 前期移越 資金과 當該 會計年度에 남아 있는 當期 運用資金을 더하면 같아지도록 되어있다.

(2) 運營支出計算書

運營收支計算書는 收入과 支出의 計上을 實現主義에 의해서 作成한다. 運營收支計算書를 作成함에 있어서 資金運用計算書에 計上되어있는 科目中 收入의 部는 當該 會計年度 運營收入을 計定科目別로 計上하고 이때에 資金運用計算書上에 收入中에서 當該會計年度中の 其他 基本金代替額, 法人計定代替額, 各種積立金計定 代替額을 收入金에서 差減하여 計算한다.

이와같이 其他基本金, 法人計定, 各種積立金 計定の 代替轉出額을 當該收入에서 控除하는 것은 當該年度の 費用이 아니므로 支出의 部에서 計算할 수 없는 것이고 各種積立金도 次期年度에서 積立目的에 부합되는 事業을 施行하고자 할때에 支出이 되는 것이다. 當該 會計年度の 運營收入에서 代替되는 其他基本金, 法人計定, 各種 積立金은 貸借對照表 計定科目에서 計算되는 것이다.

그리고 資金運用計算書上에 支出의 部에서 運營收支計算書의 支出로 計算되는 것은 損費支出로서 學校나 法人에서 人件費, 管理運營費, 研究費, 其他 經費(支給利子), 學生經費 等の 순수한 費用의 支出을 運營收支計算書의 支出로 計上하며 固定資産 取得에 關聯된 資本的 支出인 資産 및 借入金과 같은 負債에 關한 支出은 運營收支計算書上에서 收入이나 支出에서는 計上되지 않으며 貸借對照表 計定科目에서 計上하는 것이다. 또한 次期移越 運營收支 差額을 더하면 次期移越에 移越될 總運營收支差額이 發生한다.

이것은 貸借對照表上에 次期移越 運營收支差額 金額과 一致하며 同一한

金額으로 나타난다. 運營收支計算書는 企業會計의 損益計算書와 그 機能이 비슷한 方法으로 計算된다. 그러나 運營收支計算은 企業會計에서의 損益概念이 아닌 순수한 資金의 收入과 支出의 差額이라는 것을 認識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運營收支計算書의 計算方法을 算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當期運營收入

收入의 部 各計定科目別 運營收入合計 - (法人計定代替額 + 其他基本
金計定 代替額 + 第積立金計定代替額) = 當期收入運營收入合計

② 當期運營支出

支出의 部 各計定科目別 運營支出額 合計

③ 次期移越 運營收支 差額

(當期運營收入 - 當期運營支出) + 前記移越 運營收支差額

(3) 貸借對照表

貸借對照表는 學校나 法人의 一定時點에 財務狀態를 나타내는 表로서 資金運用計算書上에는 運用收支計算에 該當하지 않는 部分으로서 前期에 移越된 各計定別 金額과 當期에 運用된 部分을 資產, 負債, 基本金, 運營收支差額으로 區分하여 表示한 것이다.

流動資產, 固定資產, 流動負債, 投資資產, 有形固定資產, 無形固定資產으로 區分하였으며 負債는 流動負債, 固定負債로 區分하며 그리고 基本金, 積立金, 運營收支差額으로 區分表示하고 있다.

企業會計原則에서는 貸借對照表를 크게 資產, 負債, 資本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對하여 特例規則에서는 資本金에 類似한 基本金,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에 類似한 積立金으로 當期純損益에 類似한 運營收支差額으로 區分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企業會計와 다른點은 資金計定을 設定하여 表示하도록 한것이 다른 點이다. 資產, 負債 및 基本金の 記載할 計定과 計算은 總額主義로 하도록 規程하고 있으며 資產의 評價는 取得價額에 依한다고 規程하고 있다.

① 資産의 評價

資産의 再評價는 資産再評價法の 規程에 準用하며 任意로 再評價할 수 있도록 하였다. 理事會의 決意에 따라 資産을 再評價하였을 경우에는 學校法人은 再評價稅의 納稅義務가 없고 再評價 積立金에 對한 處分制限도 特別히 規程한 것이 없으므로 再評價 積立金으로 會計처리 하는 것이다.

學校法人의 경우 保有資産이 取得當時의 金額으로 帳簿價額으로 記載하고 있다. 學校法人의 경우 保有資産이 取得當時의 金額으로 帳簿價額으로 記載하고 있다 그동안 貨幣價値가 큰 폭으로 上昇되고 不動産 價格이 上昇한 經濟 環境에서는 現實價格에 맞도록 資産價額을 再評價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② 有價證券의 評價

有價證券의 評價는 買入價額에 附帶費用을 加算하고 이에 總平均法이나 移動平均法을 適用하며 算定한 取得原價를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하도록 規程하고 있다. 決算 期日 1個月前에 時價가 현저하게 下落하며 回復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될 때에 時價에 評價하며 이때 發生하는 評價損失은 有價證券評價충당金を 設定하여 有價證券金額에서 差減하는 會計處理를 한다.

또한 有價證券評價充當金を 設定한 後에 時價가 回復되면 回復된 金額만큼 有價證券評價充當金換入으로 會計處理한다.

③ 減價償却

學校法人은 資産에 對한 減價償却을 하지 않기로 規程하였으므로 그 資産의 機能이 消滅되어 廢棄處分한 때에 資産과 基本金を 相計處理한다.

④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의 評價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의 評價는 貸借對照表基準日 現在의 韓國銀行 集中基準率(告示率)을 外換差損益으로 計上한다

⑤ 基本金

學校法人이 固定資産을 取得하여 그자산의 增加額 만큼 基本金에 增加로 計算하러 이때에 會計處理 方法은 基本金計定代替額을 運營收支計算書의 運營收入控除하고 會計處理하며 學校法人의 保有中인 投資資産이나 固定資産을 處分할 경우에는 基本金計定の 減少로 처리한다.

⑥ 積立金

學校法人은 特別한 事業計劃을 樹立하기 위해서 必要한 資金을 資金運用計算書上의 積立金支出로 計上하여 積立金으로 積立한다. 企業會計에서의 資本剩餘金이나 利益剩餘金과 類似한 것으로 剩餘金 處分事項과 相似하다. 學校法人會計에서는 運營計劃에 依據 支出豫算으로 資金運用計算書의 資金支出로 積立하는 것이 特色이다.

第五節.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會計單位

(1) 問題點

學校法人의 學校會計 體系는 校費會計와 期成會費會計, 學生會費등 別途의 其他會計가 있으며 法人의 會計를 보면 非營利 會計인 法人一般業務會計와 附屬病院會計및 收益事業會計인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會計로 區分된다.

그리고 附屬病院 會計는 規模가 매우 크므로 大韓病院協會가 採擇한 病院會計準則으로 學校會計에는 學校費 會計와 期成會費會計가 各各 區分되어 會計處理를 하며 豫算會計制度 역시 各各 區分되어 豫算編成을 한다.

이와같이 二元化된 學校會計로 인하여 豫算編成은 물론 會計處理도 區分하여 處理하는바, 去來의 發生에서 부터 傳票作成 및 帳簿組織構造도 別途로 學校費會計와 期成會費會計로 區分하고 있다. 그리고 會計年度末에 決算에 있어서 資金運用計算書에서는 學校費 會計와 期成會費會計를 連結하는 二元化된 決算을 結合하는 決算過程을 가진다.

이렇게 區分經理하는 실정으로 會計處理와 資金의 管理도 學校費와 期成會費로 나누어거 資金管理를 하고있는 것이 大部分이다. 그리고 豫算會計制度의 境遇도 마찬가지로 學校費와 期成會費로 區分하여 編成하며 豫算執行 및 統制도 모두 區分하여 處理되고 있는 실정이다.

學校費 豫算은 法人 理事會의 議決事項이지만 期成會費는 期成會의 議決事項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期成會의 構成員은 學生의 父母가 期成會會員으로 構成되어 期成會費의 豫算編成과 執行 및 統制 權限이 있으며 執行되는 期成會費 支出도 嚴格히 말하자면 期成會員의 長이 決裁를 하는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期成會費 豫算編成에 대한것은 期成會員이 召集되어 期成會豫

算編成을 會議를 通하여 通過시키고 捺印한 期成會議錄을 期成會費 豫算書에 添附하여 教育部에 提出하고 있다.

또한 期成會費 支出에 대한 決算書에도 期成會員이 捺印한 期成會議錄을 添附하여 教育部에 提出하고 있다.

그런데 現實에 立場에서 보면 基成會 會員으로 構成된 學父母들이 會議를 하여 會議錄을 作成하는 것이 거의 없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期成會費 收入에서 支出에 이르기 까지 大學의 豫算部署 및 經理部署에서 會計處理 및 資金管理를 學校에서 하고 있으며 支出의 境遇에는 決裁系統을 밟아 總長에게 決裁를 득한후 會計處理를 하고 있다.

둘째, 大學의 期成會 構成過程과 會員으로 構成된 學父母들이 期成會費 收入과 支出에 대해 權限行사가 實質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각 大學에서는 期成會 會員 構成을 任意로 選定하여 期成會 會議錄 作成도 豫算部署와 經理部署에서 任意로 作成提出하는 것이 大部分 現實情이다. 이러한 矛盾된 點을 지적하여 改善하고자 하는것이 本 論文의 가장 重要的 改善點으로 追求하고자 하는 것이다.

(2) 改善方案

現在 大學에서 學生들에게 登錄金으로 告知한 納入金 通知書를 보면 新入生の 境遇에 入學金, 授業料, 期成會費, 學生會費 在學生의 境遇에는 授業料와 期成會費, 學生會費, 其他 學生自治費로 區分되어 登錄金通知書에 告知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學生會費나 其他 學生自治費는 大學에서의 會計處理 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大學에서 會計處理 對象인 入學金, 授業料, 期成會費의 3가지 項目만 納入金 收入으로 收納하고 있다. 入學金은 新入生이나 再入學하는 學生의 境遇에만 收納한다. 여기에서 重要的 것은 登錄金 告知書 上에 授業料와 期成會費를 會計處理를 하고 있다. 入學金과 授業料의 收納은 學校費 收入으로 計上하여 學校費 會計를 構成하여 豫算編成과 資金運用計算書에서 決算을 하고 있으며 期成會費는 別途로 期成會費 收入으로 計上함으로서 豫算編成도 期成會費 收入으로 計上함으로서 豫算編成도 期成會費會計의 收入으로 하고 支出에 있어서도 期成會費 收入範圍內에서 支出豫算을 編成하고 있다.

그리고 決算에 있어서도 資金運用計算書上에서 期成會費會計의 收入과 支出로 計算한다.

이와같은 矛盾으로 大學에서는 會計處理에 있어서 傳票作成, 帳簿組織과 資金管理를 別途로 會計處理하는 學校費會計와 期成會費 會計로 區分되어 二元化된 會計體系를 形成하게 되는 主要原因이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다음과 같이 改善하고자 한다.

첫째, 學生들에게 通知하는 登錄金告知書에서 授業料와 期成會費를 統合하여 합친 金額으로 告知書를 發付하여 現在學校費會計와 期成會費會計로 區分되어 있는 會計體系를 單一會計로 統合하는 點과

둘째, 現在 學校費 會計로 統合하는 境遇가 있다. 例를들면 學校費會計 計定科目인 納入金(5100)중 入學金(목)의 收納은 學校費 會計 計定科目인 納

入金(5100관)으로 統合處理하고 있다. 期成會費(5113목)도 學校費 會計의 計定 科目에서 納入金(5100관)中 期成會費(5113항)으로 學校費 會計處理로 하면 된다.

本 論文의 筆者는 위의 2가지 方案中 첫째 方案으로 改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위의 問題點에서 지적된 期成會費의 區分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여러가지 矛盾點을 모두 除去할 수 있으며 豫算會計나 決算會計, 資金 管理의 區分을 할 必要가 있으며 앞으로 大學의 登錄金 自律化 時期에 對比하고 學生들의 期成會費에 대한 疑惑을 가지고 소요에 대해서도 誤解의 所持가 없어진다.

이와같이 授業料와 期成會費를 統合告知하여 現在 二元化된 學校費 會計와 期成會費會計 單位를 單一 會計體系인 學校費 會計와 期成會費會計單位를 單一 會計體系인 學校費 會計로 處理하는 것이 重要시 되며 改善하여야 하는 點이다.

2. 豫算會計制度

(1) 問題點

- ① 大學豫算制度는 品目別 豫算制度이다.
- ② 豫算編成部署와 執行部署의 分리에 따른 豫算, 會計의 職員들의 專門性 提高
- ③ 豫算의 早期編成
- ④ 豫算의 內部統制

(2) 改善方案

- ① 私立大學에서는 豫算編成 方法으로 아직까지도 흔히 쓰이고 있는 品目豫算制度(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豫算의 執行 및 成果가 輕視되고 있으며 充分한 檢討와 計劃性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私立大學의 會計制度를 品目豫算制度에서 企劃豫算制度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내지는 零根據豫算制度 (Zero-base Budgeting System) 로 轉換함으로서 教育投資와 目的과를 一致시키고 그 成果를 測定하여 責任의 素材를 分明히 하는 것이 最우선적으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 ② 私立大學의 財政에 脆弱으로 人件費 抑制로 인한 豫算編成部署와 執行部署의 統合으로 業務를 遂行하는 大學이 많다. 이로인한 豫算의 編成, 執行에 대한 統制機能이 없이 豫算執行에 의한 形式主義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業務의 重複으로 豫算과 會計業務 擔當者가 業務量의 增加로 專門性을 가질 수 없다 豫算編成部署인 企劃室을 新設하여 編成 및 統制로 大學豫算運營을 할 수 있는 專門的인 知識을 갖추어야 한다.

- ③ 豫算의 早期編成을 위해서는 入學試驗과 開講準備業務와 豫算編成業務가 時期的으로 중복되어 豫算의 內容面에 있어서 慎重히 分析, 檢討할 時間的 余裕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豫算의 早期編成을 위해서 豫算編成業務에 관한 基本運營計劃의 樹立, 豫算編成 指針의 確定, 示達 등 豫算에 關聯된 業務를 事전에 決定하고 學生納入金의 早期策定과 敎職員의 新規增員 人件費 및 政策事項등이 早期決定되어 適期에 編成할 수 있도록 充分히 時間을 두고 分析, 檢討하여야 한다.

- ④ 豫算의 內部統制

豫算의 內部統制는 學校實情에 따라 豫算의 執行에 있어서 1人의 決裁만으로 執行하지 않고 統制部署인 企劃室에서 豫算統制印을 받아 執行하도록 함으로서 一種의 牽制機能을 促求한 것이라 하겠다. 豫算의 綜合管理를 위하여는 豫算의 企劃, 編成機能과 執行機能 그리고 監督과 評價部署 등 最小限의 牽制組織部署를 두고 適定한

内部統制를 施行함으로서 編成된 豫算을 接合하고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할 수 있을 것이다. 每會計年度末에는 審査分析을 하여 大學運營에 있어서 效率的인 計劃이 樹立되어야 한다.

3. 計定科目

(1) 問題點

- ① 圖書購入에 따른 圖書計定
- ② 先給費用計定과 未支給費用計定
- ③ 計定科目 新設 및 變更

(2) 改善方案

① 圖書購入에 따른 圖書計定

大學의 豫算會計制度에서는 圖書購入費로 豫算에 編成된 金額을 執行할 境遇에 各種 購讀料, 刊行物, 圖書購入등 豫算編成 豫算範圍內에서 支出하고 있다. 이러한 支出은 決算時에 資金運用計算書上에 圖書計定으로 計上되고 이것을 貸借對照表上에 圖書計定에 表示되고 資產帳簿에 圖書計定으로 會計處理 되고 있다. 그러나 資產計定인 圖書는 長期間에 걸쳐서 圖書館에 保管할 수 있는 資產으로 長壽 價値가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모두 管理運營費인 用品費로 當該年度 費用으로 會計處理하는 것이 옳바른 會計處理이다.

그리고 圖書館에 圖書臺帳을 備置하여 經理部署에 圖書計定과 金額을 一致시켜야 할 것이다.

② 先給費用計定과 未支給 費用計定

企業會計에서는 未經過 保險料, 支給利子 등 當該 會計年度 期間이 아닌 費用은 別途로 先給費用으로, 未支給된 費用은 未支給費用으로 會計處理하고 있다. 學校法人會計에서도 이와같은 費用이

發生하고 있다.

企業會計에서 正確한 期間損益을 計算하기 위해서 會計處理 하는 것과 같이 學校法人會計에서도 資金의 支出을 正確한 期間計算을 위해·先給費用이나 未支給費用 計定の 會計處理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計定科目의 新設 및 變更

學校法人의 計定科目은 特例規則이라는 規程下에서 計定科目이 정하여져있기 때문에 새로운 計定科目의 新設이나 變更을 할 境遇에 는 어떻게 計定處理를 해야할지 困難하다.

예를들면 先給費用이나 未支給費用, 先給法人稅 등 學校法人會計에서 發生하는 것을 計定處理 하는데 隘路要因이 생긴다.

이와같은 現像은 特例規則에 規程된 計定科目 테두리 內에서 計定處理를 하는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矛盾點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各 學校 실정에 맞추어서 計定處理할 수 있도록 特例規則의 計定科目을 신속하고 融通性 있게 規程補完을 繼續해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4. 學校法人의 稅制問題

(1) 問題點

- ① 勤勞所得에 대한 非課稅 範圍
- ② 利子所得稅에 대한 還給
- ③ 附加價值稅와 稅金計算書 交付

(2) 改善方案

- ① 勤勞所得에 대한 非課稅 範圍

所得稅法 施行令 第43條(勤勞所得의 範圍) 第6號를 보면 技術手

當.保健手當,研究手當 其他 이와 유사한 성질의 給與 다만, 大學, 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學校 (以下 이號에서는 “大學等”이라 한다.) 의 敎員이 支給받는 研究補助費로서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基準(教育法에 의한 大學等の 境遇에는 財務部長官이 教育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하는 基準)에 의한 金額을 除外한다.(但書改正 91.12.31)라고 規程되어 있으며 教育部 (대재 22601 -143 91.3.27)에 研究補助費 非課稅 限度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90年度 研究補助費 支給比率이 給與合計額의 50% 超過者는 91年度 給與 合計額의 50%까지
2. 90年度 研究補助費 支給比率이 給與合計額의 50% 以下 者는 90年度 研究補助費支給額 + 給與合計額 引上分の 50%

위와같이 敎員의 勤勞所得의 研究補助費에 대해서는 91.12.31 改正시 까지 그 동안 非課稅 惠澤을 賦與하고 있다. 그러나 職員에 境遇에는 勤勞所得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非課稅 惠澤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學校機關에서 勤務하는 職員의 境遇에는 勤勞所得稅에 대한 不利益으로 생각하며 課稅衡平에 있어서도 어긋난다. 이러한 問題는 學校機關에서 勤務하는 敎員이나 職員도 課稅衡平을 이룰 수 있도록 稅法 改善을 推進하는 方案이 있어야 한다.

② 利子所得稅에 대한 還給

學校法人의 固有目的事業會計 또는 學校會計에서 發生한 利子所得을 法人稅法 改定으로 인하여 學校法人의 學校會計에서는 法人稅法에서 規程한 會計處理와 稅務調整計算書 樣式인 源泉納付稅額明細書의 作成과 課稅標準 申告書 등 稅務署에서 必要한 書類를 具備하여 管轄 稅務署에 利子所得稅에 대한 申告書を 作成하여 申告하여 還給節次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問題는 法人稅法에 맞추어서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을 還給받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관련서

류를 添附하고 申告를 하여 還給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學校會計에서는 業務內容 및 申告를 하여 還給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學校會計에서는 業務內容 및 實務에 不便한 點이 많다.

이와같이 學校法人의 學校에 不合理한 利子所得稅에 대한 源泉徵收는 學校法人의 固有目的事業이나 學校會計에서 發生한 預金利子是 租稅改正을

하여 源泉徵收에 대한 利子所得稅를 減免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③ 附加價值稅와 稅金計算書 交付

附加價值稅의 納稅義務는 財貨나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는 누구나 納稅義務가 있다. 附加價值의 課稅對象은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과 財貨의 收入이다. 즉, 附加價值稅는 當該 財貨 또는 用役을 納稅義務者인 事業者가 供給할 때 課稅되며, 財貨를 收入하는 경우에는 當該 財貨의 收入이 事業者가 하든지 實需要者가 하든지 이에 關係하지 아니하고 모든 財貨의 收入者에게 課稅된다. 다만 教育用役, 醫療保健用役, 宗教, 慈善, 學術, 救護 등 其他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에 대해서는 附加價值稅를 免稅하고 있다.

學校法人의 學校의 境遇에는 免稅財貨나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가 아니므로 法 第15條의 規程에 의한 附加價值稅를 徵收할 義務가 없고 法 第 16條의 規程에 의한 稅金計算書의 交付義務도 없다. 그러나 所得稅法上的 課稅資料를 效率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附加價值稅法 第20條(稅金計算書의 提出) 第3項 및 施行令 第67條 第1號에 의한 交付받은 稅金計算書를 政府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學校法人의 學校는 教育用役의 供給에 대한 附加價值稅는 免稅이지만 다른 事業者가 供給하는 財貨 및 用役에 대한 買入稅額을 負擔하며 買入稅金計算書의 買入稅額에 대해서는 買入稅額 還給을 購入時 낸 稅金을 商品生産後 賣出額에 따라서 還給받고

있으나 學校法人의 學校에서는 最終消費者로 買入稅額 還給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에 있는 學校로서는 購買時에 財貨 및 用役의 供給者인 企業이나 事業者에게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아야 하나 買入稅額이 記載되어있지 않은 簡易稅金計算書를 交付받고 있는 境遇가 많다. 附加價值稅法 第16條 2項에 의하면 簡易稅金計算書의 交付義務者가 指定되어 있으나 이것과는 關係없이 稅金計算書 대신 簡易稅金計算書를 交付받고 附加價值稅 만큼 購買時에 買入稅額을 뺀 供給價額만 記載하고 交付 받는다. 그러나 法 第 16條 2項에 의한 交付義務者가 發行하는 簡易稅金計算書의 供給價額에는 附加價值稅額 包含되어 記載된 金額(供給價額)으로 交付하여야 하나 去來 通常 買入稅額이 빠진 供給價額만 記載하고 學校法人의 學校에 境遇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을 경우 買入稅額에 대한 稅金負擔과 企業과는 달리 買入稅額 還給을 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便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學校法人의 私立學校의 脆弱한 財政으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問題點에 대한 改善方案으로는 學校法人의 學校에 固有 目的事業에 대해서는 企業이나 事業者가 供給하는 財貨나 用役에 대한 附加價值稅를 免稅하는 租稅減免規制法の 稅法改正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學校法人의 學校에서는 教育施設擴充이나 實驗實習機資材 購入 같은 資金이 엄청나게 所要되는 실정이다. 私學의 財政難 解消을 위해서는 國庫補助金を 늘리는 것도 重要하지만 이처럼 不合理한 租稅制度를 改定함으로서 實質的인 財政支援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第五章 結 論

우리나라 學校法人의 私立大學 規模는 70년대 以後에 크게 伸張되었으며 大學의 量的膨脹과 質的向上의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大學經營의 財政的인 側面과 合理的인 會計制度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認識을 가지게 되었다.

本 論文에서는 非營利 法人으로 學校法人과 私立大學의 會計制度를 中心으로 非營利 法人과 學校法人의 性格 및 會計制度理論 그리고 非營利 法人의 會計分析을 하였으며 이 論文의 가장 重要한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인 特例規則에 대하여 集中 分析하여 私立大學의 會計體系의 二元性和 會計制度 그리고 稅制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提示하여 보다 發展된 會計制度를 成立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本 論文의 結論은 다음과 같이 整理하였다.

1. 大學規模가 急伸張함에 따라 私立大學의 財政規模가 大型化되고 學校法人 會計制度의 認識도 보다 合理的인 意思決定과 情報 利用者를 위한 財務報告 目的을 위하여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을 制定하였으나 複雜한 會計體系를 簡潔하고 單一會計體系로 定立하여야 한다는 趣旨에서 이 論文을 作成하였다.
2. 비영리법인의 성격으로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명과 비영리법인의 유형을 會計學上 非營利機關에 대한 研究報告를 通하여 非營利機關의 定를 살펴보았다.
 - (1) 非營利法人은 營利를 追求하지 아니하는 法人으로서 意도적, 計劃的인 利潤動機에서 利潤追求를 하지 않으며 資源調達과 實體의 維持는 社會的 要求에 의해 이루어지며 私的所有에 속하는 持分이 없으며 一方的인 消費, 支出을 하며 公共性, 社會性을 基調로하는 團體 또는 組織으로 이루어 진다.

(2) 美國學會의 研究報告에 의하면 非營利機關이라 함은 企業과 같이 利潤追求가 組織의 目標가 아니라 社會的 特秀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設立된 機關을 말한다.

(3) 美國會計學會의 非營利 組織體의 定義로서 다음과 같이 規程하였다.

- ① 意圖的,意識的인 利潤追求 動機가 없을것.
- ② 個人 또는 個別的으로 持分을 所有하고 있지 않을것.
- ③ 持分이 賣却 또는 交換되지 않을것.
- ④ 資本의 出資者 또는 寄贈者로부터 제공자원에 대해 直接的 또는 比例的으로 財務的 便益을 要求 받지 않을것

(4) 非營利 會計의 特徵은 基金會計로 運營되며 豫算編成에 의한 資金의 運用을 하며 資金運用表作成으로 資金運用收支計算書를 作成한다.

- ① 基金會計는 使用이 制限된 資源을 하나의 基金으로 하여 이것을 管理保存하고 報告하는 會計라 한다.
- ② 豫算會計란 一定期間 동안의 推定支出額과 所要되는 資源의 調達方法등을 明示한 財務活動計劃의 編成으로 반드시 遵守되어야하는 法的 拘束力과 資源의 調達과 直接的인 關聯을 맺는다.
- ③ 減價償却의 會計處理는 贊成論과 反對論이 있다. 非營利會計에서도 期間損益의 正確性이나 論理性으로 볼때 減價償却의 計上이 타당하다.

3. 非營利 法人의 會計分析으로서 非營利 法人의 內容으로 特徵과 一般原則을 敘述하고 非營利 法人의 收支計算과 財産計算을 分析하여 財務諸表를 作成하고 決算過程을 論議 하였다.

(1) 非營利 會計는 企業會計와 달리 特性을 가지고 있는 內容을 보면

- ① 非營利 法人의 財産에서는 豫算에 基本財産과 運營資産으로 區分하였다.
- ② 豫算會計의 特色으로 豫算에 의해 作成되는 收支計算書에는 計定科目의 實積額과 豫算額을 對比하여 作成된다.
- ③ 一般會計와 特定目的에 따라 會計單位의 目的別 區分으로 收支計算

과 財産計算을 實施한다.

④ 會計의 特色으로 修正發生主義가 使用되며 產出價値 보다는 投入價値의 測定報告가 더 重要하게 行하여진다.

(2) 非營利會計는 會計帳簿와 財務諸表를 作成하는데는 眞實性の 原則 및 明瞭性の 原則, 複式簿記의 原則, 繼續性の 原則을 遵守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3) 非營利會計 收支計算의 基準은 現金主義에 의하여 當該年度의 收入과 支出로 計上하고 그 差額은 當該年度 剩餘金으로 計上한다.

非營利法人의 設立者가 출연한 財産으로 一定한 目的財産으로 얻은 果實事業을 遂行하게 되는데 이러한 目的財産을 基本財産이라 하며 基本財産을 運用하여 얻은 果實收入을 運用財産이라 하며 固定資産의 購入支出은 收支計算의 對象이며 減價償却을 計算하지 않는다.

(4) 非營利 法人의 決算過程은 會計年度末에 會計記錄을 마감하여 試算表를 作成하고 決算修正을 한다음에 決算諸表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收支計算書, 剩餘金處分計算書를 作成 報告한다.

4.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대한 分析으로 私立大學의 豫算會計制度和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을 深度있게 精密分析하였으며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1) 學校法人 會計의 特性은 教育研究 遂行의 目的達成을 의해서 效率的인 管理를 하기위한 豫算會計制度和 “私學機關에 대한 特例規則에 의한 會計制度이다.

(2) 學校法人 會計의 會計原則으로는 眞實性の 原則, 複式簿記의 原則, 明瞭性の 原則, 繼續性の 原則으로 財務諸表를 作成되어야 한다.

(3) 大學의 豫算이란 一定期間에 있어 大學活動에 대한 것으로 項目

化 되고 承認된, 그리고 體系화된 計劃으로 具體적인 計劃을 計算體系에 따라 科目과 金額으로 表示하여 大學의 全般的인 運營을 나타내며 豫算의 編成과 實行을 위한 組織, 節次 및 統制를 豫算制度라 하며 資源의 節約과 效率化라는 觀點에서 品目別 豫算制度에서 企劃豫算制度 내지는 零根據 豫算制度의 導入이 要求되며, 豫算編成部署와 執行部署의 分離에 따른 豫算會計의 職員들이 專門적인 知識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豫算의 組織編成을 위해서 豫算編成業務에 관한 基本運營計劃의 樹立, 豫算編成指針의 確定, 示達등 豫算에 關聯된 業務를 事前에 決定하고 納入金 早期策定과 敎職員의 新規增員 人件費 및 政策事項을 早期에 決定되어 適期에 豫算編成을 할 수 있도록 充分히 時間을 두고 分析, 檢討하여야 하며 豫算의 綜合管理를 위한 豫算의 企劃, 編成機能과 執行機能 그리고 監督과 評價部署등 最小限의 牽制 組織部署를 두고 適定한 內部統制를 施行함으로서 編成된 豫算을 適合하고 效率的으로 管理運營할 수 있을 것이다.

(4)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

1981.2.28 文敎部令 第 489 號로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이 制定公表된 特例規則은 총 4개장 37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이루어졌다.

本 論文에서는 이 特例規則의 條項을 살펴보고 條項마다 條文解析을 통하여 深層分析하여 整理하였다. 그리고 特例規則의 計定科目은 別途로 附錄으로 定理하여 明示 하였다. 이러한 特例規則의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資金運用豫算書와 資金運用計算書 作成을 통하여 豫算制度를 유지하면서 資金運用計算을 겸하도록 하였다.
- ② 運營收支計算書 및 貸借對照表 作成으로 企業會計와 같이 運營成果測定과 財政狀態 把握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 ③ 連結財務諸表의 作成을 通하여 法人과 學校를 綜合한 法人中心의 單一機關으로서 財政運營 狀態를 把握하도록 하였다.
- ④ 資本的 支出(固定資產 取得)인 基本金の 增加와 再積立金の 積立은 運營收支計算書 收入의 部에서 控除 調整計算하는 會計處理 方法을 導入하였다.
- ⑤ 資産의 評價와 再評價 方法을 明示하였다.
- ⑥ 固定資産의 減價償却을 排除하고 不實債券의 貸損償却을 可能하도록 하였다.
- ⑦ 會計業務의 電算化를 위하여 計定科目을 收入, 支出, 資産, 負債, 積立金, 基本金등으로 Group화 하고 科目마다 分類番號를 賦與하였다.
- ⑧ 監査制度를 強化하였다.

(5) 特例規則 第16條에서 規程한 財務諸表의 種類를 보면

- 1) 資金運用計算書
- 2) 運營收支計算書
- 3) 貸借對照表

로 規程하였으며 이 特例規則의 財務諸表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資金運用計算書는 當期の 資金에 源泉으로 부터의 收入과 支出을 運用하는 資金의 흐름 科程을 나타내며 企業會計에서의 財務狀態變動表와 유사하다.
- ② 運營收支 計算書는 當該年度收入과 支出을 計上하는데 當該年度 收入中에서 其他基本金 代替額, 法人計定代替額, 各種積立金 計定 代替額을 收入에서 差減하여 計算한다.

支出에서는 순수한 費用의 支出인 人件費, 管理運營費, 研究費, 其他經費등으로 計上하여 資本的 支出인 資産 및 負債의 支出은 計算되

지 않는다. 그리고 當期 運營收入에서 當期運營支出을 差減하여 前期移越된 運營收支差額을 더하여 次期移越 運營收支差額이 發生하는데 이 運營收支計算書는 企業會計의 損益計算書와 그 機能이 비슷하다.

- ③ 貸借對照表는 學校法人의 一定時點에 財務狀態를 나타내는 表로서 資金運用計算書 上에서 運營收支計算에 該當하지 않는 部分으로서 前期에 移越된 각 計定別 金額과 當期에 運用된 部分을 資産, 負債, 基本金, 運營收支差額으로 區分表示하였다. 資産의 再評價는 資産 再評價法의 規程에 準用하여 任意로 再評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有價證券의 評價는 買入價額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總平均法, 移動平均法을 適用하여 算定한 取得原價로 하였고, 資産에 대한 減價 償却을 하지않고 자산의 機能이 消滅되어 廢棄處分한 代에는 資産과 基本金を 相計처리한다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의 評價는 貸借對照表基準日 現在의 韓國銀行 集中基準日 外換 差損益으로 計上하며, 基本金은 資産取得으로 增加한 만큼 運營收入控除하여 處理하며 資産의 處分으로 發生하는 境遇에는 基本金の 減少로 處理 하였다. 그리고 積立金은 特定한 事業을 遂行하기 위한 資金을 積立金 支出로 計上하여 運營計劃에 의거 支出할 때는 積立金 引出처리 한다. 이것은 企業會計에 있어서 剩餘金과 유사하다.

5. 마지막으로 私立大學의 會計制度의 問題點을 展開하고 그 改善 方案을 提示하였다.

- ① 學校法人의 學校會計體系는 校費會計와 期成會費會計로 區分하여 會計處理를 함으로서 豫算會計도 區分하여 豫算의 計劃樹立, 編成, 執行, 統制 등 別途의 會計를 構成하고 있다. 또한 會計處理도 去來의 發生에서 부터 傳票作成, 帳簿組織構造, 資金管理등 區分會計로 會計實務에 있어서 學校費會計와 期成會費會計의 資金管理도 別途로 나누어서 하는 實情이다. 이러한 問題의 改善方案으로 學生들의

登録金告知書上に 授業料와 期成會費를 합친 金額으로 統合告知하여 收納하는 것이 앞으로 登録金 自律化에 對備하고 單一會計인 學校費 會計로 轉換된 會計制度가 무엇보다도 重要な 會計制度로 改善되어야 할 點이다.

- ② 學校法人의 豫算會計制度는 品目豫算制度로 豫算編成 方法을 使用하고 있으나 企劃豫算制度 내지는 零根據豫算制度를 轉換하고 豫算編成部署의 分離에 따른 豫算과 會計業務를 맡고 있는 職員들의 專門的인 知識을 갖추어야 하며 豫算의 早期編成을 위해서 豫算編成業務에 關聯된 計劃을 事前에 決定하고 學生들의 納入金 早期策定과 敎職員의 新規採用에 따른 人件費 및 政策事項들이 早期決定되어야하고 豫算의 綜合管理를 위하여 豫算의 企劃,編成,執行機能 그리고 監督과 評價部署등 牽制部署를 두고 適正한 內部統制를 施行함으로써 效率的인 豫算을 管理 運用할 수 있다.

- ③ 學校法人의 計定科目은 特例規則의 規程된 計定科目 使用으로 새로운 計定科目의 新設이나 變更을 學校實情에 맞추어서 會計處理 할 수 있도록 特例規則의 計定科目을 迅速하고 融通性 있게 規程補完을 繼續해서 推進해야 한다.

(4) 學校法人의 稅制問題 3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學校法人의 勤勞所得에 대한 非課稅 範圍에 있어서 敎員의 研究補助費를 非課稅惠澤을 賦與하고 있고 職員에 境遇에는 非課稅 惠澤이 없다 같은 學校機關에서 勤務하고 있는 敎員이나 職員의 課稅 輕重을 適用 받을수 있는 稅法改善이 推進되어야 한다.
- ② 學校法人의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 後에 還給을 받아야 하는 法人稅法의 번거로움에 따른 會計處理와 申告節次로 業務에 불편한 點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學校法人의 固有目的事業會計나 學校會計에서 發生한 預金利子是 租稅改正을 하여 源泉 徵收에 대한 利子 所得稅를 減免하는 稅法改正이 있어야 한다.

③ 學校法人의 附加價值稅는 財貨나 用役을 供給받을 時에 賦課하는 買入稅額에 對해서는 稅金計算書 提出報告 義務만 있고 還給을 받을수 없는 不合理한 點 때문에 稅金計算書의 交付問題가 發生하며 附加價值稅 買入稅額을 負擔하여 脆弱한 私學의 財政難을 加重시키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改善하기 爲해서는 學校法人의 固有目的事業이나 學校會計에서 發生하는 買入稅額에 對해서는 附加價值稅를 免稅하는 租稅減免規制法의 稅法改正이 早速히 이루어져야 한다.

参考文献

- | | | | |
|-------------------|-----------------------------------|---------|------|
| 1. 朴 忠 煥 , | 非營利 法人의 稅務 | 法文社 | 1989 |
| 2. ————— , | 非營利 法人의 稅務會計 | 韓國稅政新報社 | 1986 |
| 3. 鄭 秉 洙 , | 非營利 法人의 法人稅務 | 韓國稅務協會 | 1989 |
| 4. ————— , | 學校法人 會計 | 三逸會計法人 | 1986 |
| 5. 李 東 奎 , | 非營利 會計 | 螢雪出版社 | 1991 |
| 6. 李 正 浩 , | 現代會計理論 | 法文社 | 1986 |
| 7. 尹 桂 燮 , | 私學機關의 財務會計制度 改善 | | 1982 |
| 8. 李 吉 永 , | 非營利機關의 會計制度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 1989 |
| 9. 徐 用 錫 , | 學校法人의 會計와 稅務에 關한 研究, 朝鮮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 1989 |
| 10. 李 東 奎 , | 우리나라 大學會計의 關한 研究, 全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 1989 |
| 11. 趙 雄 杰 , | 大學豫算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 1986 |
| 12. 尹 允 錫 , | 非營利事業體 會計의 概念體에 關한 研究 | | 1985 |
| 13. 鄭 基 善 , | 學校法人會計, 會計와 稅務, 7-10월호 | | 1981 |
| 14. 文 教 部 , | 私學機關의 財務會計 規則에 對한 特例規則, | | 1981 |
| 15. 任 昭 巒 , | 非營利會計의 體系的 考察, 會計와 稅務, | | 1981 |
| 16. 鄭 鎮 守 , | 學校法人 會計制度和 公認會計士 監查 | | 1982 |
| 17. 申 仲 植 , | 私立大學豫算會計制度의 改善, 大學教育 제6호 | | 1983 |
| 18. 金 東 建 , | 國, 公立大學豫算會計制度의 改善 제6호 | | 1983 |
| 19. 宋 在 萬 , | 私立大學의 經營合理化, 大學教育 제1호 | | 1986 |
| 20. 韓國大學教育協議會, | 大韓經營管理者研修 | | 1986 |
| 21. 윤 윤식 , | 非營利會計의 主要理論, 광운대학교신문 | | 1984 |
| 22. 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 全國私立大學 財政管理者 協議會
研修教材 | | 1992 |

23	教學社	文教法典	1991
24	大韓稅務協會	所得稅法	1993
25	—————	法人稅法	1993
26	—————	租稅減免規制法	1993
27	—————	附加價值稅法	1993
28	李 成植	附加價值稅法解說	1992
29	池 元善	私學關聯稅法硬直, 世界日報	1993.3.29

ABSTRACT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 of an Educational Foundation

Submitted by Kim Kyung-Hee

Advised by Prof. Hong Yong-Sik

Major in Accounti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analyse special rule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s accounting system, present methods of improving the contradictory duality of the accounting system of the private university, and formulate its unitary accounting system.

The content of this essay is arranged as follows:

1. Chapter 1 is the introductory part in which the major subject of the research is the accounting system of the private university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on the practical side of the accounting is also discussed.
2. Chapter 2 deals with the concept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the types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the attributes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the educational foundation's accounting.

3. Chapter 2 discusses the concep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nprofit accounting system and the theory of nonprofit accounting in connection with the theories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accounting system.
4. In chapter 3 the accounting of nonprofit corporation is analysed, and the significance of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ing and its substance are examined. Calculations of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ing and corporate property are also analyzed, and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of nonprofit corporate accounting is discussed.
5. Chapter 4 contains the analysis of educational foundation's accounting system. Budgetary accounting system of the private university, special rules of the financial accounting of the private organization, its financial rules (a proposal), problems of private university and their remedies are discussed.
6. Chapter 5 is the conclusion part, in which all items discussed above are summarized and arranged in order.

附 錄

I.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 條文解析

II. 私立大學校의 計定科目 解說

1. 資金運用 計算書計定科目 明細書

2. 運營用收支 計算書 計定科目 明細書

3. 貸借對照表 計定科目 明細書

I.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條文解析

第 1 章 總 則

제1조(目的) 이 規則은 제 2 조에 규정한 私立學校 및 이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의 特性에 맞는 財務會計 制度를 確立하기 위하여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事項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條文解析>

私立學校法 (1963,6,26 法律 제 1362 제1장 (總則) 제4절(財産 會計)의 제 28조 부터 제 33 조에서 學校會計의 基本的인 事項을 規程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1969,12,4 大統領令 제4396호) 으로 部分的인 補則이 규정되고 있으면서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 (1969,7,19 文敎部令 제216호)으로 會計運營의 細部的인 節次事項을 규정하여 이법령에 따라 모든 私學의 學校會計는 運營되어 오다가 私立大學의 運營規模가 커지고 그 會計運營이 量的으로 많아 졌고 活用되고 있는 教育資源의 정확하고 명료한 計算體系를 갖춤으로서 私學의 육성발전의 기틀을 세워서 그 과정을 側定하여 公益과 公共性을 提高하는 것이 要請되었다.

제2조(適用範圍) ① 이 規則은 私立의 大學, 師範大學 및 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以下 “學校”라한다)와 이를 設置 經營하는 學校法人(以下“法人”이라 한다) 에 適用한다.

條文解析>

이 조의 ①항의 適用 대상학교에 대한 규정으로서 私立大學의 大學에 準하는 大學과 그 大學을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에게 適用하고 있다.

大學에 準하는 大學이라 함은 추계예술학교, 각 신학교 같은 각종학교를 지칭한다 즉 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이 규칙의 적용대향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제2조 ② 學校의 校費會計 (以下"學校會計"라한다)와 法人의 일반업무회계 (以下"法人會計"라 한다)에 관하여 이 規則에 규정한 것을 除外하고는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을 適用한다.

條文解析>

제2조 ②항에서 學校의 校費會計라 함은 學校에는 學校經營의 基本을 이루고 있는 學校費會計,기성회비회계 두가지의 會計單位 가 있는데 이들 會計는 모두 이 規則에 準據하여 會計處理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가지 會計 以外の 會計로서 그 學校의 실정에 따라 學校經營에 수반하여 여러가지의 기타 受託 會計 즉 研究所,寄宿舍,食堂會計등과 같은 會計를 가지고 있을때 는 그 會計에 대하여는 이 規則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고 그 機關의 事業特性에 맞는 會計制度를 開發 適用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學校法人의 一般業務會計라 함은 固有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한 一般業務(非營利)會計와 收益事業會計등 두가지 會計를 갖고 있는데 收益事業會計는 學校會計나 法人의 一般業務(非營利)會計와 區分 정리하도록 私立學校法 제6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區分하여야 하고 收益을 目的으로 營爲하는 會計이므로 企業會計原則을 따라서 會計處理를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法人의 一般業務(非營利)會計는 이 規則에 準據하여 會計處理 하여야 한다. 學校法人의 收益事業에서 나오는 剩餘金은 非營利 事業會計로 轉出되며 非營利事業會計에서 學校會計로 다시 轉出되어 진다. 學校會計에는 두가지 基本會計 외에 其他의 特別會計가

있으며 以外에도 附屬病院 등의 會計가 있다. 附屬病院會計는 其他의 特別會計의 一種이나 그 規模가 매우 크므로 別途로 나타내는 것이 보다 合理的일 것이다. 其他의 特別會計와 附屬病院會計에서 얻어진 剩餘金도 學校會計로 轉出되게 된다. 附屬病院會計는 大韓病院協會가 採擇한 病院會計準則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3조(用語의 정의) 이 規則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資金”이라 함은 現金, 預金, 수표, 어음 및 郵便換을 말한다.
2. “貸借對照表 基準日”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財政狀態를 把握하기 위한 基準日을 말하며 그 時點을 貸借對照表에서 따로 明示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計年度 末日을 말한다.
3. “前期末”이라 함은 前 會計年度의 末日을 말한다.
4. “期末”이라 함은 當該 會計年度의 末日을 말한다.
5. “資金收入”이라 함은 資金의 增加를 말한다.
6. “資金支出”이라 함은 資金의 減少를 말한다.
7. “運營收入”이라 함은 資產의 負債의 增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資產의 增加를 말한다.
8. “運營支出”이라 함은 資產의 增加나 負債의 減少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資產의 減少를 말한다.
9. “資金運用豫算”이라 함은 1 會計年度의 모든 資金收入의 源泉과 모든 資金支出의 用度를 明示한 資金收支豫定計算書를 말한다.
10. “基本金”이하 함은 總資產에서 負債를 控除한 순자산 중에서 法人과 學校에 繼續적으로 投入 運用되는 基本的 資產의 가액을 말한다.

條文解析>

제3조에서 列舉한 用語를 다음같이 說明하기로 한다.

첫째, "資金"이란 것은 이規則에서 財務諸表로 規程한 資金運用計算書상 얼마만큼의 資金이 들어와서 얼마가 支出되었는가를 따질 경우 資金의 範圍를 現金과 預金 등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수표나 어음 및 통화성 有價證券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

즉, 現金화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郵便換을 現金대신 받았다면 이는 資金의 流入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貸借對照表는 어느 時點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表이므로 만약 月次決算을 한다면 每月末, 年次決算을 한다면 年度末의 財政狀態를 나타내게 된다.

이규칙에서는 "貸借對照表 基準日"이란 特別히 따로 규정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計年度の 末日(每年 2月 28日)을 基準日로 보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前期末"이라 함은 前會計年度の 末日로서 이는 全會計年度の 貸借對照表基準日과도 一致한다.

넷째, "期末"이라 함은 當年度 會計年度の 末日을 意味한다.

다섯째, "資金收入"이라 함은 資金收入의 源泉이 運營收入에 의하건, 資産의 減少나 負債 또는 基本金の 増加에 의하건 앞에서 말한 現金, 預金, 수표, 어음 또는 통화성 有價證券의 増加를 가져오는 모든 收入을 意味한다.

여섯째, "資金支出"은 앞의 資金收入과 반대로 運營을 위한 支出이나 資産의 増加, 負債 또는 基本金の 減少에 의하건 간에 資金의 支出을 招來하는 支出을 意味한다.

일곱째, "運營收入"이라 함은 損益去來에 의한 收入을 말하므로 資産의 減少나 負債의 増加와는 關係가 없으며, 學校費의 納入金收入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여덟째, 運營支出도 損益去來에 의한 支出을 말하므로 資産의 增加나 負債의 減少와는 關係가 없으며, 人件費, 管理運營費 支出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아홉째, “資金運用豫算”이라 함은 基本 財務諸表의 하나인 資金運用計算書는 資金運用의 結果를 사후적으로 나타내는 表인데 대하여 이를 사전에 나타내기 위한 計劃書이므로 資金收支豫定計算書를 말하는 것이다.

열째, “基本金”이란 株式會社의 形態를 가진 一般企業의 경우 資本이라는 計定에 該當되는 것으로서 이는 總資産에서 모든 負債를 控除하여 計算한 순자산을 意味한다.

第 2 章 豫 算

제4조 (豫算編成要領) ①法人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學校장은 每會計年度 개시 2월전까지 各各 法人會計와 學校會計 豫算編成 要領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法人會計와 學校會計의 豫算編成에 관하여 특히 必要한 事項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當該年度 개시 3월전 까지 그 指針을 示達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各 學校나 學校法人은 그 學校의 規模나 學校法人의 財政能力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며 每年 計劃하는 主要事業計劃도 多樣하다.

따라서 이러한 各 學校의 사정을 한가지 方針으로 얹매는 것 보다는 各 學校의 사정에 맞게 自律的으로 豫算을 編成하도록 하는것이 이 條項의 基本趣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自律的인 豫算編成 보다는 어떤 基準을 정하여 統一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判斷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청은 이러한 最小限의 事項에 대하여만 豫算編成 要領을 指示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5조 (豫算總計主義 原則)

모든去來는 豫算에 나타내어야 하며,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條文解析>

이는 會計學에서 말하는 總額主義를 豫算編成에도 準用할 것을 規程한 것이다.

總額主義란 收入이나 支出 또는 資産과 負債 또는 基本金を 서로 상계하여 그 差額만을 나타낼 境遇에는 그 去來의 전체면을 把握할 수 없으므로 恒常 兩面을 모두 나타내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6조 (豫算의 確定 및 提出)

① 이사장은 法人會計의 豫算案을 編成하여 每會計年度 개시 50일 전까지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理事會는 每會計年度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심의 確定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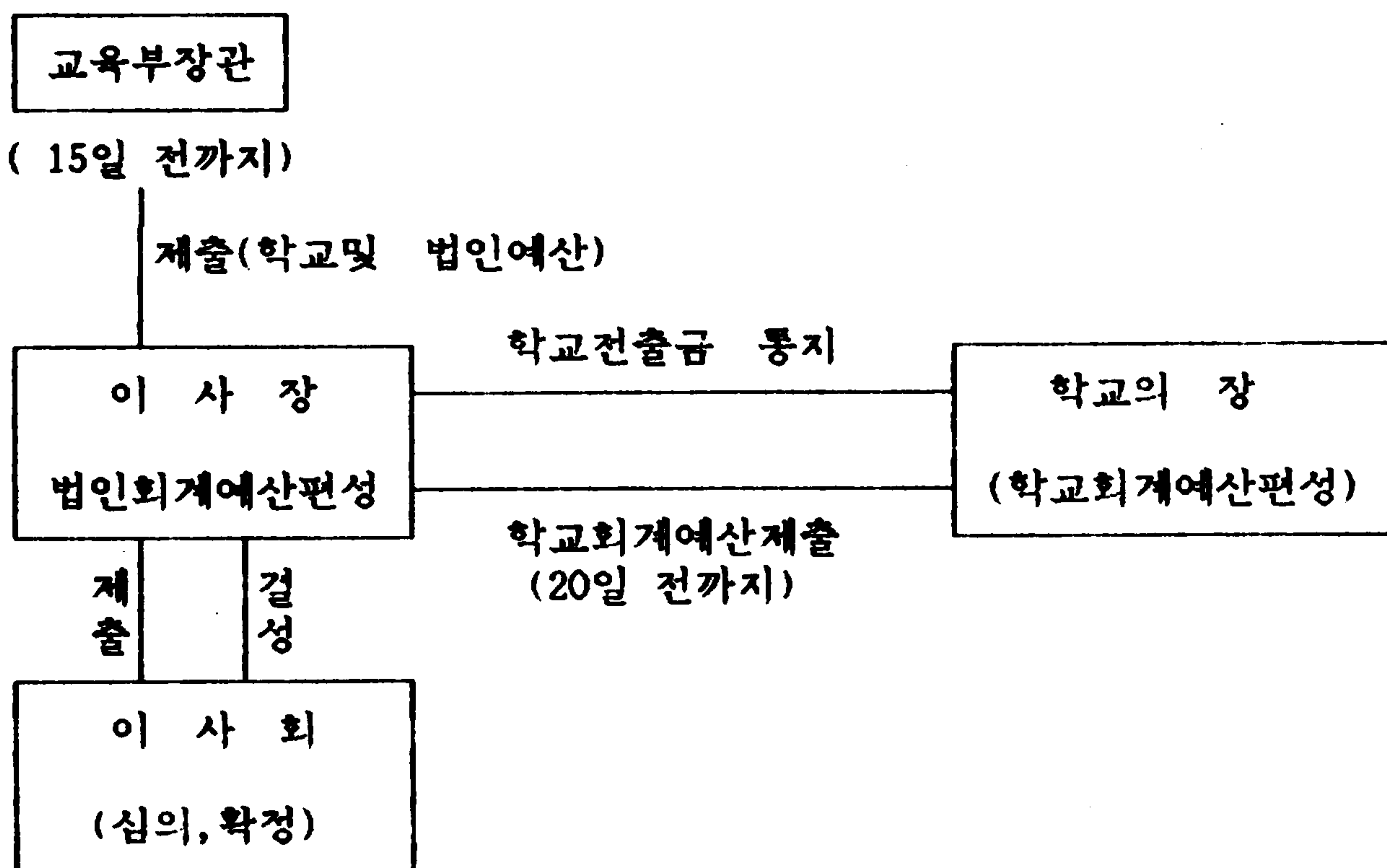
② 이사장은 每會計年度 개시 35일 전까지 學校轉出金 등 學校會計에 關係되는 豫算內譯을 學校의 장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③ 學校의 장은 學校會計의 豫算案을 編成하여 每會計年度
 개시 30일 전까지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理事會는 매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 確定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法人회계와 예산
 을 敎育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學校의 境遇는 公益的인 性格이 특히 強調되므로 豫算編成에 의
 하여 學校法人의 다음년도 運營目標 등을 敎育부에 提出하여 심
 의를 받을 必要性이 있기 때문에 本條項이 마련된 것이다.

< 表 4-3 > 學校法人의 豫算編成절차



〈 表 4-4 〉 學校法人의 豫算編成 日程表

기 관	과 정	근거조항	시 기
교육부 장관	예산편성지침 시달	제4조 ②항	전회계년도 12.20 까지
이사장	예산편성요령 결정	제4조 ①항	„ 12.31 까지
이사장	법인예산안 제출	제6조 ①항	„ 1. 9 까지
이사회	법인예산 결정	제6조 ①항	„ 1.19 까지
이사장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 통지	제6조 ②항	„ 1.24 까지
학교장	학교의 예산안 이사회 제출	제6조 ③항	„ 1.29 까지
이사회	학교예산의 심의확정	제6조 ③항	„ 2. 8 까지
이사장	법인, 학교예산서 교육부 제출	제6조 ④항	„ 2.13 까지

제7조 (準豫算)

① 이사장은 會計年度 개시전까지 法人會計의 豫算이 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청에 報告하고 法人會計의 豫算은 이사장이 學校會計의 豫算은 學校長이 豫算이 成立될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敎職員의 보수
2. 學校教育에 直接 使用되는 필수적 經費
3. 學校施設의 유지관리비
4. 法律上 支給義務가 있는 經費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當該年度の 豫算이 確定될 때의 그 確定된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條文解析>

이 條項은 豫算編成이 重大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境遇에 豫算執行시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를 規定한 것이다. 豫算編成이 지연될 시에는 일단 전년도 豫算規模대로 시급한 支出은 執行하고 當該 會計年度の 豫算이 編成되면 이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용인하여 總으로서 實務上 豫算編成의 지연에 따른 問題를 解決하도록 한 것이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豫算確定 後에 생긴사유로 인하여 이미 確定된 追加,變更을 가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編成하여 理事會에 提出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法人會計 또는 學校會計의 추가경정예산이 確定될 때에는 그 確定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教育部 장관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제6조에 의한 豫算編成은 當該年度 全體에 대한 豫算으므로 1學期에 대한 豫算은 比較的 正確性이 있으나 2학기 豫算은 正確性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納入金の 變化와 收入이 變化를 가져온다. 支出에서도 本豫算編成과는 다르게 예기치 않은 支出이나 豫算上의 支出보다 더 많은 支出要因 發生하여 當初에 本豫算 編成時와 큰 差額이 發生하는 境遇가 發生한다. 따라서 非現實的으로 編成된 豫算의 實績을 대비하여 會計期間中에 追加로 發生할 收入 및 支出에 맞게 豫算조정하여 經정된 追加경정예산을 提出하고 이 豫算과 實績을 대비하는 것이 賢明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追加경정예산을 아무런 制約없이 아무때나 몇차례에 걸쳐서 編成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면 當初에 本豫算編成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고, 실제 執行도 編成된 豫算과는 關係없이 執行하다가 會計年度末에 臨迫해서는 追加경정예산을 編成할 우려가 많이 있다. 追加경정예산에 대해서 회수나 시기 등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9조 (豫算의 內容) ① 豫算의 內容은 豫算總則과 資金運用豫算으로 한다.

② 豫算總則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資金運營 豫算規模
2. 豫算編成 基本方針
3. 主要事業計劃 概要
4. 長期借入金의 限度額
5. 一時借入金의 限度額
6. 其他豫算執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

③ 資金運用豫算은 別紙 第1號 書式 (자금운용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 에 의하여 作成하되 세목별 계산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條文해석 >

이 條項은 豫算의 具體적인 內容을 규정한 條項으로서 豫算總則에서는 收入과 支出豫算의 總規模를 나타내고, 豫算編成의 基本方針을 어느것에 比重을 두고 編成할 것인지가 重要하다.

研究費 增額에 두었다던가 敎職員의 처우개선에 重點을 두었다던가, 아니면 長期的으로 敎室, 研究施設, 後生施設 등 施設擴充 事業에 重點을 두었다던가 하는 主要方針을 記述하여 줄 것을 要求하고 있다. 主要事業計劃은 豫算編成의 基本方針중 重要性の 原則에 따라 支出金額中 큰것을 記述하며 當該年度內에 償還하여야 할 短期借入金이 있을 경우에는 償還될 最高限度金額을 記載하면 된다. 資金運用豫算書는 別紙 第1號 書式 < 表 4-5 > 에 例示되어 있으며 資金運用追加更定豫算書는 別紙 第2號 書式 < 表 4-5 > 에 例示되어 나타나고 있다.

< 表 4-5 > 別紙 第1號 書式

자 금 운 용 예 산 서

기관명: (수입(지출)의) 회계 : . . . 부터
수입(지출)의 부 : . . . 까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수입(지출)합계				

따라서 2月末 現在 負債를 모두 清算 못하고 남을 것이라는 推定額을 計算하여 記入한다. 또한 推定未收金도 이와같은 뜻의 債權額이다. 學校會計 豫算에 대한 書類는 前期末 推定負債明細書 나 前期末 推定未收金調書는 法人會計豫算附屬書類와 같으며 理事 會會議錄의 사본 대신에 學年別, 學科別 學生數 調書를 作成 提出 한다. 學生數調書는 大學과 大學院別로 區分하여 扁題人員과 登錄 人員을 學科別로 區分表示하며 계절제학기 登錄人員에서 除外한다. 第10條의 豫算의 附屬書類 樣式은 다음과 같다.

〈 表 4-7 〉 別紙 第3號 書式

전기말 추정부채 명세서

기관명:

. . . 현재

허가근거	차입처	차입내역		전기말잔액	지 급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회계	비고
		년월일	금액					
합 계								

〈 表 4-8 〉 別紙 第1號 書式

전기말 추정 미수금 조서

기관명:

. . . 현재

과 목			금 액	내 용
관	항	목		
수입(지출)합계				

< 表 4-9 > 別紙 第 5號 書式

학년도 학년말 학과별 학생수 조서

기관명:

. . 현재

구분	계열별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의.치학		약학	예. 체능	농학	수. 해양	기타	계
	학년별	정 .현원				예과	본과						
대학	1학년	정 원											
		등록정원											
	2학년	정 원											
		등록정원											
	3학년	정 원											
		등록정원											
	4학년	정 원											
		등록정원											
	(소계)	정 원											
		등록정원											
대학원	일반 대학원	정 원											
		등록정원											
	전문 대학원	정 원											
		등록정원											
	(소계)	정 원											
		등록정원											
합 계	정 원												
	등록정원												

제11조 (豫算執行의 內部統制)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豫算의 編成
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豫算을 집행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11條의 豫算執行의 內部統制라 함은

첫째, 豫算制度의 기구상의 內部統制로서 豫算編成 부서와 豫算의
執行 부서를 分離運營하고

둘째, 豫算執行統制機能을 수행하는 부서

셋째, 監督(監査)評價機能을 수행하는 부서등을 學校나 法人의 실정
에 맞도록 組織運營하는 것을 말하며

네째, 支出豫算의 집행(支出原因行爲)은 단 한사람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도 內部統制組織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內部統制란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에 발표된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特別報告書에 의하면 內部
統制의 目的과 內容을 다음과 같이 廣範圍하게 정의하고 있다.

內部統制組織은 經營方針의 준수를 촉진하고 經營效率을 增進시
키며 會計資料의 正確性和 信賴性を 檢證하고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企業內에서 採擇한 組織計劃 其他 모든 조정방법 등을
包含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첫째는 內部經營統制(Internal administrative
or operational control), 둘째는 內部會計統制(Internal accounting
Control) 셋째는 內部牽制(Internal check)를 모두 包括하여 會計上
의 사고적 오류나 부정의 방지를 위한 장치 이상의 것임을 나
타내고 있다.

제12조(豫算의 目的外 使用禁止)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資金運用
豫算을 超過支出하거나 資金運用豫算이 정한 目的外에 이를
使用할 수 없다.

條文解析 >

豫算에서 정한 目的以外的 使用을 禁止하는것은 政府의 豫算會
計法이나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豫
算에서 정한 目的을 無視하고 마음대로 支出하도록 許容한다면 豫
算을 수립한 意義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조항은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에서 규정한 것을 다시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조항은 실지로 現金
이 支出되는 境遇에 限定하는 것이며 現物給與를 받아서 이를
評價하여 資産으로 豫想할 경우는 실지로 現金이 支出되는 것이
없으므로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豫算의 전용)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同一 管内의 항간
또는 목간에 豫算의 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相互 전용할
수 있다. 다만 豫算總則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
성립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
용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

이 條에서는 確定된 支出豫算을 執行하는 과정에서 同一 管内에
서 항간 또는 목간의 豫算額 過不足이 發生할때에 항간 목간 상
호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特例規則의 예산구조를 보면
관, 항, 목으로 분류하고 관은 事業의 性質과 目的別로 區分하고
있으며 항은 收入의 源泉, 用度를 明示하고 목은 細部收入支出 明

細로 說明되고 있다. 收入額의 計算은 收入豫算額을 超過하여 收入되더라도 別로 規制를 하지않고 있으나 支出은 支出豫算額의 範圍內에서 執行하도록 强要하고 있다.

支出豫算에서 事業目的을 區分表示하고 있는 관은 그事業目的과 計劃을 變更하지 않는 以上 관에 豫想된 豫算額을 變更할 수 있으나, 目標事業 집행과정에서 支出種目を 여러가지로 分流하여 表示하고 있는 항과 목에 計上된 豫算額은 항간 또는 목간에 상호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 전용한 때는 理事會에 전용한 내용을 說明報告 하도록 하였다.

第14條 削 除

제3장 會 計

제15조 (會計原則)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會計處理하고 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會計處理는 客觀的인 資料와 證據를 基礎로 複式簿記原則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財務諸表에 表示된 資料와 情報는 眞實한 것이어야 한다.

條文解析>

제3장은 會計에 관한 全般的인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會計原則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조항에서 會計原則을 要約하면

1. 客觀的인 會計證憑에 의하여 複式簿記로 하며
2. 會計情報는 公共性의 原則에 따라 眞實하고 明瞭하게 表示하여야 하고
3. 적용하는 會計基準과 處理節次는 繼續性의 原則에 따라 자주 變更하지 말고 繼續性을 유지해야 하는 基本原則을 强調하고 있다.

제16조 (財務諸表) ① 財務諸表는 資金運用計算書, 運用收支計算書 및 貸借對照表로 한다.

② 貸借對照表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會計情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이 조에서는 財務諸表의 種類를 규정하였는데

1. 資金運用計算書
2. 運營收支計算書
3. 貸借對照表

위 세가지로 규정하였고 이 財務諸表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중요사항과 財務諸表의 각탄(科目)에서 숫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은 난외에 주기 주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1. 資金運用計算書란 용어는 1회계년도간 學校나 法人이 運營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이 수입된 때에 그수입의 원천(科目)으로 얼마만큼(金額)이 들어와서 그지출되는 금전이 지출비도(용도, 지출과목)로 얼마만큼(금액)이 지출되었느냐 하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즉 資金의 收入源泉金額, 支出費用金額을 計算함으로서 資金의 移動(流動) 狀況을 記錄 計算하는 것이다. 企業會計에서 財務狀態變動表와 비슷한 기능인데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2. 運營收支計算書는 企業會計의 損益計算書와 그 機能이 같은 것으로서 計算方法이 損益計算書와 다소 다르다.

3. 貸借對照表는 企業會計의 貸借對照表와 同一하다.

제17조 (計定科目) 法人會計와 學校會計의 計定科目과 그내용은(별표1) 資金運用計算書, 計定科目明細表(별표2), 運營收支計算書計定科目明細表(별표3) 및 貸借對照表計定科目明細表와 같다.

條文解析>

財務諸表에 대한 計定科目明細表는 附錄에서 別途로 表記하기로 한다.

제18조(資金運用計算의 目的)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當該會計年度の 모든 활동에 대응한 모든 資金收入 및 資金支出의 내용과 當該會計年度에 있어서의 실제 資金收入 및 資金支出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資金運用計算을 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이 조항은 資金의 運用을 收入과 支出로 나누고 또한 豫算과 實際를 比較할 수 있도록 모든 資金收入과 支出을 나타낼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제19조 (資金運用計算의 方法) ① 資金運用計算은 資金收入의 부와 資金支出의 부로 區分하여 計定科目別로 計算하며, 資金收入과 資金支出은 總額으로 하고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資金收入의 計算은 當該年度에 실현될 資金收入과 當該會計年度에 귀속되어야 할 前期末 선수금 및 當該年度에 귀속되어야 할 期末未收金에 대하여 計算한다.
③ 資金支出의 計算은 當該會計年度에 實現된 資金支出과 當該年度에 귀속되어야 할 前期末 및 當該會計年度에 귀속되어야 할 期末未支給金에 대하여 豫算한다.

條文解析>

제19조에서는 資金運用計算의 方法을 규정하였는데 ②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資金收入은 當該會計年度間에 실현된 資金의 收入額과 當該會計年度에 귀속되어야 할 前年度에 收入이 이미 이루

어진 선수금(納入金등은 會計年度 개시전에 수납하게됨으로 이것은 수납하는 날이 속하는 會計年度の 收入이 아니라 다음년도에 귀속하는 收入이므로 그 해의 년도말일 時點으로 보아서는 선수금이다.) 및 當該 會計年度 末日 現在의 未收金 (당연히 현재회계년도에 收入되어야할 收入이 債權確定은 되었어도 실제로 現金 수입이 안된것)은 當 會計年度の 收入으로 計算하고 있다.

다음③항에서는 資金支出의 計算은 當該年度間에 실제로 支出된 資金은 물론이고 前期末 선금금(當該 會計年度에 支給되어야할 支出을 前年度 決算日 以前에 미리 支出한 金額이다.) 및 當該會計年度에 귀속되어야 할 未支給金(當該 會計年度 決算일 現在 支給하지 못한 債務額이다)에 대하여는 支出로 計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條項을 要約하면 資金의 收入額과 支出額의 期間計算을 실제로 資金이 收入되고 支出된 때를 基準으로 明瞭하게 表示한다는 규정이다.

제20조 (前期末 선수금등의 控除) ①제1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計算된 전기말 선수금및 期末未收金은 資金運用計算書의 收入의 부의 控除科目으로 記載한다.

② 제19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計算된 前期末 선금금과 期末未支給은 資金運用計算書의 지출의 부의 控除科目으로 記載한다.

條文解析>

本 條는 資金의 收入, 資金의 支出에 대한 資金運用計算書 作成上의 控除科目에 대하여 明瞭하게 규정하고 있다. 當該 會計年度에 있어서 學校 運營活動에 對應하여 收入資金額 中에서 이미 前年度 以前에 그 收入이 實現된 資金 즉, 前期末 선수금과

다음년도 以後에 실제수납이 이루어질 資金 즉, 당기말 未收金은 資金運用計算書의 收入의 部에서 控除科目으로 하여 計算한다.

그렇게 하면 資金運用計算書의 次年度 移越資金額과 貸借對照表의 現金, 預金殘額이 一致하게 된다.

제21조(資金運用計算書의 作成)

資金運用計算書는 別紙 第6號 書式에 의하여 作成한다.

條文解析>

다음 < 表 4-10 > 에서 收入의 부의 豫算額은 최종추가경정예산액을 가지고 決算額과 比較 增減하며 支出의 部 예산현액탄은 豫算額이 어떻게 變化되어 決算額과 比較 될 수 있는가를 나타냈으며 決算額은 當初 豫算額과 比較되는 것이 아니라 豫備費를 더 使用했거나 同一 管內의 항간, 목간에 豫算이 過不足이 있을경우 전용하였다면

이를 加減하여 최종추경예산액을 가지고 比較하도록 한다.

< 表 4-10 > 別紙 第6號 書式

자금운용계산서
() 회계

기관명:

(수입의 부)

			예산액	결산액	비 교		비 교
관	항	목			증	감	
당기자금수입합계							
자 금 수 입 조 종	전기말선수금공제			△			
	기말미수금 공제			△			
	전기이월운영자금						
합 계							

과 목			예 산 현 액				결산액	비 교		비 고
관	항	목	예산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감 (△) 액	차감액		증	감	
당기자금지출										
	전기말선급 금 공 제						△			
	기말미지급 금 공 제						△			
	차기이월운 영 자 금									
합 계										

제22조 (運營收支計算의 目的)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當該 會計年度의 運營收入 및 運營支出의 內容과 그수지균형의 狀態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運營收支 計算을 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本 條는 營利企業의 損益計算書의 作成目的과 유사하며 運營收支가 均衡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作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運營收支計算의 方法) ① 運營收入의 計算은 當該 會計年度의 運營收入을 計定科目別로 計算하고 그 收入의 總額에서 當該 會計年度中の 法人計定 對替額 및 各種積立金 計定對替額을 控除하여 計算한다.

② 運營支出의 計算은 當該 會計年度의 모든 運營支出을 計定科目別로 計算한다.

③ 運營收入과 運營支出의 差額は 運營收支計算書의 支出의 부의 當期運營收支差額란에 記載한다.

條文解析>

本條 ①항에서 運營收入의 計算方法을 明瞭하게 規定하였는데, 學校나 法人이 當該年度의 여러가지 活動에 對應하여 收入되는 收入金 中에서 銀行 기타 차입처로 부터 借入金과 같은 負債가 아닌 學生 납입금과 같은 收入으로 귀속되는 순수입금으로 계산할 수있는 수입금을 豫算 科目別로 計算하는데 그 歸屬收入金 總額에서 當該 會計年度 中에 基本金으로 대체할 金額과 各種 積立金의 積立額は 收入金額에서 미리 控除하라는 취지이다. 基本金의 대체전출액과 각종 積立金의 대체전출액을 收入額에서 외 控除하여야 하는가 하면 만일 支出의 部에서 대체전출하는 것으로

計算하여도 그 收入額에서 支出額을 減算하면 運營收支差額は 同一金額이 될 것이나 基本金은 대체액이나 各種積立金の 積立額は 當該年度の 費用이 아니므로 支出의 部에서 計算할 수 없는 것이고 各種 積立金은 다음 會計年度에 이르러 當初의 積立目的에 부합하는 事業을 執行할 때에는 그 積立金을 支出하여 그 積立金으로 부터 轉入을 하여 그 事業을 執行하기 때문이다.

②항에서 運營支出의 計算은 當該 會計年度の 모든 運營支出을 豫算의 科目別로 計算한다 라고 한것은 여기에서 모든 運營支出이라는 用語의 뜻만 완전히 이해하면 명료하게 이 計算書의 支出의 부의 計上할 支出의 金額이 무엇이며 그리고 計算書作成方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運營支出의 뜻은 損費支出로서 學校나 法人의 人件費, 管理運營費등 순수한 費用의 支出을 말하며 固定資産의 取得에 支出한 支出金額과 借入金의 元金償還額 (支給利子は 運營支出이다.)과 같은 企業會計에서 자본적 支出概念이 아닌 損費概念에 속하는 費用의 支出을 뜻한다.

제24조 (運營收支計算書의 作成)

運營收支計算書는 別紙 第7號 書式에 의하여 作成한다.

條文解析 >

運營收支計算書 作成에 따른 樣式은 < 表4-11 > 다음과 같다.

〈 表 4-11 〉 別紙 第7號 書式

運營收支計算書

() 회계 . . 부터

기관명: (수입의 부) . . 까지

과목			금액		
①관	②항	③목	④목	⑤항	⑥관
⑦당기운영수입합계					
자금수입 조정	⑧법인계정대채액공제				△
	⑨기본금계정대채액공제				△
	제적립금계정대채액공제				△
수입합계					

(지출의 부)

과 목			금 액		
①관	②항	③목	④목	⑤항	⑥관
⑦ 당 기 운 영 수 입 합 계					
⑧ 당 기 운 영 수 지 차 액					
⑨ 전 기 이 월 운 영 수 지 차 액					
차 기 이 월 운 영 수 지 차 액					

※ 운영지출이 운영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수지차액란에 △ 표시

제25조 (貸借對照表) ① 貸借對照表는 資産,負債,基本金,積立金 및 運營收支差額으로 區分하고,資産은 資金,流動資産,固定資産 및 投資資産으로, 負債는 流動負債와 固定負債로 하되, 資産과 負債의 分類기준은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會計慣習에 따른다.

② 資産,負債,基本金 및 積立金은 總額에 의하여 記載하여야 하며, 資産의 科目과 負債,基本金 또는 積立金の 科目을 上計하여 그 全部 또는 一部를 貸借對照表에서 除外하여서는 아니된다.

條文解析>

本 條에서는 貸借對照表에 記載할 計定과 計算은 總額主義로 하도록 規程하고 있다. 貸借對照表는 대변과 차변의 對照表라고도 하며, 일정시점에 있어서는 그 機關의 資産,負債,基本金,積立金,運營收支差額을 相互 對照하는 一覽表이다.

貸借對照表를 作成하는 方法은 在庫調査法和 誘導法이 있는데 在庫調査法은 資産,負債등을 實施조사하여 一覽表에 集計하여 作成하는 方法이고 誘導法은 帳簿의 各 計定殘額을 集計하여 作成한다. 企業에서나 學校機關등에서 行하고 있는 方法은 誘導法이다. 誘導法에서는 帳簿의 組織과 기장계산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리고 私學機關에서는 經常運營活動에 充當 支出할 수 있는 資金과 特別히 目的을 設定하여 조성하고 있는 資金을 區分하여 資金管理를 하도록 特例規則에서 規程하고 있는 趣旨에 따라 經常運營資金을 流動資金이라 하고 特定目的資金을 固定資金으로 分流하여 貸借對照表의 資産計定을 設定하였고, 이 資金計定을 다시 流動資金計定과 固定資金計定으로 區分表示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企業會計의 貸借對照表의 資産表示 方法과 다른점이다.

제26조 (資産의 評價)

- ① 資産의 評價는 取得價額에 의한다.
- ② 當該資産의 取得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所要되는 價額과 比較하여 顯著하게 低廉한 價額으로 取得한 資産 또는 贈與받은 資産의 評價는 제1항의 規程에도 불구하고 取得 또는 贈與받은 때의 當該資産의 時價로 評價하되 不動産의 時價는 地方稅法施行令의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으로 한다. 이 경우 課稅時價標準額이 없는 資産은 最近의 課稅時價 標準額을 基準으로 評價한다.

條文解析>

本 條는 ① 資産의 評價는 取得價額에 의한다 라고 規程하였다. 取得價額이라 함은 資産의 取得代金과 資産을 取得하기 위하여 支出된 代金以外에 부대비용 즉, 中繼料, 運搬費, 登記費用 등을 합한 金額이다. ②항에서의 規程은 時價보다 顯著하게 低廉한 價額으로 取得하였거나 寄贈받은 資産의 評價는 時價를 基準하여 評價하라는 것이다. 이때의 寄贈받은 資産은 別問題가 없으나 對價를 支給하고 取得한 資産이 時價보다 顯著하게 低廉하게 取得하였는가 아닌가의 測定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설사 客觀적인 資料에 의하여 低廉하다고 할지라도 當該資産의 會計處理을 하고 資産再評價를 實施할 때에 再評價 節次에 의하여 會計處理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7조 (資産의 再評價)

- ① 이사장과 學校의 長은 保有資産의 帳簿價額을 現實에 적
합하게 하기 위하여 資産의 再評價를 할 수 있다.
- ② 資産의 再評價 方法, 再評價差額等의 會計 處理 要領은 資
産評價法의 規程을 準用하되, 市街鑑定機關에 依賴하지 아니
하고, 不動産은 地方稅法施行令의 規程에 의한 課稅標準額에
의하여 評價하며, 不動産 以外の 固定資産은 去來實際價格과
內容年數 및 使用年數를 參酌하여 自體評價할 수 있다.

條文解析>

本 條에서는 ①항에서 法人의 保有資産이나 學校의 保有資産을 帳簿價額과 時價 사이에 差額이 있을때는 그 資産을 再評價하여 現實價額에 부합시켜서 保有資産 價額을 正確히 計算表示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 수 있다”라고 規程하였으나 法人과 學校에서 再評價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任意로 法人과 學校에 맡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화폐가치 변동폭이 큰 經濟環境에서는 財務諸表를 읽는 사람으로서는 표기된 資産價額의 推定이 매우 곤란할 것이나 가급적 保有資産을 現實價額에 適合하도록 再評價하여 保有하고 있는 教育資源과 運用實態를 正確하게 推定 判斷할 수 있는 資料를 提供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②항에서는 資産의 再評價方法, 時期, 再評價差額등의 會計處理 要領을 資産再評價法을 準用하도록 하고 있다. 評價額의 基準은 主觀적으로 設定하는 것이 아니라 鑑定機關에서 鑑定을 받으려면 여기에 所要支出되는 감정비용이 過多하게 支出되므로 이 費用을 절감하기 위하여 土地, 建物등 不動産은 政府에서 發表하고 있는 財産稅 課稅標準額을 基準하도록 하였고 不動産 以外の 普通資産은

市場의 去來實際價格과 使用經過年數를 算定하여 殘存價額을 計算 評價하도록 規程하였다.

제28조 (貸損償却)

이사장과 學校의 長은 回收不能한 것으로 推定되는 부실채 권이 있을 境遇에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貸損償却할 수 있다.

條文解析>

本 條는 不實債權이 있을때 이것의 貸損償却을 할 수 있는것을 規程하였다. 推定되는 不實債權을 대손상각을 하려면 理事會의 議決을 받도록 하고 있다. 理事會의 議決을 받으려면 回收不能을 判斷할 수 있는 客觀的인 證據가 있어야 할 것이다. 客觀的인 證據라 함은 파산선고라던가 하는것을 例示할 수 있다.

제29조 (有價證券의 評價)

① 貸借對照表 基準日 現在의 有價證券의 時價가 取得價額의 2분의1 以下로 된 때에는 時價로 評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規程에 의하여 有價證券을 時價로 評價한 때에는 당해 有價證券의 帳簿價額은 變更하지 아니하고, 取得價額과 評價額의 差額을 貸借對照表의 각주 사항으로 표시한다.

條文解析>

本 條는 有價證券의 評價로서 企業會計原則에 의하면 有價證券은 크게 市場性 있는 一時的 所有의 有價證券과 投資資產 項目인 投資有價證券, 關係會社有價證券 및 長期保有目的의 國債, 公債, 私債, 其他의 채권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有價證券의 評價는 買入 價額에 부대비용을 加算하고 이에 總平均法이나 移動平均法을 적

용하여 算定한 取得原價를 貸借對照表 價額으로 하도록 規程하고 있다.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投資目的 등으로 有價證券에 投資하는 境遇가 많지 않기 때문에 時價가 取得價額의 2분의1 以下로 된 때에는 時價로 評價는 하되, 帳簿價額은 바뀌지 아니하고 이를 각주사항으로만 나타내도록 하였다.

제30조 (減價償却)

法人會計와 學校會計에 屬하는 固定資産에 대하여는 減價償却을 하지 아니하고, 그 資産의 機能이 消滅되어 廢棄處分한 때에 資産의 帳簿價額을 基準으로 資産의 減少와 基本金の 減少로 會計處理한다.

條文解析>

本 條는 保有資産의 減價償却에 대하여 規程하였는데 學校會計에 屬하는 資産 즉, 學校에서 保有하고 있는 資産과 法人會計에 속하는 資産은 減價償却을 하지 않기로 規程하였다. 法人의 會計는 固有目的事業인 一般業務會計와 수익사업회계등 두개의 會計單位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一般業務會計에 屬하는 資産을 말하며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資産은 企業會計原則을 따르도록 하였으니 당연히 減價償却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減價償却을 하지않는 대신에 當該資産이 機能이 消滅되어 못쓰게 되어 이를 廢棄處分할 때에 當該 資産의 帳簿價額을 減少하고 其他基本金を 減少시키는 것이다.

제31조 (外産資産 및 外貨負債의 評價 등)

- ①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는 貸借對照表基準日 現在 韓國銀行이 고시한 환율로 評價할 수 있으며 그 評價額이 帳簿價額과 크게 다를 때에는 貸借對照表의 蘭外에 각주사항으로 記載한다.
- ② 外貨資産의 回收 또는 外貨負債의 償還時에 換率變動으로 發生하는 外換差額 또는 外換差損은 運營收支計算書에 當期의 外換差額 또는 外換借損으로 計上한다.

條文解析>

本 條는 法人이나 學校가 外貨資産이나 外貨負債가 있을 境遇의 評價하는 基準을 規程하였으며 償還差益 혹은 償還借損을 當期運營收支 計算書에 計上토록 하고 있다.

제32조 (貸借對照表의 作成)

貸借對照表는 別紙 第8號 書式에 의하여 作成한다.

條文解析>

貸借對照表 樣式은 < 表 4-12 > 別紙 第8號 아래와 같다.

< 表 4-12 > 別紙 第8號 書式

貸借對照表

() 회계

기관명:

과 목			기 말			전 기 말			비 고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증	(△) 감
<u>자산의 부</u>										
<u>자산합계</u>										
<u>부채의 부</u>										
<u>기본금의 부</u>										
<u>제적립금의부</u>										
<u>운영수지차액</u>										
<u>부채·기본금 합계</u>										

제32조 2 (基本金の 増加)

- ① 理事長과 學校의 長은 固定資産 또는 投資資産이 増加한 때에는 그 増加한 加算價額 相當額을 基本金の 増加로 計算한다.
- ② 제1항의 固定資産 또는 投資資産의 増加에 對應하는 財源이 借款이나 借入金 등 負債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負債 相當額은 基本金の 増加로 計算하지 아니하고 그 負債를 償還하는 때에 當該 負債償還額 相當額을 基本金の 増加로 計算한다.

條文解析>

本 條는 法人이나 學校가 特別히 事業計劃을 修行했거나 經營 運營過程에서 固定資産을 取得하거나 投資資産에 投資를 한때는 그 資産의 増加額 만큼 基本金の 増加로 計算하도록 規程하였다.

이때에 會計處理 方法은 “제23조 運營收支計算의 方法”에서 規程한 “基本金計定代替額”을 運營收支計算書의 運營收入 調整欄에서 運營收入控除하는 것과 對應되는 會計處理이다.

제32조 3 (基本金の 減少)

- ① 理事長과 學校의 長은 財政運營上の 必要에 의하여 固定資産 또는 投資資産을 賣却處分한 때에는 그 資産의 帳簿價額을 貸借對照表의 當該 資産計定과 基本金の 減少로 計算한다.
- ② 固定資産 中 使用機能의 低下로 廢棄處分하는 資産은 그 資産의 帳簿價額을 貸借對照表의 當該 資産計定과 基本金計定の 減少로 計算한다.

條文解析>

本條는 法人이나 學校가 保有中인 投資資産이나 固定資産을 處分하여 그 對價로 새로운 固定資産을 取得하거나 經常運營費에 充當 支出하거나 이를 莫論하고 投資資産이나 固定資産을 處分한 때의 基本金の 減少變動計算을 規程하였다. 이와같이 去來는 學校 會計에서는 극히 드문 去來이나 法人에 있어서는 土地, 建物の 賣渡處分 再投資등 去來가 많을 것이다. 이미 保有中인 土地, 建物を 買入한다고 할때도 賣渡處分할때의 會計處理는 各各 그 所定の 節次를 밟아서 帳簿의 記錄과 財務諸表에 計上하여야 한다.

제32조의 4 (各種積立金の 積立)

- ① 理事長과 學校의 長은 特定한 經營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認定하는 境遇에는 資金運用豫算書와 資金運用計算書의 支出의 部에 資金의 支出로 計上하고 特別事業積立金, 缺損保全積立金, 任意積立金 및 退職給與積立金 등 各種 積立金を 積立할 수 있다.
- ② 積立金은 그 相當額을 積立預金으로 預置管理 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本條는 法人이나 學校는 特別한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그 事業을 遂行하기 위한 資源을 造成하기 위하여, 또는 財政運營上 必要할때는 資金運用豫算書에 積立金の 積立支出로 計上하여 積立金を 積立할 수 있도록 規程하였다.

제32조의 5 (各種 積立金の 引出 및 使用)

- ① 各種 積立金は 該當積立金の 用度外에 이를 使用할 수 없다.
- ② 理事長과 學校의 長은 各種 積立金を 使用하고자 하는 때에는 資金運用豫算書, 資金運用計算書 및 運營收支計算書의 收入의 部에 當該 積立金の 引出額을 引出收入으로 計上하고, 積立金を 引出, 使用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本 條는 이미 積立되어 있는 各種 積立金を 引出 使用할 때는 資金運用豫算書, 資金運用計算書, 運營收支計算書의 收入의 部에 該當積立金の 引出收入으로 計上하여 積立金を 引出 使用하도록 規程하였는데 이와같이 規程한 것은 各種 積立金에 相應하는 積立預金은 固定資金이므로 法人이나 學校의 經常運營에 充當하는 流動資金의 흐름을 計算하는 資金運用計算書의 立場에서 보면 積立金を 積立할때에 運營收支計算書의 運營收入調整欄에서 積立金 만큼 運營收入控除를 하였으므로 그 積立金を 引出使用할 때는 運營收支計算書의 收入의 部에 “積立金 引出收入”으로 收入計算하여야 한다.

第4章 決 算

第33條 (決算의 內容)

① 결산의 내용은 재무제표 및 다음의 부속서류로 한다.

1. 현금 및 예금명세서 (별지 제9호 서식)
2. 유가증권명세서 (별지 제10호 서식)
3. 미수금조서 (별지 제4호 서식)
4. 고정자산명세서 (별지 제11호 서식)
5. 투자자산명세서 (별지 제12호 서식)
6. 차입금명세서 (별지 제13호 서식)
7. 미지급금조서 (별지 제 4호 서식)
8.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14호 서식)
9. 적립금명세서 (별지 제14호 서식)
10. 예비비사용액조서 (별지 제15호 서식)
11. 이사회회의록의 사본
12. 감사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10. 연결재무제표 (별지 제15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② 제①항의 제1호의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는 현금금고검사서와
예금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條文解析>

위 條文에서 提示된 각 明細書를 < 表 4-13 ~ 20 >를 차례로 表示하고 각 明細書의 記錄事項을 整理하기로 한다.

1. 現金 및 預金明細書

< (表 4-13) 別紙 第9號 書式 >

現金 및 預金明細書

기관명:

. . . 현재

자금의종류	(구분) (현금 또는 예금)	예치기관	예금종류	(예치) 금액	만기일자	이자율	비 고
유 동 자 금							
	(계)						
고 정 자 금							
	(계)						
합 계							

이 明細書는 現金 및 諸預金を 區分하고 預置機關, 預金種類, 金額預置日字, 滿期日字, 利子率을 記入하여야 하며 이 明細書에는 반드시 現金金庫檢査書와 預金殘高證明書を 添附하여야 한다.

2. 有價證券明細書

〈 (表 4-14) 別紙 第10號 書式 〉

有價證券明細書

기관명:

. . . 현재

발행기관	유가증권명	액면금액	매 수	금 액	비 고
합 계					

이 명세서에는 유가증권명에 유가증권의 종류인 주식, 공사채, 국채, 지방채와 기타의 유가증권명을 기입하고 배수나 금액은 장부가액을 기록하여 비교란에는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1 이하인 경등을 표시한다.

3. 미수금조서

< 표 4-15 별지 제4호 서식 >

미수금조서

기관명:

() 회계

과 목			금 액	내 용
관	항	목		
합 계				

이 明細書는 當該年度에 收入으로 計上하였으나 收益이 되지 않은 未收金을 記入한다.

4. 고정자산명세서

〈 表 4-16 別紙 第 11號 書式 〉

固定資産明細書

기관명:

구	분	전기이월액			기말잔액	적 요
			증가액	감소액		
무자 형고 정산	·권 ·권 ·권 ·권					
합	계					
유 형 고 정 자 산	토건구 교육용기 사무용기 교육용비품 사무용비품 차 도유건 설 지물물 계기구 계기구 품및기 품및집 탕서 물 정					
합	계					

이 明細書는 無形,有形固定資産의 前期移越額에서 當期에 發生한 無形 및 有形固定資産의 取得 및 處分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増減額을 金額으로 表示하여 期末에 殘額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備考欄에는 取得 및 處分內容을 表示하면 된다.

5.投資資産 明細書

< 表 4-17 別紙 第12號 書式 >

投資資産明細書

기관명: . . . 현재

투자구분	전기이월액			기말잔액	증감내역
		증가액	감소액		
합 계					

投資資産明細書の 投資資産에는 學校의 有價證券,長期貸與金,出資金 등이 있으며, 法人會計는 設置學校,附屬病院 等の 計定이 있으며 學校나 法人의 投資資産의 増減事項을 記入한다.

6. 借入金明細書

＜ 表 4-18 別紙 第13號 書式 ＞

借入金明細書

기관명: . . . 현재

허가 근거	차입처	차입내역		전 기 이월액	당기 증감액		기말 잔액	지 이 자 금 물	상환 기한	상환 회계	비 고
		년월일	금 액		증가액	감소액					
합계											

이 明細書는 借入金의 內譯과 前期移越額이 있을 경우 當期에 發生하는 借入金의 상환하는 金額이나 새로이 借入하는 借入金의 內譯을 表示하며 備考欄에는 長期借入金과 短期借入金の 區分表示를 하면된다.

7. 未支給金調書

< 表 4-19 別紙 第4號 書式 >

未支給金 調書

기관명: () 회계 . . . 현재

과 목			금 액	내 용
관	항	목		
합 계				

이 明細書는 當該年度에 支出로 計上하였으나 실제로 支出되지 않은 事項으로 期末에 未支給金으로 表示하면 된다.

8. 基本金明細書

9. 積立金明細書

< 表 4-20 別紙 第14號 書式 >

☐ 積立金 ☐ 基本金 ☐ 明細書

기관명:

. . . 현재

구 분	전기이월액	당기증감액		기말잔액	비 고
		증가액	감소액		
합 계					
당기증가액내역					
당기감소액내역					

基本金明細書와 積立金明細書는 같은양식으로서 學校會計나 法人會計에서 基本財産의 増減이 있을 시에는 基本金明細書의 増減內譯을 記入하고 増減額을 表示하여 期末殘額을 나타내면 된다. 그리고 積立金明細書는 法人이나 學校가 特別한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그社業의 遂行을 하기위해 發生하는 積立金の 増減을 表示하고 増減內譯을 記入한다.

10. 設備費使用額調査

〈表 4-21 別紙 第 15 號 書式〉

豫備費使用額調査

기관명 () 회계 . . . 부터 . . . 까지

과 목			내 용	예 비 비 사용결정액	예 지 비 출 비 액	비 고
관	항	목				
합 계						

豫備費란 豫測할 수 없는 經費의 支出에 充當하기 위한 豫算上의 留保財源으로서 이는 固定豫算制度에서 필요한 것이다. 學校法人의 豫算編成 및 統制가 固定豫算制度를 前提로 움직이는 관계로 項間, 目間 轉用에 대한 例外로 豫備費 科目을 通하여 超過支出과 예기치 않은 支出에 對備해 豫備費를 使用하도록 하고 있다.

11. 理事會會議錄寫本

各 學校法人의 理事會 會議內容을 記錄한 會議를 添附하면된
다.

12.監査報告書

〈 表 4-22 別紙 第16號 書式 〉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0000 이사장 귀하

우리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0000(00대학교)의 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자금운용계산서, 운영수지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0000(00대학교)의
년 월 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경영성과 및 자금운용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학교법인

감사 인

감사 인

피감사자(임회인)

직명 인

성명 인

私立學校法 第21條 第5項의 規程에 의하여 監査중 1인을 公認會計士의 資格을 가진자 중에서 選任하여야 할 學校法人은 學生의 卒業定員이 500명 이상이 되는 大學, 師範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設置, 經營하는 學校法人으로 하도록 1981년 5월 21일 公表된 私立學校法 施行令 改定令中 新設된 第9條의 2에 規程되어 있다.

13. 연결재무제표

〈 表 4-23 別紙 第17號 書式 〉

① 연결자금운용계산서

XX년도 연결자금운용계산서

수입의부

학교법인

. . .부터
. . .까지

과 목			법인일반 업무회계	학교 회계	회계	내부거래 제		연결자금운용계산
관	항	목				차변	대변	
당기자금수입합계								
자금수입조정	전기말선수 금	수제	△	△	△			△
	기말미수 금	공제	△	△	△			△
	전기이월 자	운금						
합 계								

수입의부

과 목			법인일반 업무회계	학교 회계	회계	내부거래 제		연결자금운용계산
관	항	목				차변	대변	
당기자금수입합계								
자금수입조정	전기말선 금	급제	△	△	△			△
	기말미지 금	공제	△	△	△			△
	차기이월 자	운금						
합 계								

< 表 4-24 別紙 第17號 書式 >

② 연결운영수지계산서

XX 년도 연결운영수지계산서

수입의부

학교법인

. . .부터
. . .까지

과 목			법인일반 업무회계	학교 회계	회계	내부거래 제거		연결운영수지계산
관	항	목				차변	대변	
당기자금수입합계								
자금 수입조정	법 인 계 정 대체액공제		△	△	△			△
	기 본 금 계 정 대체액공제		△	△	△			△
	제 적 립 금 계 정 대체액공제		△	△	△			△
수 입 합 계								

지출의 부

과 목			법인일반 업무회계	학교 회계	회계	내부거래 제거		연결운용수지계산
관	항	목				차변	대변	
당기운영지출합계								
당기운영수지차액								
전기이월운영수지 차액								
차기이월운영수지 차액								

③聯結貸借對照表

자산의부

• .. 현재

과 목			법인일반회계	학교회계	회계	내부거래제거		연결대차대조표
관	항	목				차변	대변	
자 산 합 계								

과 목			법인일반회계	학교회계	회계	내부거래제거		연결대차대조표
관	항	목				차번	대번	
부채.기본금 합계								

-169-

第34條 (決算書의 作成提出)

- ① 理事長과 學校의 長은 每會計年度 終了 後 50日 以內的
決算報告書를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② 理事會는 每會計年度 終了 後 2月 以內에 第1項의 規程에
의한 決算을 審議 하여야 한다.
- ③ 削除
- ④ 理事長은 法人會計와 學校會計의 決算報告書를 綜合한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여 會計別 決算報告書를 添附하여
每會計年度 終了後 3月 以內에 教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
야 한다.

條文解析>

本條項은 決算書를 作成하여 審議,提出 期限을 定하고 理事會에 提出할 期間을 明示하였으며 第4項의 學校會計와 法人會計의 決算書를 聯結하여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고 學校會計와 法人會計의 決算報告書를 添附하여 教育部에 提出하는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法人會計中 收益事業會計決算의 法人稅 申告는 法人稅法에 規程한 기일 內에 申告를 하여야 한다.

附 則 (1981.2.28 문교부령 제489호)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의 법인과 학교의 1980회계년도의 결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 則 (1987.2.6 문교부령 제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II. 私立大學校의 計定科目解説

1. 資金運用計算書 計定科目明細書

수입의 부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100 납입금	5110 납입금		X	0		
			X	0		
		5111 입학금	X	0		신입학생(편입학생 포함)으로 부터 받은 입학금
		5112 수업료	X	0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5113 기성회비	X	0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5200 수수료	5210 입시수수료		X	0		
			X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300 전입금 및 기부.원조	5220 기타수수료	5211 입학원서내	x	0		입학원서 판매내금
		5212 수험료	x	0		입시지원자로부터 받은 수험료
			x	0		
		5221 증명료	x	0		제증명을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
		5222 사용료	x	0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강당, 체육 장 등 교육용 기본재산 이용료는 5411)
			0	0		
	5310 전입금		0	0		
		5311 학교운영비 전입금	X	0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경상운영비 보 조금으로 전입하는 전입금
		5312 연금부담금 전입금	X	0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거 법인으로 부터 학교의 교직원에게 내한 각종 급여 의 부담금으로 전입하는 전입금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400 기본재산 수입		5313 의료보험부 담금전입금	X	0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법에 의거 법인으로 부터 학교의 교직 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입하는 전입 금
		5314 부속병원 전입금	X	0		학교부속병원으로부터 학교또는 법인 으로 전입하는 전입금
		5315 지정시설비 전입금	X	0		법인이 특정한 시설(건물, 토지, 구축물 등)의 취득내금으로 지정한 전입금
		5316 수익사업 전입금	0	X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전입하는 전입금
		5317 수탁회계 전입금	0	0		법인 및 학교의 경상회계 외 의 수탁 운영회계로 부터 전입하는 전입금
	5320 기부금					
		5321 특정기부금	0	0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 부금
		5322 일반기부금	0	0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5330 국고보조금					
		5331 국고보조금	0	0		정부로 부터 받는 보조금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500 사업수입	5410 교육용 기본재산		X	0		
		5411 이용료	X	0		강당.교실.기계.기구등 학교시설물을 사용할때 받는 이용료
		5412 실습수입	X	0		실험.실습 등의 활동으로 생기는 산출물의 판매내금
	5420 수익용 기본재산		0	X		
		5421 토지임내료	0	X		수익용 토지를 임내하고 받는 임내료
		5422 건물임내료	0	X		수익용 건물을 임내하고 받는 임내료
		5423 투자수입	0	X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채권,예금 등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받은 이자,배당금 등
		5424 임.농수산물 판매내	0	X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농장 등으로부터 생산된 임.농수산물의 판매내금
		5425 기타수입	0	X		기타수익용 기본재산 수입
			0	0		
	5510 사업수입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600 기타교육 수입	6510 기타교육 수입	5511 수탁사업 수입	0	0		외부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수입
		5611 기타교육 수입	X	0		
5700 기타수입	5710 기타수입		X	0		학생교육 이외의 단기교육 수강료와 학생 논문지도 및 심사료 등의 수입
			0	0		
			0	0		
		5711 불용품 매각대	0	0		
		5712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0	0		
		5713 예금이자 수입	0	0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수익용 기본재산 예금이자 수입은 542 3)
		5714 보험금 수입	0	0		
		5717 잡수입	0	0		
						위 계정 이외의 기타수입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300 유동자산 수입			0	0	0	
	1310 일시내어금 회수		0	0	0	
		1311 일시내어금 회수	0	0	0	당해 회계년도 내에 상환할 조건으로 교직원이나 타회계에 일시 내어한 내 어금을 회수한 금액
	1320 선급금회수		0	0	0	
		1321 선급금회수	0	0	0	용역이나 물품구입 등의 내금을 선지 급하였다가 회수한 금액
	1330 가지급금 회수		0	0	0	
		1331 가지급금 회수	0	0	0	가지급금을 회수한 금액
	1340 공탁금 및 예탁금회수		0	0	0	
		1341 공탁금 및 예탁금회수	0	0	0	공탁금 및 예탁금을 회수한 금액
	1350 미수금수입		0	0	0	
		1351 미수금수입	0	0	0	미수금 수입
	1360 기타유동자 산 회수		0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400 투자자산 수입		1361 기타유동자 산회수	0	0	0	기타 유동자산 수입
			0	0		
		1410 유가증권 매각내	0	0		
		1411 유가증권 매각내	0	0		채권 등 유가증권 매각내금
		1420 장기내어금 회수	0	X		
		1421 장기내어금 회수	0	X		장기내어금을 회수한 금액
		1430 출자금 및 투자금회수	0	X		
		1431 출자금 및 투자금회수	0	X		수익사업계정의 출자금 또는 투자금을 회수한 금액
		1440 임차보증금 회수	0	0		
		1441 임차보증금 회수	0	0		토지.건물.기계.기구 및 무형자산등을 임차할 때 지출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금액
1500 유형고정자 산매각수입			0	X		
		1510 토지매각내	0	X		
		1511 토지매각내	0	X		토지매각내금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600 무형고정자산 내각수입	1520 건물내각내		0	X		건물내각내금
		1521 건물내각내	0	X		
	1530 구축물 내각내		0	X		
		1531 구축물 내각내	0	X		
	1610 무형고정자 산 내각내		0	0		전화가입권, 특허권, 광업권 등과 같은 권 등과 같은 권리자산의 내각내금
		1611 무형고정자 산 내각내	0	0		
	2100 유동부채입 금		0	0	0	
	2110 일시차입금		0	0	0	
		2111 일시차입금	0	0	0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할 차 입금
	2120 예수금		0	0	0	
		2121 예수금	0	0	0	교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같은 제세공과금 등 수입으로 계상할 없는 제예수금
	2130 선수금		0	0	0	
		2131 선수금	0	0	0	신입학생(편입학생 포함)으로부터 비 리 수납한 나옴의 학년도의 수입에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2200 고정부채 입금	2140 가수금					속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선수금 수입 을 당해 과목으로 내계 처리할 경우 본과목으로 차변에 기입 함)
		2141 가수금	0	0	0	
	2210 장기차입금		0	0	0	수입액과 해당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아 니한 수입
		2211 장기차입금	0	0		
			0	0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2220 차관		0	0		
		2221 교육차관	0	0		교육목적용 위한 차관수입
		2222 기타차관	0	X		교육목적 이외의 차관수입
	2230 임대보증금		0	0		
		2231 임대보증금	0	0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및 무형자산 등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
3300 적립예금 인출	3320 특별사업 적립예금 인출		0	0		
		3321 특별사업 적립예금 인출	0	0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을 위하여 적립 한 고정자금을 유동자금으로 인출한 인출한 금액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3330 결손보전 적립급여금 인출		0	0		
		3331 결손보전 적립급여금 인출	0	0		장리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 한 고정자금을 유동자금으로 인출한 금액
	3340 임의 적립예금 인출		0	0		
		3341 임의 적립예금 인출	0	0		특정 목적없이 자금운영의 내실을 기 하기 위하여 적립한 고정자금을 유동 자금으로 인출한 금액
	3350 퇴직급여 적립예금 인출		0	0		
		3351 퇴직급여 적립예금 인출	0	0		퇴직금지급여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고정자금을 유동자금으로 인출한 금액

지출의 부

4100						
인건비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110 봉급		0	0		
		4111 교원봉급	X	0		교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4112 사무직원 봉급	0	0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4113 임시직원 급료	0	0		임시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료
	4120 정액수당		0	0		
		4121 교원수당	X	0		교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각종 직무수당
		4122 사무직원 수당	0	0		사무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각종 직무수당
		4123 임시직원 수당	0	0		임시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각종 직무수당
	4130 상여수당		0	0		
		4131 교원 상여수당	X	0		교원에게 지급하는 상여수당
		4132 사무직원 상여수당	0	0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수당
		4133 임시직원 상여수당	0	0		임시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수당
	4140 정근수당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교원 정근수당 4142	X	0		교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사무직원 정근수당 4143	0	0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임시직원 정근수당	0	0		임시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4150 기타수당		0	0		
		4151 교원 기타수당	X	0		교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 상여수당 .정근수당 외의 각종수당
		4152 사무직원 기타수당	0	0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 상여 수당. 정근수당 외의 각종 수당
		4153 임시직원 기타수당	0	0		임시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 상여 수당. 정근수당 외의 각종 수당
	4160 강사로		X	0		
		4161 초과 강사로	X	0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초과강의에 내하 여 지급하는 강사로
		4162 시간 강사로	X	0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로
		4163 특별 강사로	0	0		정규교육과정 외의 특별강의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로
	4170 노임		0	0		
		4171 노임	0	0		일용인부에 내한 노임
	4180 지정인건비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비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200 관리운영비		4181 연금부담금	0	0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교직원의 각종 급여의 부담금
		4182 의료보험 부담금	0	0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교직원의 의료보험 부담금
		4183 퇴직금	0	0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4210 여비		0	0		
			0	0		
		4211 국내여비	0	0		교직원의 국내출장 여비
	4220 수용비	4212 국외여비	0	0		교직원의 국외출장 여비
		4212 교통비	0	0		교직원의 근무지 내 출장시의 교통비
			0	0		
		4221 용품비	0	0		일반소모품 등 용품의 구입비와 각종 유인물의 인쇄비
		4222 수수료	0	0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계증명 등의 발급신청에 소요되는 수수료
		4223 연료비	0	0		난방 등에 사용되는 연료 구입비
		4224 차량비	0	0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세금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4225 공공요금	0	0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226 임차료	0	0		토지, 건물, 시설물의 임차료(실습기구 등의 리스로 포함)
		4227 보험료	0	0		건물, 시설물, 동산 등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하는 보험료
		4228 용역비	0	0		연구, 감사, 감정, 청소, 등 각종 용역비
	4230 피복. 급탕비		0	0		
		4231 피복비	0	0		교직원에게 지급 또는 내어하는 상시 착용 피복 및 개인장구 등 구입비
		4232 급탕비	0	0		교직원 및 학생에게 급여하는 급탕비
	4240 제세. 공과금		0	0		
		4241 세금	0	0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 및 공과금
		4242 협회비	0	0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협회비
	4250 판공비					
		4251 기관판공비	0	0		직책수행에 필요하며 법인 및 학교의 보직자에게 정액으로 지출하는 판공비
		4252 특별판공비	0	0		특별한 사유로 지출하는 판공비
	4260 시설유지비					
		4261 건물유지비	0	0		건물보수 등의 유지관리비
		4262 장비유지비	0	0		공구.비품.기계.기구류의 수선.수리비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300 학생경비	4270 교육훈련비	4263 조경및 기 타 시설유 지비	0	0		조경,운동장 및 구축물 등 기타 시설 물의 유지.보수비
		4271 교육훈련비	0	0		교직원의 교육훈련에 지출하는 제잡비
		4280 행사비	0	0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등의 행사 에 지출하는 제잡비
		4281 행사비	0	0		각종회의 개최시에 지출하는 제잡비
		4282 회의비	0	0		박물관운영 및 유물관리에 지출하는 제잡비
		4290 박물관 관리비	X	0		학생실험실습교육에 지출하는 제잡비
		4310 실험실습비	X	0		학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4311 실험실습비	X	0		법령에 의한 납입금 감면액 (이 경우 내년에 납입금 총액을 계상 계상하고 차년에 감면액을 계상한다)
		4320 학생복지비	0	0		학생의 보전계면에 지출하는 제잡비
		4321 장학금	0	0		
		4322 학비감면	X	0		
		4323 보전계면비	X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400 입시관리비		4323 신문.방송 비	X	0		교내 신문발행, 방송 등에 지출하는 제잡비
		4325 학생지도비	X	0		학생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지급 하는 지도비 등 제잡비
		4326 기타경비	X	0		기타 학생복기를 위하여 지출하는 제 잡비
			X	0		
		4410 인건비 수당	X	0		
		4411 입시경비	X	0		입학시험 관리담당 교직원에게 지급하 는 수당
4500 연구비		4420 입시경비	X	0		
		4421 입시경비	X	0		입학시험에 소요되는 용품비, 수수료, 인쇄비, 광고료, 임차료, 급탕비 등의 제잡비
			X	0		
		4510 연구비	X	0		
4600 기타경비		4511 연구비	X	0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교수연구용 도서비 및 연구결과보고서의 출판비 등 연구목적에 지출하는 제잡비
			0	0		
		4610 지급이자	0	0		
		4611 지급이자	0	0		차입금의 이자지급액
		4640 선교비	0	0		
		4641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700 전출금	4710 전출금	선교비	0	0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학교의 선교 활동비
			0	X		
			0	X		
		4711 학교운영비 전출금	0	X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상운영비 보조를 위한 전출금
		4712 연금부담금 전출금	0	X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거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급여의 부담금 전출금
		4713 의료보험부 담금전출금	0	X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에 의거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전출금
		4714 지정시설비 전출금	0	X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특정한 시설(건물,토지,구축물,기계설비 등)의 취득내금으로 지정한 전출금
4800 예비비	4810 예비비	4715 부속병원 전출금	0	X		법인이 학교부속병원의 경상운영비 보조를 위한 전출금
			0	0		
			0	0		
1300 유동자산 지출	1310 일시내어금	4811 예비비	0	0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 유보재원(예비비 사용시는 예비비의 예산을 감하여 당해 과목에 증액함)
			0	0	0	
		1311 일시내어금	0	0	0	당해 회계년도 내에 상환할 조건으로 조건으로 교직원이나 타회계에 일시내어한 금액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400 투자자산 지출	1320 선급금		0	0	0	
		1321 선급금	0	0	0	용역, 물품의 구입시 약정에 의하여 그 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는 금액
	1330 가지급금		0	0	0	
		1331 가지급금	0	0	0	용역, 물품의 구입시 그 내금이나 계정 관목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하는 금액
	1340 공탁금 및 예탁금		0	0	0	
		1341 공탁금 및 예탁금	0	0	0	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공탁하는 금액 또는 약정에 의하여 금전을 예탁하는 금액
	1360 기타 유동자산 지출		0	0	0	
		1361 기타 유동자산 지출	0	0	0	기타 유동자산 지출
	1410 유가증권 매입내		0	0		
		1411 유가증권 매입내	0	0		채권등의 유가증권 매입내금
	1420 장기 대여금		0	X		
		1421 장기 대여금	0	X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500 유형고정 자산 내입지출	1430 출자금및 투자금		0	X		수익을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하는 금액
		1431 출자금및 투자금	0	X		
	1440 임차 보증금		0	0		
		1441 임차보증금	0	0		토지.건물.기계.기구 및 무형자산 등 의 임차사용시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하 는 금액
	1460 부속병원 투자		0	X		부속병원의 기본금(출자금)으로 투자 하는 금액
		1461 부속병원 투자	0	X		
			0	0		
	1510 토지내입비		0	0		교육용 토지를 내입할 때 지출하는 내 금과 부내비용
		1511 교육용토지 내입비	0	0		
		1512 수익성토지 내입비	0	X		수익용 토지를 내입할 때 지출하는 내 금과 그 부내비용
	1520 건물내입비		0	0		교육용 건물을 내입할 때 지출하는 내 금과 그 부내비용
		1521 교육용건물 내입비	0	0		
		1522 수익용건물 내입비				수익용 건물을 내입할 때 지출하는 내 금과 그 부내비용
	1540 기계.기구 내입비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541 교육용기계 기구 내입비	0	0		학생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내입내금과 그 부내비용
		1532 사무용 기계.기구 내입비	0	0		사무용 기계.기구의 내입내금과 그 부 내비용
	1550 비품 및 집 기 내입기		0	0		
		1551 교육용 비품및집기 내입비	0	0		학생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비품 및 집 기등 구입내금과 그 부내비용
		1552 사무용 비품및 집 기 내입비	0	0		사무용비품 및 집기 등의 구입내금과 그 부내비용
	1560 차량 내입비		0	0		
		1561 차량내입비	0	0		차량구입비와 그 부내비용
	1570 도서구입비		0	0		
		1571 도서구입비	0	0		도서구입비(월간도서 및 신문잡지류는 4221. 나만, 도서관의 보관용은 본 과목으로 처리)
	1580 박물관유물 구입비		X	0		
		1581 박물관유물 구입비	X	0		박물관에 보존할 유물의 구입내금과 그 부내비용
	1590 건설가계정		0	0		
		1591 건설가계정	0	0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건축설계시 설 계, 건축허가, 시공에 지출하는 제잡 비(공사가 준공되면 해당계정으로 내체)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600 무형고정자산취득지출			0	0		
	1610 무형고정자산취득비		0	0		
		1611 무형고정자산취득비	0	0		전화가입권, 특허권, 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자산 취득내금
2100 유동부채상환			0	0		
	2110 일시차입금상환		0	0		
		2111 일시차입금상환	0	0		일시차입금의 상환원금
	2120 예수금지출		0	0		
		2121 예수금지출	0	0		교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근로 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제세공과금의 납부액
	2130 선수금환급		0	0		
		2131 선수금환급	0	0		선수금을 본계정으로내체하거나 환급 하는 금액
	2140 가수금환급		0	0		
		2141 가수금환급	0	0		가수금을 환급할 때의 환급액(가수액 을 당해계정과목으로 내체할 경우에는 가수금 수입과목의 차변에 기입)
	2150 미지급금지출		0	0		
		2151 미지급금지출	0	0		미지급금의 지급액
2200 고정부채상환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3300 적립예금 지출	2210 장기차입금 상환		0	0		
		2211 장기차입금 상환	0	0		장기차입금의 상환원금
	2220 차관상환		0	0		
		2221 교육차관 상환	0	0		교육차관의 상환원금
		2222 기타차관 상환	0	X		교육차관의 이외의 차관의 상환 원금
	2230 임내보증금 환급		0	0		
		2231 임내보증금 환급	0	0		임내기간의 종로로 환급하는 보증금
			0	0		
	3320 특별사업적 립예금지출		0	0		
		3331 특별사업적 립예금	0	0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을 위하여 고정 자금으로 적립하는 별도 예금액
	3330 결손보전적 립예금지출		0	0		
		3331 결손보전적 립예금지출	0	0		장래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 정자금으로 적립하는 별도 예금액
	3340 임의적립 예금지출		0	0		
		3341 임의적립 예금지출	0	0		특정목적없이 자금운영의 내실을 기하 기 위하여 고정자금으로 적립하는 별 도 예금액

2. 運營收支計算書 計定科目 明細書

수입의부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100 납입금	5110 납입금		X	0		* 해설이 없는 과목은 < 포 4-32> 해당과목 참조
			X	0		
		5111 입학금	X	0		
		5112 수업료	X	0		
		5113 기성회비	X	0		
5200 수수료	5210 입시수수료		X	0		
			X	0		
		5211 입학원서내	X	0		
		5212 수험료	X	0		
	5220 기타수수료		X	0		
		5221 증명료	X	0		
		5222 사용료	X	0		
5300 전입금 및 기부. 원조금	5310 전입금		0	0		
			0	0		
		5311 학교운영비 전입금	X	0		
		5312 연금부담금 전입금	X	0		
		5313 의료보험부 담전입금	X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400 기본재산 수입	5320 기부금	5314 부속병원 전입금	0	0		현물기부시 그 물품의 평가액을 수입 으로 계상한 금액
		5315 지정시설비 전입금	X	0		
		5316 수익사업 전입금	0	X		
		5317 수탁회계 전입금	0	0		
		5321 특정기부금	0	0		
		5322 일반기부금	0	0		
		5323 현물기부금	0	0		
	5330 국고보조금	5331 국고보조금	0	0		
			0	0		
	5410 교육용 기본재산		0	0		
		5411 이용료	X	0		
		5412 실습수업	X	0		
	5420 수익용 기본재산	5421 토지임내료	0	X		
		5422 건물임내료	0	X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500 사업수입	5510 사업수입	5424 임.농수산 물판매내	0	X		
		5425 기타수입	0	X		
			0	0		
		5511 수탁사업수 입	0	0		
5600 기타교육 수입	5610 기타교육 수입		0	X		
			X	0		
		5611 기타교육 입	X	0		
5700 기타수입	5710 기타수입		0	0		
			0	0		
		5711 불용품 매각내	0	0		
		5712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0	0		
		5713 예금이자 수입	0	0		
		5714 보험금 수입	0	0		
		5715 고정자산 매각손익	0	0		고정자산매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5716 유가증권	0	0		유가증권매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3100 기본금내채 환입	5720 환차액	내각손익 5717 잡수입	0	0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환차이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을 매각하였을때 그 장부가액을 운영하는 수입으로 환입하는 금액
		5721 환차액	0 0	0 0		
	3110 설립자 기본금 내채환입		0	0		
		3111 설립자 기본금 내채환입	0	0		
	3120 기타기본금 내채환입		0	0		
		3121 기타기본금 내채환입	0	0		
3300 적립예금 인출수입	3320 특별사업 적립예금 인출		0	0		
		3321 특별사업 적립예금 인출	0	0		
	3330 결손보전 적립예금 인출		0	0		
		3331 결손보전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3340 임의적립 예금인출	적립예금 인출	0	0		
		3341 임의적립 예금인출	0	0		
	3350 퇴직급여 적립예금 인출		0	0		
		3351 퇴직급여 적립예금 인출	0	0		

지출의 부

4100 인건비	4110 봉급		0	0		
		4111 교원봉급	0	0		
		4112 사무직원 봉급	X	0		
		4113 임시직원 급료	0	0		
	4120 정액수당		0	0		
		4121 교원수당	0	0		
		4122 사무직원 수당	X	0		
		4123 임시직원 수당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130 상여수당		0	0		
		4131 교원상여 수당	X	0		
		4131 사무직원 상여수당	0	0		
		4133 임시직원 상여수당	0	0		
	4140 정근수당		0	0		
		4141 교원정근 수당	X	0		
		4142 사무직원 정근수당	0	0		
		4143 임시직원 정근수당	0	0		
	4150 기타수당		0	0		
		4151 교원지타수	X	0		
		4152 사무직원 기타수당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200 관리운영비	4160 강사료	4153 임시직원 기타수당	0	0		
			X	0		
		4161 초과강사료	X	0		
		4162 시간강사료	X	0		
	4170 노임	4163 특별강사료	0	0		
			0	0		
		4171 노임	0	0		
	4180 지정인건비		0	0		
		4181 연금부담금	0	0		
		4182 의료보험 부담금	0	0		
		4183 퇴직금	0	0		
			0	0		
	4210 여비		0	0		
		4211 국내여비	0	0		
		4212 국외여비	0	0		
		4213 교통비	0	0		
			0	0		
	4220 수용비		0	0		
		4221 용품비	0	0		
		4222 수수료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223 연료비	0	0		
		4224 차량비	0	0		
		4225 공공요금	0	0		
		4226 임차료	0	0		
		4227 보험료	0	0		
		4228 용역비	0	0		
	4230 피복급탕비		0	0		
		4231 피복비	0	0		
		4232 급탕비	0	0		
	4240 제세공과금		0	0		
		4241 세금	0	0		
		4242 협회비	0	0		
	4250 판공비		0	0		
		4251 기관판공비	0	0		
		4252 특별판공비	0	0		
	4260 시설유지비		0	0		
		4261 건물유지비	0	0		
		4262 장비유지비	0	0		
		4263 조경및기타 시설유지비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300 학생경비	4270 교육훈련비		0	0		
		4271 교육훈련비	0	0		
	4280 행사비		0	0		
		4271 행사비	0	0		
		4282 회의비	0	0		
	4290 박물관 관리비		X	0		
		4291 박물관 관리비	X	0		
	4310 실험실습비		0	0		
		4311 실험실습비	X	0		
	4320 학생복지비		0	0		
	4321 장학금		0	0		
	4322 학비감면		X	0		
	4323 보건체련비		X	0		
	4324 신문방송비		X	0		
	4325 학생지도비		X	0		
4400 입시관리비	4326 기타경비		X	0		
			X	0		
	4410 인건비		X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500 연구비	4420 입시경비	4411 입시수당	X	0		
		4421 입시경비	X	0		
	4510 연구비			X	0	
		4511 연구비	X	0		
4600 기타경비			0	0		
	4610 지급이자		0	0		
		4611 지급이자	0	0		
	4620 내손금		0	0		
		4621 내손금	0	0		
	4630 환차손		0	0		
		4631 환차손	0	0		
	4640 선교비		0	0		
4641 선교비		0	0			

3. 貸借對照表 計定科目明細書

자산의부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100 유동자금	1110 현금		0	0		※해설이 없는과목은 <표 4-32> 해당과목 참조 경상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자금 통화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표및 우편환 등 1121 내지 1124목의 예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예금의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 하는 유동자금
		1111 현금	0	0		
			0	0		
	1120 예금		0	0		
		1121 당좌예금	0	0		
		1122 보통예금	0	0		
		1123 정기예금	0	0		
		1124 정기적금	0	0		
		1125 기타예금	0	0		
			0	0		
1200 고정자금	1210 퇴직급여 적립예금		0	0		
			0	0		
		1211 정기예금	0	0		
		1212 신탁예금	0	0		
		1213 기타예금	0	0		
	1220 기타적립 예금		0	0		
		1221 정기예금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300 유동자산		1222 신탁예금	0	0		
			0	0		
	1310 일시내어금		0	0		
		1311 일시내어금	0	0		
	1320 선급금		0	0		
		1321 선급금	0	0		
	1330 가치급금		0	0		
		1331 가치급금	0	0		
	1340 공탁금 및 예탁금		0	0		
		1341 공탁금및 예탁금	0	0		
	1350 미수금		0	0		
		1351 미수금	0	0		
	1360 기타유동 자산		0	0		
1400 투자자산		1361 기타유동 자산	0	0		
			0	0		
	1410 유가증권		0	0		
		1411 유가증권	0	0		
	1410 장기내어금		0	0		
		1421 장기내어금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1500 유형 고정자산	1430 출자금 및 투자금		0	X		
		1431 출자금 및 투자금	0	X		
	1440 임차보증금		0	0		
		1141 임차보증금	0	0		
	1450 설치학교		0	X		
		1451 내학(교)	0	X		
		1452 전문내학	0	X		
		1453 초. 중 교교	0	X		
	1460 부속병원		0	X		
		1461 부속병원	0	X		학교회계에 투입되어있는 법인회계의 자산(학교회계의 3130항의 상내계정으 로 연결내차내조표 작성시 상계되는 내부계정임)
			0			
	1510 토지		0	0		
		1511 교육용토지	X	0		
		1512 수익용토지	0	X		
	1520 건물		0	0		
		1521 교육용건물	0	0		
		1522 수익용건물	0	X		
	1530 구축물		0	0		
		1531 구축물	0	0		
	1540 기계기구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600 무형 고정자산	1550 비품및집기	1542 사무용기계 기구	0	0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
			0	0		
		1551 교육용 비품및집기	X	0		
		1552 사무용 비품및집기	0	0		
	1560 차량		0	0		
		1561 차량	0	0		
	1570 도서		0	0		
		1571 도서	0	0		
	1580 박물관유물		X	0		
		1581 박물관유물	X	0		
	1590 건설가계정		0	0		
		1591 건설가계정	0	0		
	1610 무형 고정자산		0	0		
		1611 무형 고정자산	0	0		

부채의부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2100 유동부채	2110 일시차입금		0	0		
		2111 일시차입금	0	0		
	2120 예수금		0	0		
		2121 예수금	0	0		
	2130 선수금		0	0		
		2131 선수금	0	0		
	2140 가수금		0	0		
		2141 가수금	0	0		
	2150 미지급금		0	0		
		2151 미지급금	0	0		
	2200 고정부채		0	0		
		2210 장기차입금	0	0		
		2211 장기차입금	0	0		
		2220 차관	0	0		
		2221 교육차관	0	0		
		2222 기타차관	0	0		

기본금의 부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3100 기본금	3110 설립자 기본금		0	0		운영수입으로 조성된 고정자산 및 각 종 적립금에서 전입된 기본금
		3111 설립자 기본금	0	0		
			0	0		
	3120 기타 기본금	3121 기타 기본금	0	0		
			0	0		
3300 적립금	3130 법헌	3131 법헌	X	0		1450항의 상내계정
			X	0		
	3310 자산재평가 적립금		0	0		
		3311 자산재평가 적립금	0	0		
			0	0		
	3320 특별사업 적립금	3321 특별사업 적립금	0	0		
			0	0		
	3330 결손보전 적립금	3331 결손보전 적립금	0	0		
			0	0		
	3340 임의적립금	3341 임의적립금	0	0		
			0	0		

과 목			적용 회계		비 예 산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3400 운영수지 차액	3350 퇴직급여 적립금		0	0		
		3351 퇴직급여 적립금	0	0		
			0	0		
	3410 운영수지 차액		0	0		
		3411 차기이월 운영수지 차액	0	0		

비고: 적용회계란의 0 또는 그 정정과목이 당해 회계의 적용대상임을 X표는 그계정과목이 당해 회계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